I. 교 육

- 1. 중앙의 교육기관
- 2. 지방의 교육기관

I. 교 육

1. 중앙의 교육기관

1) 국자감

(1) 국자감의 성립과 운영

가. 성립 배경

國子監은 고려시대 최고 학부로서 관료 배출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 고려시대의 학제로는 중앙에 국립학교인 국자감과 東·西學堂(공양왕 이후는 5부학당)이 있고 사학으로는 崔冲 이후에 12徒가 있었으며, 지방에는 鄕校가 있어 교육을 주도해 나갔다. 최고 학부인 국자감의 성립이 고려사회에 새로운 교육전통을 마련하였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국자감은 고려 건국 후 70억년이 지난 成宗 때에 성립되었다. 그러나 국자감이 설립되기 30억년 전에 이미 과거제가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은 성종 이전에도 관료 수급을 위한 교육 전통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高麗史》選擧志 學校條가 "太祖 13년에 西京에 행차하여 학교를 설립하였다" 1)는 기사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점과 광종 때에 이미 과거제도가성립 운영되어 관료를 배출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태조는 즉위 며칠 후에 설관 분직에 따른 인재등용의 조서를 발표하였다.

設官分職은 유능한 사람을 임명하여 그 職을 담당하게 하는 데 있고 利俗安 民은 현명한 사람을 뽑는 것이 급한 일이다. …오직 사람을 알아보는 데 밝지 못하고 官을 살핌에 실수가 많아 어진 사람을 빠뜨렸다는 탄식이 일어나게 하

^{1) 《}高麗史》권 74, 志 28, 選擧 2, 學校 태조 13년.

^{2)《}高麗史》 권 74, 志 28, 選擧 2, 科目 2.

고 깊이 선비 얻는 일에 어긋날까 염려하여, 밤낮으로 걱정되는 것은 오직 이 것뿐이다. … (중략) 마땅히 列辟을 등용하는데 群公을 낱낱이 시험하여 정선에 힘써(歷試精選) 모두 고르게 할 것이니 … (《高麗史》권 1, 世家 1, 태조 원년 6월 신유).

여기에서는 인재 등용과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歷試精潠」의 원칙이 제시되고 있다. 이로 볼 때 국초부터 「역시정선」으로 인재를 등용할 수 있을 만큼 관료 후보자들이 많았음을 알 수 있고, 또 광종 때에 실시한 科擧制가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당시의 합격자들이 대부분 지방 출신이었다는 것 은 교육이 전국적으로 보편화되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은 신라적 교육전통에서 배양된 인재들이 고려 건국 후 관료의 자원으로 축적되 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신라시대는 이미 國學이 있어 고급 인력을 배 출하였고. 또 宿衛學牛들도 있어 고도의 유학적 교양을 지닌 인재들이 많았 다.3) 또 9州·5小京을 비롯한 지방에는 學院의 명칭을 갖는 학교가 널리 보급 되어 인재를 양성하고 있었다.4) 그리고 신라 말 지방에 할거한 鄕豪들은 중앙 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그들 영역을 통치하던가 또는 그들 세력권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지식계급의 행정능력을 필요로 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향 호들은 그들 자체의 장기적인 인적 자원의 수급을 위하여 종래의 학교 교육을 장려하거나 새로이 학교를 창건하는 정책을 취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 에서 나말에는 도처에 학원이란 명칭의 학교가 보편화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것은 〈龍頭寺鐵幢記〉에 학원의 명칭이 보이는 것으로도 유추할 수 있다.5)

태조 13年(930)은 통일 이전으로써, 이 때 태조가 서경에 행차하여 "別創學院"하였다는 사실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고려 건국 후 서경은 황폐되어藩人들의 수렵장이 되고 있었는데 태조가 즉위하자 그 곳에 관심을 가져 黃州・鳳州・白州 등의 민호를 徙民시키기도 하고, 大丞 質榮과 行波 등의 부형자제 및 여러 주현의 양가 자제를 옮겨 충실을 기하였다. 또 축성과 아울러관부와 관리를 두고 行政副都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태조 13년의 "별창학

申榮植.〈宿衛學生考〉(《歷史教育》11·12. 1969).

⁴⁾ 朴贊洙、〈高麗前期 國子監의 成立과 興替〉(《民族文化》14, 民族文化推進會, 1991).

⁵⁾ 金光洙,〈麗末麗初 地方學教問題〉(《韓國史研究》7, 1972).

원"기사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부도로서의 행정기능과 관련하여 설치된 제도로 보여진다. 즉 이곳에 옮겨 살게 된 명문가와 주·현의 양가 자제를 위한 학교의 설립은 행정부도로서의 서경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과제였을 것이며, 학원이라 한 것은 신라시대의 전통적 지방학교의 명칭을 그대로 답습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6)

태조는 건국 후 유학과 관계된 관부들을 설치하고 유학자들을 수용하여계속 학문에 전업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였고, 또 직접 인재를 양성하기도하였다. 즉 태조는 국초부터 白書省·元鳳省·內議省을 설치하였는데, 백서성은 이후 秘書省·典校寺와 연결되는 것으로서 經籍祝疏를 담당한 학문적관부였다.7) 원봉성은 泰封 이래의 학문적 관부로서 유학이념을 보급하는 기능을 담당하였으며, 태조 13년에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내의성도 지식계급을 등용하여 이후 유교적 정치이념을 실현하는 관부로 발전하였다.8) 특히 원봉성은 유학의 교육도 담당하였으며, 성종 때에 유교정치의 향방을 제시한 崔承老도 일찍이 이곳에서 원봉성 학생으로 수학하였다.9) 이 밖에도 翰林院·光文院이 있어 학생 또는 서생의 명칭으로 학문을 연수하였다.10) 이와 같은 배경을 전제로 할 때, 성종 이전까지 학교 설립에 대한 기사가 선거지에 나타나지 않은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성종 때에 와서「詣京習業」과 국자감 설립 등의 교육 개혁이 행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것은 성종 때 정치체제의 정비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 성종 이전까지는 지방호족에 대한 강력한 통치가 불가능하였고, 지방은 鄕豪의 지배하에 행정이 주도되고 있었다. 태조는 "按賓以禮 惠和之意"라는 유교적 명분을 앞세워 향호들을 후한 예물과 겸손한 태도로서 포용하였고 이들에게는 지방의 통제권을 위임하였다. 이후 광종과 경종을 거치는 동안 이들에 대한 숙청 작업이 시도되었지만, 성종 이전까지는 외관이 파견

⁶⁾ 申千湜,《高麗教育制度史研究》(螢雪出版社, 1983), 16~17\.

^{7)《}高麗史》 권 76, 志 30, 百官 1, 典校寺.

⁸⁾ 李泰鎭. 〈高麗宰府의 成立〉(《歷史學報》56, 1972).

^{9) 《}高麗史》 권 93, 列傳 6, 崔承老.

^{10)〈}龍頭寺鐵幢記〉에 翰林學生 金遠의 명칭이 보이고、《高麗史》권 93, 列傳 6, 韓彦恭條에서는 그가 15세에 光文院 書生으로 있었음을 보여준다.

되지 않았다. 외관이 파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지방행정이 국가의 직접적인지배와 통제력에서 벗어나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방교육도 이들 향호들에게 위임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성종 때에는 강력한 집권화정책이 수행되었다. 즉 성종 원년에는 唐制에 따라 중앙관제를 제정하여 3省 6部를 설치하고, 이어 다음해에는 12枚에 지방관을 파견하였으니, 이제 지방에서 자치권을 가졌던 호족들은 중앙정부의 통제권에들어가게 되었다. 또 이 때에 개정된 鄕職은 호족들로 하여금 중앙에서 파견한 지방관의 보좌역인 향리의 지위로 격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11) 성종 때에 나타나는 교육개혁도 이러한 관점에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즉 집권적 국가체제로 정비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지방호족들에게 위임되었던 교육을 국가의 통치권 안으로 흡수하고, 또 중앙관료를 체계적으로 양성 배출시켜야한다는 당면의 개혁정책이 국자감 설립을 비롯한 여러 가지 교육개혁으로나타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설치 연혁

국초 이래의 유교이념이 지배체제의 현실적 정치이념으로 정착되어 제도 화된 것은 성종 때였다. 李齊賢이 성종의 치세를 평한 내용에서 이를 알 수 있다.

성종은 宗廟를 세우고 社稷을 정하였으며 學資를 넉넉히 하여 선비를 기르고 覆試로써 어진이를 구하였으며 수령을 독려하여 백성을 구휼하고 효도와 절의를 권장하여 풍속을 아름답게 하였다…(《高麗史》권 3, 世家 3, 성종 16년 10월 무오).

성종은 즉위 초부터 교육에 크게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즉 박사 任老成이 宋으로부터 와서 大廟堂圖·社稷堂圖와 더불어 文宣王廟圖와 祭器圖 및〈七十二賢贊記〉를 바친 것이라든지12〉향호의 자제에게 서울에 와서 배움을 익히게 한 것이라든지 전국 12목에 교관을 파견한 것 등은 이를 말해주고 있다. 특히 괄목할 만한 것은 성종 11년의 국자감 관계기사이다.

有司는 勝地를 가려서 널리 書齋와 學舍를 세우고 田庄을 주어 學糧에 충당

¹¹⁾ 邊太燮, 《韓國史通論》(三英社, 1986), 164쪽.

^{12) 《}高麗史》 권 3, 世家 3, 성종 2년 5월 갑자.

할 것이며, 또 국자감을 창건하라(《高麗史》권 74, 志 28, 選擧 2, 學校 성종 11년 12월).

위의 기사는 국자감 창건에 관계되는 최초의 자료라는 점에서 일찍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1980년대 이전에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기록을 국자감 설립에 대한 자료로 파악하여 이 때부터 국자감이 설립된 것으로 보아왔다. 그러나 1980년 이래 이에 대한 비판이 나타나고, 그 결과로서 국자감 설립년대를 소급하여 생각하려는 견해가 지금은 거의 통설화되고 있다.13) 위의 기사는 성종 11년에 발표한 교서의 일부분인데, 이 때 발표된 교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王者가 천하를 교화함에는 학교를 세우는 것이 급선무이니, 堯舜의 風敎를 계승하고 周孔의 도를 닦으며 國家憲章의 제도를 마련하고 君臣 상하의 의례를 가려야 하는데 이를 어진 선비에게 맡기지 않고서야 어찌 軌範을 이룰 수 있겠는가…寡人이 미약한 몸으로서 부질없이 왕위에 처하게 됨에 9流의 설을 널리 밝히고 4術街의 문을 널리 열고자 하노라. ① 董蒙을 일깨워 학교에 들어가게 하니, 黌中과 稷下에 경서를 가지고 오는 선비가 무리를 이루고, 夏序와 虞庠에 鼓篋의 무리가 저자를 이루었다. ② 綸閱를 열어 기예를 겨루고, 會府를 열어 인재를 가리되 省試에 나아가는 사람은 오히려 많아도 과거에 급제하는 사람은 아직 적다. 이것은 배우고자 하여도 塾堂이 없고 재주가 아직 자세히 다듬어지지 못한 때문이다. ③ 有司로 하여금 좋은 터를 가려서 널리 學舍를 세우고 田庄을 헤아려 주어 ④ 이들로 하여금 금을 단련하여 순금이 되게 하고 옥을 갈고 닦아 그릇을 이루도록 하라. 무릇 선비들은 나의 뜻을 잘 알라(《高麗史》권 3, 世家 3, 성종 11년 12월 병인).

《고려사》선거지의 기사는 위에서 살펴본 세가의 교서 중에서 ① ② ④ 항을 거두절미하고, ③ 항만을 수록하면서 다만 "또한 국자감을 창설하다"란 기사만을 보충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또한 국자감을 창설하다"라는 기사는 "좋은 터를 가려 널리 학사를 세우라"는 학교 시설의 공간적 확충을 위한 성종의 諭旨에 포괄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때부터 국자감 교육이시행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이 기록은 撰者가 지방 학교와 중앙의 학교를 분

¹³⁾ 朴性鳳, 〈國子監과 私學〉(《한국사》6, 국사편찬위원회, 1975), 175~179쪽. 申千湜, 앞의 책, 30~35쪽. 朴贊洙, 앞의 글.

류하는 가운데 최고 학부인 국자감의 비중을 강조하려고 편술한 것으로 보아야 한 것이다.

성종 11년(992) 이전에 이미 국자감이 설립되어 있었음은 성종 8년 4월의 다음 기록에서도 명백하다.

大學助教 宋承演과 南海道 羅州牧의 全輔仁이 사람을 가르침에 게을리하지 아니하므로 마땅히 獎勸하여 뽑아 씀이 옳을 것이니 承演은 가히 9등을 뛰어 國子博士를 제수하고 아울러 緋公服 한 벌을 내려주라(《高麗史》권 74, 志 28, 選舉 2, 學校).

위에서 당시 대학조교 송승연을 大學博士로 승진시키면서 포상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로 볼 때 성종 8년에는 국자감이 운영되고 있었으며, 대학박사·대학조교의 직제도 제도화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국자감의 설치연혁을 어느 때로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관심을 끄는 것은 柳邦憲의 행장에 나타나는 교관직 경력이다.

公은 鄉貢進士로서 乾德 10년(광종 23, 972) 임신 9월 5일에 科首로 합격하여 攻文博士를 제수받았다. 이로부터 光文校書郎을 거쳐 光文郎을 역임하고 國子主簿와 四門博士를 더하였다. 雍熙 4년(성종 6, 987) 정해에 성종이 즉위한 후 처음 儒臣對策을 명하였는데 이 때에 공은 科首로 합격했다. 왕은 이를 보상하여御事右司員外郎을 제수하였다(〈柳邦憲墓誌〉,《朝鮮金石總覽》上, 265쪽).

그는 성종 6년에 성종의 儒臣對策에 으뜸으로 합격하고 있는데, 이 때에 그의 관직은 四門博士였다. 이로 볼 때 유방헌이 사문박사로서 유신대책에 응시한 성종 6년에는 국자감이 현실적 교육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성종 5년 7월의 교서를 살펴보자.

① 朕이 평소에 덕이 부족함을 부끄러워 하나 일찍이 유학을 숭상함이 간절하여 周孔의 풍을 일으키고 唐虞의 다스림을 바라, 庠序에서 이를 기르고 과목으로 이를 취하고자 하였다. ② 이제 諸州에서 올려 보낸 學士 중 고향을 그리는 사람이 있을까 염려되니 모두 편리한 대로 가고 머물게 하라. ③ 그 歸省을 원하는 학생 207인에게는 배 1,400필을 내려줄 것이요, 머물기를 원하는 자 53인에게는 또한 幞頭 106매와 쌀 265섬을 내려주라. 곧 通事舍人 高榮嵒을 시켜 客省에 나아가 宣諭하고 술과 다과를 베풀어주도록 하였다(《高麗史》권 74, 志

28, 選擧 2, 學校, 성종 5년 7월).

위의 ①에서 이 교서 발표 이전에 학교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②에서는 그 대상이 주로 여러 고을에서 薦貢한 학사였으며, ③에서는 그 수가 고향에 돌아갈 사람 207인과 더 머무르기를 원하는 사람 53인을 합해 260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고려사》선거지에 의하면 성종이 이 교서를 발표하기 몇 년전부터 모든 주현으로 하여금 자제를 선발하여 서울에 나아가 학업을 익히도록 하였다고 한다.14) 이 연대는 분명하지 않지만, 여러 각도에서 파악할 수 있다. 성종 5년의 교서 중 ① 항에서 "…일찍이 …학교에서 이를 기르고…" 한 것으로 보아 그 전 해는 아닐 것이다.

요즈음 여러 州郡縣의 자제를 모집하여 서울에 와서 학업을 익히게 하였더니, 과연 바람을 타고 이르며 詔書에 따라 와 학교 안에는 학도가 자못 많았다. 그런데 집을 떠난 지 오래되어 정이 향수에 깊어졌다(《高麗史》권 3, 世家 3, 성종 6년 8월).

위의 성종 6년 8월의 교서를 볼 때 성종 초기로 추측이 가능할 것 같다. 그러나 성종 원년(982)은 외관을 파견하기 이전으로 통치체제가 전국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260명의 학생을 서울에 올라오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성종 2년의 외관 파견과 향직개정 등 집권화정책이 진행되는 시기와 그 연대를 같이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성종 5년의 기사에서 귀향을 원하는 사람 207인을 고향으로 돌려 보내면서 동시에 남아 있기를 원하는 53인은 계속 교육을 허락하고 있는 점이다. 특히 이들에게 준 幞頭 106매는 당시 남아 있기를 원한 학생 53인에게 각각 2매씩 해당하는 것이다. 복두란 과거합격자가 紅牌를 받을 때쓰는 영예의 冠으로, 일찍이 주나라에서는 公卿大夫의 자제인 國子들에게 착용하게 하였던 것이다.

이로 볼 때 당시 개경에 남아있던 53인에게 복두를 하사하여 공부를 계속

^{14) 《}高麗史》 권 74, 志 28, 選擧 2, 學校 성종.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들을 국자로 예우하여 교육을 시켰다고 볼 수 있겠다. 이 항목 앞부분에서 이미 지적했던 유방헌의 교관 역임이 성종 5년을 전후한 시기와 연결되는 것도 이러한 배경 아래서 생각할 때 많은 시사를 얻을 수 있다.

다. 초기 국자감의 운영

성종 5년(986)을 전후하여 설립된 국자감은 성종 11년(992)에 국자감 시설을 준공함으로써 최고학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성종은 국자감을 설치하고 그 주변을 禮賢坊이라 하였다. 그러나 이 국자감은 선종 때에 이르러퇴락하여 교육기능의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선종은 국자감의 수리를 위하여 文宣王을 順天館으로 이전하였으며, 학생들의 교육도 이곳을 빌려서 임시로 사용하였다.15) 그러나 이 때의 국학의 수리는 완성되지 못하여 국자감학생들은 독자적인 교육시설을 갖지 못하고 순천관의 건물에서 학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예종 때에 이르러 예현방의 옛터에 새로이 건물을 복원 준공하여 이전하였다.16)

이것은 인종 원년 國信使로 고려를 방문한 徐兢의《宣和奉使高麗圖經》을 통해 알 수 있다.

國子監은 이전에 남쪽 會賓門 안에 있었다. 앞에는 대문이 있는데 榜을 국자 감이라 하였다. (그 구조는) 중앙에 宣聖殿을 두고 그 양쪽 행랑에 齋舍를 설치하여 諸生을 거처하게 하였다. 이전의 제도는 극히 좁았는데 지금은 禮賢坊으로 옮겼다. 이로써 학생들이 많이 불어나고 그 제도가 사치스럽게 되었다(徐兢, 《宣和奉使高麗圖經》권 16, 國子監).

위에서 서궁이 남쪽의 회빈문 안에 있었다는 국자감은 바로 순천관에서 교육할 때의 국자감을 말한다.

교육직제로는 《고려사》백관지 기록 중 문종 때에 나타나는 직관들이 국 자감 설립 초기부터 대부분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앞에서

^{15) 《}高麗史節要》권 1. 선종 6년 8월 계사.

^{16)《}高麗史》권 74, 志 28, 選舉 2, 學校 예종 14년 7월조에는 "自國初肇立文宣王 廟于國子監 建官置師 至宣宗將欲敎育而未遑 睿宗銳意儒術 詔有司 廣設學舍置 儒學六十人武學十七人"이라 하였다.

도 언급했듯이 유방헌은 성종 때에 국자주부와 사문박사 및 國子司業을 역임하였고 성종 8년을 전후한 시기에 송승연도 이미 말한 바와 같이 태학조교와 국자박사를 역임하였다. 그리고 國子祭酒의 경우 현종 때에 劉徵弼·徐訥·李可道·黃周亮 등이 나타나고 있다. 또 태학박사는 목종 10년(1007) 10월에 田拱之가 배수받고 있음이 보이고, 國子丞에는 현종 때에 白玄禮가 보인다.17)이미 국자감 설립 이후 현종대에 이르는 시기에는 國子祭酒·司業·丞・國子主簿・國子博士・國子助教, 太學博士・太學助教, 四門博士・四門助教 등의 교육직제가 운영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성종 때의 국자감 수학생들은 鄕貢과 연계된 지방호족의 자제였다. 이후 향공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長吏나 백성의 자제도 입학이 허용되었으며 가세가 어렵고 하찮은 자도 능력에 의하여 입학이 가능하였다. 18) 그러나 현종 이후 국자감의 입학자격에도 서서히 변화가 수반된다. 즉 현종 15년(1024)에는 지금까지 제한이 없었던 향공의 정원이 고정되고, 19) 덕종 때는 國子監試가 시행20)됨으로써 국자감 입학에도 어느 정도 제재가 가해졌던 것 같다. 21)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은 국자감 교육에 변화를 수반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국자감 교육의 변화를 촉진한 것은 당시 사회 성격의 변화였다. 현종 이후 고려사회는 귀족화의 성향으로 바뀌면서 문종 때를 전후해서는 사회성격으로 고착화되어 갔다. 한편 귀족 자제들은 향공들과 더불어수학하는 것을 꺼렸으며, 또 당시 과거의 進士科 위주로 운영되어 갔음을 감안할 때, 이들은 구태여 국자감에 얽매이면서 과거와 직접 관계가 없는 經學을 수학하려 들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국자감 교육을 기피하게 되었고, 때마침 최충의 私塾이 나타나자 "선비와 평민의 자제가 그의 집과 마을에 차고 넘치게 되었다"22)고 할 정도로 많이 모여들게 되었으며, 이것은

¹⁷⁾ 申千湜, 앞의 책, 146~147쪽 참조.

¹⁸⁾ 申千湜, 위의 책, 126쪽. 朴贊洙, 앞의 글.

^{19) 《}高麗史》 권 74, 志 27, 選擧 1, 科目 1 현종 15년 12월 判.

^{20) 《}高麗史》 권 5. 世家 5. 덕종 즉위년 윤 10월.

²¹⁾ 朴贊洙는 앞의 글에서 이들 제도의 설행으로 國子監은 퇴락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았다.

^{22) 《}高麗史》 권 74, 志 28, 選舉 2, 學校 私學 문종.

결과적으로 국자감의 퇴락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최충의 사학이 설립된 지얼마되지 않은 문종 17년에 국자감은 이미 '近多廢業'(3) 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마침내 숙종 7년에는 당시의 宰相 邵台輔에 의해 國學廢置論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24)

(2) 예종의 교육개혁과 국자감

《고려사》를 편찬한 史臣은 예종 때의 치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贊을 남겼다.

예종은 천성이 명철하여 일찍이 東宮에 있을 때도 어진 선비를 禮로써 대접하고 또 효도하고 공손함이 독실하였다. 즉위하여서는 밤낮으로 염려하고 부지런하여 정신을 가다듬어 좋은 정치를 하려고 하였다. …學校를 개설하여 生員을 교양하고 淸讌・寶文 兩閣을 설치하여 날마다 문신들과 더불어 6經을 강론하고 武를 쉬고 文을 닦아 禮樂으로 풍속을 이루고자 하였다(《高麗史節要》권 8. 예종 17년 4월 을미 史臣贊).

예종은 재위 중에 학교 교육의 부흥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또 청연각·보문 각을 두어 학문을 권장하였다. 그는 즉위 초부터 새로운 교육질서의 확립을 정 책이념으로 제시하여 3京·8枚의 通判 이상 및 知州事와 縣令으로서 문과출신 자는 학사업무를 겸하게 하여 지방교육의 권장을 의무화시켰으며,²⁵⁾ 또 당시 퇴락 일로에 있었던 국자감 부흥을 위한 여러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시켰다.

「學」을 세워 賢士를 양성함은 三代 이래로 다스림을 이루는 근본인데 有司의 의논이 아직 결정되지 못하였으니, 마땅히 신속하게 시행하라(《高麗史》 권74, 志28, 選擧2, 學校 예종2년 制).

《고려사》선거지는 위의 기사에 막연히「學」이라 하고 있으나《高麗史節要》에 보면「國學」이라고 명백히 나타나 있다.²⁶⁾ 따라서 선거지의「학」은 「국학」의 생략이란 것을 알 수 있다. 그가 행한 국자감 중흥정책 중 주요한

^{23) 《}高麗史》 권 74. 志 28. 選舉 2. 學校 문종 17년 8월.

^{24) 《}高麗史》 권 74, 志 28, 選擧 2, 學校 숙종 7년 윤 6월.

^{25) 《}高麗史》 권 74, 志 28, 選擧 2, 學校 예종 즉위년.

^{26) 《}高麗史節要》 권 7, 예종 2년 判.

것을 살펴보면, ① 최고학부로서 국자감의 위상 정립(과거응시자의 국자감수학 의무화), ② 국자감 건물의 중건과 三舍制度의 운영, ③ 國學 七齋의 운영 등을 들 수 있다.

가. 국자감의 위상 정립

과거제도를 개혁함으로써 국자감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였다. 즉 예종 5년 9월에 새로이 과거제도를 개편하였는데, 그 근본취지는 "제술·명경 등 여러과에 새로 추천된 사람들은 국자감에 3년 동안 속하게 한다"27)는 것이었다. 지금까지는 과거 응시에 일정한 자격 기준이 없었고, 따라서 학생들은 私學 12徒에 예속하여 科業에 전념하고 국자감을 기피함으로써 숙종 때는 국자감의 폐치론까지 대두되었다. 예종의 과거제도 개혁론은 당시 이러한 국자감의 황폐화를 지양하고 명실상부한 최고학부로서 국자감의 위상을 높이고자 한정책으로 볼 수 있다. 이로써 지금까지 과거 응시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던 12도 출신이나 문벌귀족들의 자제들도 3년 동안 국자감에서 수학하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국자감과 같은 비중으로 존재했던 12도 국자감 하위의 교육기관으로 전략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고려 말 牧隱 李穡의 국학 중흥을 위한 건의에서도 간접적으로 시사받을 수 있다.

국가는 안으로 成均館・12徒・東西學堂을 세우고 밖으로는 州郡에 이르기까지 각지 학교가 있어서 규모가 굉장히 크고 節目도 치밀하였습니다. 祖宗의 뜻을 살펴보건대 儒道를 숭상한 까닭은 깊고 또한 간절한 바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登仕者라도 반드시 과거에 급제한 자가 아니며, 급제자라도 반드시 國學을 거칠 필요가 없으니 누가 지름길을 버리고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학생들이 흩어져 齎舍가 기우는 것은 실로 이 때문인가 합니다(《고려사》권 115, 列傳 28, 李稿).

이것은 이색이 공민왕 원년(1352) 2월에 왕이 정사에 대한 求言을 요청한데 대한 封事로 생각되는데, 그는 현재 과거제도의 폐풍을 "급제자라도 반드시 國學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데 두고 이것을 옛 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

^{27) 《}高麗史》 권 73, 志 27, 選擧 1, 科目 1 예종 5년 9월.

평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祖宗의 율법은 과거에 응시할 경우 반드시 국학을 거쳐야 한다는 명분이 제도화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바로 예종 5년(1110)의 科學判文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계속해서 이색의 건의를 더 살펴보자.

지방의 鄕校와 중앙의 學堂은 그 재능을 조사하여 12徒에 올리고, 12도에서는 이들을 모아 심사하여 成均館에 올려 보내 얼마 동안의 기한을 정하고 덕성과 기예를 연마케 하십시요(《高麗史》권 74, 志 28, 選擧 2, 學校 공민왕 원년 4월조).

이것은 앞의 열전 내용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이며 祖宗의 율법과도 연계될 것이다. 이와 같이 볼 때 예종 5년 과거 판문의 시행 이후에는 12도의 위상 이 국자감과 향교²⁸⁾를 연결하는 중간 위치로 전략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삼사제도의 운영

성종 11년에 창건된 국자감 건물은 선종 때에 이르러 퇴락되어 순천관으로 이전하여 교육하였으며, 국자감 복원사업은 예종 때에 이르러 겨우 완성을 보게 된다. 국자감이 복원된 시기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지만, 예종 9년 2월에 國子生 張仔 등 60여 인이 대궐에 나아가 국학 설립을 청원하고 있음을 볼 때,29) 이 때까지는 국자감이 복원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관심을 끄는 것은 국자생 장자 등의「立國學」청원이 있은 6개월 후인 예종 9년 8월에 왕이 국학에 행차하시어 先聖·先師에 술잔을 올렸다는30) 기사이다. 이 때 왕의 국학 행차는 선종 6년 국자감을 순천관으로 이전한 후 처음 보이는 행사이며 실로 28년만의 행사이기도하다. 《고려사절요》는 이 때의 상황에 대하여 백관과 생원 700명이 "立庭聽講 各進歌誦"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다.31) 비록 "뜰에 서서 강의를 듣는다"는 단서가 붙어 있지만 희빈문 안의 국자감 시설로는 과연 이것이 가능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며, 이러한 관점에서 당시 왕의 행차는 단순한 국학

²⁸⁾ 당시에는 學堂은 없었다.

^{29) 《}高麗史》 권 74, 志 28, 選擧 2, 學校 예종 9년 2월.

^{30) 《}高麗史》권 13. 世家 13. 예종 9년 8월 을묘.

^{31) 《}高麗史節要》 권 8, 예종 9년 8월 을묘.

행차가 아니라 국자감 건물의 준공에 대한 국가적 행사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당시 준공되었던 국자감 시설이 서긍의 표현대로라면, 비록 국자생들의「立國學」청원 이후에 바로 건물을 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불과 6개월만에 준공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한편《고려사》선거지 예종 14년 7월조에 養賢庫 설립을 설명하면서, "널리 有司에 조서를 내려 學舍를설립하고 문·무 양학을 두었다"32)는 기사가 있는데, 아마도 이 때에 국학을 준공하면서 문·무 양학을 설치하고 또 국자감 기금으로 양현고를 설치하는 등 국자감 교육에 대한 일대개혁이 단행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하여튼 예종 14년에는 이미 국자감은 준공되어 있었다. 이 때에 준공된 국자감은 송의 三舍制度에 입각한 설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삼사제도란 송의 국자감에서 운영되던 교육제도로서, 국자감의 교육체제를 外舍·內舍·上舍로 구분하고, 학생들의 교육성과에 따라 상급의 齎舍로 壓補시켜 최후로 상사의과정을 거쳐 관로와 연결시킨 교육제도였다. 예종은 삼사제도에 많은 관심을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예종 10년 權適 등 유학생을 송에 뽑아 보내면서 올린 表文에서도 나타난다.33)

국자감 시설이 삼사제에 입각한 설계였음을 보여주는 기록으로 주목되는 것은 당시 국자생인 장자가 그들의 국학 취학을 사례하여 올린〈諸生謝就養 表〉에서 나타나는 내용이다.

先王의 盛典을 드높혀 천년의 聖代에 거행하여 널리 三舍의 규모를 넓히고 사방의 선비들을 불러와서 經術을 가르치고 土田을 하사하셨습니다(《東文選》 권 36, 表箋, 張仔 諸生謝就養表).

장자는 예종 9년(1114) 2월에 「국학을 세울 것」을 청원한 사람이었다. 위의 글은 국학시설이 중건된 이후 새로운 국자감에서 공부하게 된 것을 사례하는 표문으로 볼 수 있는데 당시 국자감의 시설이 삼사제의 설계였음을 알려준다.

또 같은 시기의 학생으로 보이는 成上田도 국왕의 국학행차와 제생들과 더불어 강론한 데 대한 사례로 표문을 올렸다.

^{32) 《}高麗史》 권 74, 志 28, 選擧 2, 예종 14년 7월.

^{33) 《}高麗史》 권 13, 世家 13, 예종 10년 7월 무자.

대개 聖上께서는 하늘이 내신 재능과 날마다 새로운 덕으로 비록 萬機를 다스리는 번잡한 사무에 계시면서도 먼저 三숨의 큰 규모를 숭상하시어 사방을 고무하고 하늘이 돌고 땅이 열림을 본받아 많은 선비를 성취시켜 모두 '물고기가 뛰고 솔개가 날아가는 것 같은' 밝음으로 經文을 토론하고 도리를 해명하셨습니다(《東文選》권 36, 成上田, 幸學命講經論諸生謝許難疑表).

이상의 사실을 종합할 때 국자감의 운영에 대한 예종의 의도는 송나라 제 도에 입각한 삼사제의 활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 국자감 교육시설이 삼사제에 의한 내부설계였으며, 또 이후 삼사제에 의하여 국자감 교육이 운영되었을 것이라는 것은 당시 국자감 수학생들의 교 육 경력에서 확인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李文鐸과 趙冲을 들 수 있는데 이들 은 모두 대학에 입학하여 이후 상사생으로 승보하여 과거에 합격하고 있다.

이문탁의 입신 경로34)를 살펴보자.

- 인종 3년(1125) 17세로서 京師에 들어와 비로소 취학하였다.
- 尹顏頤의 문하에서 成均試에 합격하였다.
- 인종 17년(31세. 기미)에 大學에 입학하였다.
- 이후 이곳에서 8년간 수업하였다.
- 의종 즉위년(38세, 병인)에 上舍 제2인으로 과거에 급제하였다.

다음은 조충의 경우도35) 살펴보자.

- 門蔭으로 補官되었다.
- ㅇ 大學에 입학하였다.
- ㅇ上숨에 올랐다.
- ㅇ 명종 때에 급제하였다.

이들 두 사람의 경우 공통되는 과정은 대학에 입학하여, 이후 상사로 진출하고 있는 점이다.

명종 때이지만 李仁老의 입신 과정도 주목된다. 그는 豹膀・賢關・考藝・ 首登龍門의 네 단계를 거쳤다.36) 표방은 국자감시의 별칭이며, 현관37)은 대

^{34)〈}李文鐸墓誌〉(李蘭暎 編、《韓國金石文追補》、亞細亞文化社、1968)。

^{35)《}高麗史》 권 103. 列傳 16. 趙冲.

³⁶⁾ 李仁老,《破閑集》跋(《高麗名賢集》2. 成均館大 大東文化研究院, 1981) 补圣.

³⁷⁾ 許興植은 賢關을 升補試로 보아 國子監生들의 上舍 진출을 위한 자격시험으

학의 별칭이다. 따라서 그는 국자감시를 거쳐 국자감에 입학하였으며 이후 고예로써 상사에 올라 과거에 진출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 살펴본 바의 이문탁·조충·이인로의 경우, 이들은 모두 內舍生으로 대학에 입학하였으며, 이후 교육성과에 따라 上舍生으로 이와 같이 볼 때 당시 국자감의 교육 운영은 내사→상사로 연결되는 교육체계였음을 확인할 수있다. 이것은 송나라 太學의 교육체제와 일치한다.

다. 국학 7재의 운영

예종의 교육 개혁으로 특기할 만한 것은 국학 7재의 운영이다. 이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다음의 《고려사》 선거지 예종 4년(1109) 7월조 기사다.

"國學에 七齋를 두었는데,《周易》을 공부하는 곳을 麗澤이라 하고,《尚書》를 공부하는 곳을 待聘이라 하고,《毛詩》를 공부하는 곳을 經德이라 하고,《周禮》를 공부하는 곳을 求仁이라 하고,《戴禮》를 공부하는 곳을 服膺이라 하고,《春秋》를 공부하는 곳을 養正이라 하고, 武學을 공부하는 곳을 講藝라 하였다. 大學에서 崔敏庸 등 70인과 武學에서 韓自純 등 8인을 시험쳐 뽑아 나누어 여기서 공부하도록 하였다(《高麗史》권 74, 志 28, 選擧 2, 學校 예종 4년 7월).

앞의 인용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예종 4년 國學 七齋

			齋		名	分	野	定	員				
			麗	澤	齋	周	易						
			待	聘	齋	尙	書						
便	681	#MC	經	德	齋	毛	詩	70	대				
儒	學	齋 .	求	仁	齋	周	禮		73				
							服	膺	齋	戴	禮		
			養	正	齋	春	秋						
武	學	齋	講	藝	齋	武	學	81	경				

로 보고 있다(《高麗科學制度研究》, 一潮閣, 32쪽). 그러나 國子監試 합격 후 바로 上舍生으로 입학한다는 것은 모순이며, 따라서 賢關은 《辭海》의 "大學者賢士之所關也"라는 주석과 연계할 때, 大學의 약칭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학문의 분야를 儒學齋와 武學齋로 구분한 점과, 유학재의경우 전문강좌별로 齋舍를 나누어 해당 분야의 학문을 전업화시키고 있다는점이다. 지금까지 국자감 교육에서 제외되어 왔던 무학이 이 때에 국자감 교육분과의 하나로서 등장하였다는 것은 당시 사회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복잡한 국제정세 아래 특히 북방 민족의 침입에 대비하려는 국방상의 필요성은 지배층으로 하여금 무인관료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했을 것이며, 더 나아가 북방민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將材 양성의 필요성도 아울러 절감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은 지금까지 문사만을 중용하던 지배층의 반성을 수반하였을 것이며, 이것은 예종 때에 "文武之道 不可偏廢"라는 정치의식의 표현으로 나타난다.38) 이러한 정치의식이 반영된 것이 바로 무학재의 설치로 볼 수 있다. 또 유학재의 경우, 전문강좌로나누어 재사를 설치한 것은 경학 부흥을 위한 예종의 학교중흥책과도 연계된다.

예종의 교육 개혁에 대한 구상은 시·부 위주의 전통적인 교육 내용보다는 경의에 통달할 수 있는 실천적 교육이었다. 종래의 학교 교육은 과거와 연계되어 과목에 입각한 학습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목종 7년 三場制에 의한 과거제도가 정착되고 이것은 예종 때에 이르기까지 거의 변함없이 지켜지고 시행되었다. 3장제에 의한 과목의 배열은 初場에서 經義, 中場에서 詩賦, 그리고 終場에서 策論이었다.39) 그러나 초장의 경의는 《禮經》 10조를 財經으로 시험하는 것으로써 전반적인 유학 경전에 대한 경의는 아니었다. 따라서 국자감 학생들은 경전 공부를 소홀히 하였고, 시부 공부에 치중하여 과거에만 전념하는 것이 일반적 추세였다. 이러한 경향은 서궁이 《고려도경》에서 "대체로 聲律만을 숭상하고 經學에 있어서는 심히 정교하지 못하다. 그들의 문장을 살펴보면 마치 당나라의 잘못된 폐단을 닮은 듯하다"40)고 지적한바와 같이, 당시의 학풍은 겉만 화려하였지 실용적인 학문이 아니었다. 예종의 교육개혁은 이러한 교육상을 지양하고 경학 중심의 교육으로 학교 교육

^{38) 《}高麗史節要》권 8, 예종 11년 8월 制.

^{39) 《}高麗史》 권 73, 志 27, 選擧 1, 科目 1, 목종 7년 3월.

⁴⁰⁾ 徐兢,《高麗圖經》 권 40, 儒學.

을 개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다.

경학에 대한 예종의 관심은 과거에서도 보이고 있다.

諸業의 응시자 추천은 11월부터 明經을 먼저 뽑고 進士는 이듬해 2월 밤과 낮이 같아질 때에 뽑으며, 응시자의 行卷·家狀 및 試官을 결정하는 등의 여러 가지 일은 都省 및 樞密院・國子監에서 왕에게 보고하고 시행해야 한다(《高麗史》권 73, 志 27, 選擧 1, 科目 1, 예종 11년 11월 判).

이상은 지금까지의 진사시 우선주의를 지양하고 명경업을 일차적으로 중 시한 것으로, 예종 14년에는 東堂試에서 처음으로 경의를 채택하였다.41)

이러한 예종의 경학 위주의 이념이 국자감 교육에 반영되어 나타난 것이 국학의 유학 육재였다. 그러나 예종의 이러한 교육 개혁에 대하여 당시 전통적 귀족들은 크게 반발하였다. 지금까지 優文劣武의 전통에 젖어왔던 문반귀족들이 무학의 설치에 반발하였을 것이며, 또 지금까지 調章的 전통에 젖어 왔던 문신들이 경학 위주의 교육 개편에 대하여 반발하였을 것은 당연한 추세였다.

文武 두 가지 학문은 국가 교화의 근본이므로 일찍이 지시하여 두 가지 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을 양육하여 장래의 將師와 宰相을 준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有司들이 각기 다른 의견을 고집하여 아직 결정하지 못하였으니, 마땅히속히 아뢰어 정하고 시행하도록 하라(《高麗史》권 74, 志 28, 選擧 2, 學校 예종 11년 4월 制).

위에서처럼 유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종은 강력한 의지로써 국학 7재의 교육을 강행하여 동왕 14년에는 그 체제를 정비하였다. 이것은 다음의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다.

有司에 명하여 學舍를 널리 세우고 儒學에 60명과 武學에 17명을 두어 近臣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감독하게 하고, 유명한 유학자를 선발하여 學官·博士로 삼아 經義를 강론하며 가르치고 지도하게 하였다(《高麗史》권 74, 志 28, 選舉 2, 學校 예종 14년 7월).

관심을 끄는 것은 예종 4년의 7재에 비하여 무학생은 9명이나 증가하고 있는데 반하여 유학생은 10명이 감소되고 있다. 그러나 인종 때에 이르러 사

^{41) 《}高麗史》 권 73, 志 27, 選擧 1, 科目 1, 예종 14년.

회성향이 다시 귀족화되면서 국학 7재에 대한 교육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곧 인종 11년(1133)에는 무학재가 폐지되고, 국자감은 유학재만을 운영 하게 된다.

武學齊의 생도는 과거 응시자가 적기 때문에 비록 策論에 합격하지 못하여도 점수에 따라 뽑으니 급제하기 매우 쉬우므로 모든 학생이 다투어 武學에 들어가고 있다. 이것은 근본을 버리고 말단을 따르는 것으로써, 선비들의 풍조가다만 요행만 바랄 뿐 아니라 모두 재주와 기량이 노둔하고 졸렬하여 혹 兵事를 맡기더라도 유명무실하다. 또 武學이 점차 성하여져 장차 文學人과 대립하여불화하게 되면 매우 불편하게 될 것이다. 지금부터는 이미 과거에 급제한 자는 문사와 같이 등용하되, 앞으로는 武學으로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와 무학재의 청호는 모두 폐지하라(《高麗史》권 74, 志 28, 選舉 2, 인종 11년 정월 判).

여기에서 당시 무학재생들의 관로 진출에 대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거니와 특기할만한 것은 이들의 진출에 대한 문반 관료군의 위기의식이다. 위의 글에 나오는 '문학인과의 불화에 의한 불편한 관계'란 이를 말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국학 7재의 성격은 어떠했으며 7재와 기존 국자감과의 관계는 어떠하였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기존의 학설은 국자감을 개편한 것이 국학 7재라고 보아왔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국자감을 개편하여 국학 7재로 하였다는 것은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42)

(3) 학식의 제정과 성격

가. 학식의 제정

學式은 인종 때 式目都監에서 제정된 학교 운영의 법규로서, 고려시대 국자감 운영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이 학식은 그 규정에서 입학자격·교육과정·학생정원에 이르기까지 국자감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 학식은 《고려사》 선거지 학교조에서, "仁宗때에 式目都監이 學式을 제

⁴²⁾ 이에 대한 許興植은 앞의 책, 87쪽에서 예종 때 국자감 운영이 三舍制度에 입각했음을 전제로 이 國學七齋를 上舍生의 齋舍로 처리하였다. 또 申千提은 앞의 글, 74~83쪽에서 국학의 儒學 6齋生들의 신분과 교육과정 및 睿宗의 교육이념을 추적하면서 國子監 안에 설치한 經學 위주의 별도 교육시설로 파악하였다.

정하였다"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지만, 그것이 제정된 시기에 대하여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학식이 제정된 시기는 언제일까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일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인종 5년 3월이전이었을 가능성이다. 이것은 《고려사》선거지 학교조에서 연대불명으로학식에 대한 조항이 나타나고, 이어 인종 5년 3월 기사가 나오면서 "모든 써에 학교를 세워 교육의 길을 넓히라"라는 내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인종 5년 이전에 학식이 제정되었을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볼 때 의문이다. 인종은 14세의 어린 나이에 즉위하여 동왕 5년까지는 스스로 한탄한 바와 같이 災變이 연속하여 평안한 날이 없었다. 그리고 인종 5년의 학교를 널리 세우라는 조서도 李資謙의 난이 평정된 후 서경에 행차하여발표한 維新政治 15개항 중의 하나였는데,430 선거지에서는 이것만을 떼어 수록하였다.

한편 인종 7년도 일단 검토의 대상이 된다. 인종 7년 3월에 왕은 국학에 행차하여 先聖에 대하여 釋奠하고 은소반 두 벌과 綾絹 30필을 올리고, 또 敦化堂에 거동하여 대사성 金富轍에게 명하여 《書經》無逸篇을 강의하게 하고 기거랑 尹顔頤 및 학생들로 하여금 그 대의를 토론하게 하고 재추·시신·학관·제생들에게 술과 음식을 하사하였다.44) 이것은 인종이 즉위한 후처음 있었던 국학 행차였다는 점에서 관심의 대상이 된다.

또 인종 11년은 국자감 교육에 대한 제도적 개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해 정월에 국학의 7재를 개편하여 무학을 폐지하였는데 이러한 국학교육의 제도적 개혁이 단행되던 인종 11년 전후에 학식이 제정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 성격

《고려사》선거지 학교조에 나타나는 학식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入學資格

- 國子學;
 - ㅇ 文武官 3품 이상의 子孫

^{43) 《}高麗史節要》권 9. 인종 5년 3월 무오.

^{44) 《}高麗史》권 16. 世家 16. 인종 7년 3월 계묘.

- 勳官 2품으로서 縣公 이상의 직위를 가진 자의 子
- 京官 4품으로서 3품 이상의 勳封을 받은 자의 子
- 0太學;
 - ㅇ 文武官 5품 이상의 子孫
 - 文武官 정・종 3품의 曾孫
 - 勳官 3품 이상의 봉작이 있는 자의 子
- ○四門學;
 - 勳官 3품 이상의 봉작이 없는 자의 子
 - 勳官 4품 이상의 봉작이 있는 자의 子
 - 文·武官 7품 이상의 子
- 律・書・算學;
 - ㅇ 文武官 8품 이상의 子45)
 - 0 庶 人
 - ㅇ 文武官 7품 이상의 子로 원하는 자
- ※ 입학 부자격자(國子學・太學・丌四門學)
 - 雜路에 관계되는 자 및 工・商・樂 등 賤業 종사자의 子孫
 - 大小功親을 범하여 결혼한 자와 家道가 바르지 못한 자의 子孫
 - ㅇ 惡逆을 저지르고 귀향한 자의 子孫
 - 賤郷部曲人의 子孫
 - ㅇ 자신이 私罪를 저지른 자
- ◎ 學生定員;國子學·太學·四門學은 각각 300인씩.
- ◎ 教 官;國子學・太學・四門學에는 각기 博士와 助教를 둔다. 반드시 經學에 우수하고 덕행이 높아서 능히 스승이 될 만한 자를 택한다. 경서 한 가지씩을 나누어 학생들에게 가르치되 반드시 그 경서를 마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을 다 마치지 못하면 다른 과목으로 바꾸지 못하게 한다. 博士와 助教는 연말에 강의한 분량을 계산하여 이것으로서 근무성적의 평가 자료로 활용한다. 律・書・算學에는 박사만을 둔다.
- ◎ 教科目;《周易》・《尚書》・《周禮》・《禮記》・《毛詩》・《春秋左氏傳》・《春秋 公羊傳》・《春秋穀梁傳》을 각각 한 가지 경서로 하고,《孝經》과《論語》는 반 드시 경하여 통달하도록 한다.
- ◎ 課 業;《孝經》과《論語》는 합하여 1년、《尚書》・《公羊傳》・《穀梁傳》은 각

⁴⁵⁾ 이는 8品 이하의 子로 수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閔丙河, 〈高麗學式考〉, 《成均館大論文集》11, 1966), 學式이 唐의 제도를 轉寫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자가 없다는 다른 견해도 있다(申千湜, 앞의 책, 103쪽).

각 2년 반(필자주:1년 반의 잘못인 듯),《周易》·《毛詩》·《周禮》·《儀禮》 는 각각 2년,《禮記》·《左傳》은 각각 3년으로 한다.

먼저《孝經》과《論語》를 읽은 다음에 여러 경서를 읽으며 아울러 算術과 함께 時務策을 배운다. 여가가 있으면 겸하여 반드시 글씨를 익히는데 하루에한 장씩 쓰도록 하고 또《國語》·《說文》·《字林》·《三倉》·《爾雅》를 읽게한다.

위의 학식은 고려시대 국자감의 교육 내용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것이며, 따라서 지금까지 학계의 연구는 이 학식의 내용을 통해 국자감의 교육 운영 을 이해하려 하였다. 그러나 적어도 입학자격을 비롯한 학사 운영은 여러 가 지 면에서 의심을 자아낸다.

학식에서 보이는 국자감 입학자격에 대한 규정은 철저한 귀족주의의 성향이다. 이것은 당·송의 제도를 모방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당·송의 그것보다 철저한 귀족주의의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학식이 규정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문·무관 3품 이상의 경우 아들과 손자에 이르기까지 國子學에서 수학할 수 있는 특전을 보장하고 있으며, 그 증손까지도 太學에 입학할 자격을 주고 있다. 문·무관 5품 이상은 아들과 손자에게는 태학에서 수학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문·무관 7품 이상은 아들에 한해서만 四門學에서 수학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당나라 국자감에서는 사문학의 경우 서인에게까지 개방되었던 데 반하여 고려 국자감은 보다 폐쇄적 성향으로 귀족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勳官 또는 勳封者는 거의 공신 및 3품 내지 5품 이상에 한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실제로는 문·무관 5품 이상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위의 학식에서 문·무관의 관품을 규정하면서 동시에 훈관 또는 훈봉자를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다시 강조하고 있음에 불과하다.

인종 때의 학식이 귀족주의에 입각한 폐쇄적 성향을 띄고 있음은, 이 학식이 규정하고 있는 국자감 입학 부자격자의 규정에서도 나타난다. 그렇다면이 학식이 제정된 인종 때 이후에는 이 학식에 의하여 국자감이 운영되었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인종 이후에 국자감에 진출한 학생들의 신분을 검토할때 더욱 그러한 의문이 짙어진다. 즉 의종 때에 尹文節・胡慎修・劉□・尹惇義・廉行若은 국자생 또는 태학생으로 있었는데, 이들 중 대부분이 이 학식

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46)

또 이 학식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학생정원이다. 학식에 보이는 학생정원은 국자학·태학·사문학에 각각 300명으로 규정하여 모두 900명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로서, 당시 고려의 학제에서 이와 같은 학식의 규정에 따라 학생정원을 운영한 실례는 한 번도 없었다. 이런 점으로 보아 인종 때의 학식은 당시 귀족화되어 갔던 사회성향에 맞추어 나타난 형식적인 律式이었을 뿐, 적어도 입학자격과 학생정원의 경우 실제로운영하는 데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학식으로 고려시대 국자감 운영의 실태를 파악하려 들지 말아야 함 것이다.47)

(4) 국자감의 직관과 학제 운영

가. 직 관

국자감에는 설립 이후부터 현종 때에 이르기까지 國子祭酒·司業·丞·主簿‧國子博士‧國子助教, 大學博士‧大學助教, 四門博士‧四門助教 등의 직관이 설치되어 있어 교육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목종 때의 田柴科에서는 이가운데 국자좨주·승의 직관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⁴⁸⁾ 이 직관의 설립은 현종 때로 보여진다.

⟨丑 2⟩	모조	위녀	12일	田此私の	教育職官
〈 並 乙〉	숙충	권인	12절	田采付当	双月城日

田柴科	第8科	第9科	第11科	第13科	第13科	第15科	第18科
教育職官	國子司業	國子博士				書・算博士 律學助教	國子典學

위의 〈표 2〉 직관은 목종 원년(998)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성종 때에 운영되었던 국자감 직관으로 파악할 수 있다. 백관지의 관계기사

⁴⁶⁾ 申千湜, 위의 책, 106~107쪽.

⁴⁷⁾ 위의 책, 102~110쪽, 朴贊洙, 〈高麗學式에 대한 再檢討〉(《國史館論叢》21, 1991).

^{48) 《}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田柴科 목종 원년 12월 改定文武兩班及軍人田 柴科.

와 마찬가지로 아직 좲주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국자사업이 당시 국자감교육의 책임자였음을 알려주고 있다. 박사와 조교가 특색적으로 나타나며, 국자조교와 대학박사 그리고 대학조교와 사문박사는 같은 예우를 받아 각각제11과・13과에서 田柴를 지급받고 있다. 위에서 주목되는 것은 國子典學이란 직관이다. 국자전학은 백관지나 이후의 관계기사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문종 때의 직제에서는 소멸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종 때는 고려정치제도가 일차적으로 정비되는 시기인데, 교육직관도 이시기에 몇 차례의 변화를 보이면서 고려 교육전통으로 정착되어 갔던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 찾아볼 수 있는 교육직제로는 우선 백관지의 기록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食貨志의 문종 30년(1076) 更定兩班田柴科條에 보이는 교육직관 및 같은 해의 文·武班祿俸條에 보이는 교육직관을 유의해 볼필요가 있다.

〈표 3〉 백관지의 문종대 국자감 교육직관49)

교육	직관	提擧・ 同提擧 ・管勾	判事	祭酒	司業	丞	國子博士	大學 博士	主簿	四門博士	學正	學錄	學諭	直學	書學博士	算學 博士
품	계	?	?	종3	종4	좋6	종7	종7	종7	정8	정9	정9	종9	종9	종9	종9
정	원	각 2인	1인	1인	1인	?	2인	2인	?	?	2인	2인	4인	2인	2인	2인

위의 〈표 3〉에 보이는 백관지의 직관 가운데 提擧·同提擧·管勾는 다른 관직의 겸관으로서 2품 이상의 案臣이 겸대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고, 판사는 예종 때에 대사성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정3품이상이 겸직하면서 학사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실질적인 교육행정 책임자는 종3품관의 좨주였다. 이〈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국자승과 주부는 정원이 누락되어 있지만,《唐書》百官志 國子監條50)나《宋史》職官志 國子監條51)에는 정원이 모두 1인씩으로 되어 있는데, 職制의 성격상 고려 국자감에서도 1인이 정원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문박사의 경우

^{49)《}高麗史》 권 76, 志 30, 百官 1.

^{50) 《}唐書》 권 44. 百官志 24. 職官 3. 國子監.

^{51) 《}宋史》卷 165, 志 118, 職官 5, 國子監.

도 정원이 누락되어 있지만, 충렬왕 34년(1308)의 직관에서 바뀐 직관으로 나타난 諄諭博士의 정원이 2명이었음을 감안할 때 사문박사도 국자박사·태학박사와 같이 정원이 2명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전제하에서 문종때에 확립된 국자감 직제를 살펴보면 모두 17개 직관에 인적 구성 30여 명이라는 방대한 체제가 된다.

문종 30년 제정된 경정전시과는 정치체제가 확립된 이후의 국자감 교육직 관에 대한 내용과 예우를 알려주고 있다.

〈표 4〉 문종 30년 更定兩班田柴科의 교육직관52〉

직 관	國子 祭酒	國子 司業	國子 博士	太學 博士	國子 助教	四門 博士	太學 助教	四門助教 律學博士	律學助教 ・書・算博士
전시과	5科	7科	8科	10科	11科	12科	13科	14科	15科

위의 〈표 4〉에 나타나는 문종 때 전시과의 교육직관을 백관지의 교육직관과 비교할 때 특기할 만한 사실이 나타난다. 즉 백관지에서는 일률적으로 조교를 누락시킨 반면에 이 전시과에서는 조교가 교육직관으로 계승되고 있는 점이다. 그런데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전시과가 제정되던 문종 30년에 별도로 상정된 문무반녹봉조의 직관 명칭이다.

(표 5) 문종 30년 文武班祿俸條의 교육직관⁵³⁾

교육직관	國子祭酒	試國子 祭 酒	國子司業	試國子 司 業	國子大府	試國子 大 府	國子主簿
녹 봉	8科 233石 5斗	9科 213石 5斗	14科 153石 5斗	15科 140石	27科 53石 5斗	28科 46石	31科 40石

試國子主簿	國子博士	太學博士	試大學博士	四門博士 武學博士	律學博士	國學學正・學錄・律 學助教・書・算博士
32科	35科	36科	38科	42科	44科	47科
36石10斗	30石	27石	25石	20石	16石10斗	10石

위 〈표 5〉의 문종 30년 녹봉조의 교육직관에서는, 백관지의 문종 때 교육 직관 중 겸관인 제거·동제거·관구·판사를 제외하고는 전부 수록되어 있

^{52) 《}高麗史》 권 78, 志 32, 食貨 1, 田柴科 문종 30년 更定兩班田柴科.

^{53) 《}高麗史》 권 80, 志 34, 食貨 3, 祿俸 문종 30년.

다. 단 백관지에 등장하고 있는 국자승만이 여기서 누락되어 있는데, 그러나이것은 국자대부로 계승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에서 주목되는 것은 문종 때의 전시과 지급대상에서는 모두 전시의 대상이었던 조교가 누락되고, 대신 모든 교육직관에「試」라는 명칭을 갖는 새로운 직관이 등장하고 있는 점이다.

그렇다면 문종 30년에 같이 제정된 것으로 나타나는 전시과와 녹봉조에서 그 직관이 서로 다른 것은 어떻게 파악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전시과와 녹봉제의 제정을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파악하는 것 보다는 시기상의 전후가 있었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일차적으로 문종 30년에 기존의 직관을 기준으로 하여 전시과가 제정되었을 것이며, 그 이후에 관제 개혁이 수반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개정된 직관을 전제로 편제한 것이 바로 녹봉조의 직관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후 인종 때의 직관은 다음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종 때의 녹봉제 직관을 대부분 계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6〉 인종대 祿俸表의 교육직관54)

교 육	직 관	判國子 監 事	國子大 司 成	國子祭 酒	試國子 大司成	試國子祭 酒	國 子	試國子 司 業
	반 차	5科	6科	7科	8科	9科	12科	13科
녹 봉	지급액	250石	246石	233石 5斗	213石 5科	200石	153石 5斗	120石

國子博士	太學博士	四門博士・明經博士・試 國子博士・試太學博士	律學博士	明經學諭・國子學諭・ 學正・書・算博士
23科	24科	26科	27科	28科
30石	27石	20石	16石10斗	10石

위의 〈표 6〉에서 신설된 직관으로 判國子監事와 國子大司成‧明經博士 등이 보이고 있다. 이것은 예종 때의 교육개혁으로 나타난 직관이며, 비록 국자대부·국자주부의 직관이 누락되어 있으나, 그 외는 문종 때의 녹봉제에나타나는 직관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이후 위의 직관은 무인집정기를 거쳐 고려 후기 공민왕 11년(1362)의 직제

^{54) 《}高麗史》 권 80, 志 34, 食貨 3, 禄俸 인종.

개편까지 대부분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공민왕 초기까지 試官이보이고,55) 다른 직관들도 명칭상의 개정을 제외하고는 거의 운영되었음을 볼수 있기 때문이다.56)

고려후기, 특히 충렬왕 이후는 국자감 교육의 중홍을 위한 다양한 개혁이나타났던 시기이다. 국자감의 명칭만 하더라도 충렬왕 원년에 國學으로 개칭한 것을 비롯하여, 이후 成均監→成均館→國子監→成均館으로 변화하였고, 직제상으로는 백관지에 나타난 것만 하더라도 충렬왕 원년 祭酒를 典酒로 개칭한 것을 비롯하여 이후 공민왕 18년까지 5차에 걸쳐 직제를 개혁하였다. 고려 후기 수차의 변혁을 거쳐 백관지에 마지막으로 정리된 국자감(성균관으로 개칭)의 직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丑 7〉

고려 후기 國子監 교육직제57)

직관	大司 成	司成	司藝	直講	典籍	成均 博士	諄諭 博士	進德 博士	學正	學錄	直學	學諭
정원	1	1	1	1	1	2	2	2	2	2	2	4
품계	정3	종3	종4	종5	종7	정7	종7	종8	정9	정9	종9	종9

이 〈표 7〉의 직제는 조선조의 태조 원년에 제정된 성균관 직제와도 거의 동일하다.⁵⁸⁾ 그러나 백관지에는 누락되어 있지만 공민왕 18년 이후에도 직제 상의 개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당시 직관의 변화로 관심을 끄는 것은 成均祭酒와 成均司業의 직관 명 칭이다. 백관지의 기록에 의하면 국자좨주는 공민왕 18년 마지막 직제 개편 에서 사성으로 고정되었으며, 사업은 공민왕 11년의 개혁에서 사예로 개칭되

⁵⁸⁾ 태조 원년의 成均館 직제는 고려 말의 것을 대부분 계승하였다(《太祖實錄》 권 1, 태조 원년 7월 정미).

명칭	大司 成	祭酒	樂正	直講	典簿	成均 博士	諄諭 博士	進德 博士	學正	學錄	直學	學諭
정원	1	1	2	1	1	2	2	2	2	2	2	4
품계	정3	종3	정4	정5	종5	정7	종7	정8	정9	정9	종9	종9

⁵⁵⁾ 충렬왕 30년에 全信은 試國學直講을 역임하였으며(《朝鮮金石總覽》上, 618 쪽), 李穡은 공민왕 6년에 試國子祭酒를 역임하고 있다(《高麗史》권 115, 列 傳 28).

⁵⁶⁾ 申千湜, 앞의 책, 147~162쪽.

^{57) 《}高麗史》 권 76, 志 30, 百官 1, 成均館.

어 고정되었던 것으로 정리되어 있다. 그러나 우왕 때에 王康과 姜淮伯은 성 균 제주로 나타나고 있으며, 尹紹宗도 우왕 때에 성균사업으로 나타난다. 이 러한 실증적 자료를 전제할 때 공민왕 18년의 직제 개혁 이후 우왕 초에 성 균관 직제에 대한 개혁이 또 있었음을 알 수 있다.59) 고려 후기의 직제 개편에서 특기할만한 것은 諄諭博士와 進德博士의 직관이다. 이 때는 바로 국자 감을 성균관으로 개칭하는 변화가 나타났던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후 공민왕 5년 국자감으로의 명칭 환원과 더불어 이들 관직의 명칭도 소멸된다. 또 6년 후 공민왕 11년에 다시 성균관으로 개칭되면서 이들 직관도 부활하여 이후 고려 말까지 성균관 직제로 고정되었다.

나. 학제 운영

가) 입학 자격

성종 때의 국자감 교육은 주·군·현 자제들이 서울에 올라가 배움을 익히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성종 5년(986)에는 이렇듯 상경하여 배움을 익히던 주·현 자제들 중에서 귀향을 원하는 207인을 本郷으로 돌려보내고, 남아있기를 원한 53인으로 새로이 교육체제를 정비하였다. 이것이 이후 국자감 교육으로 계승되어 발전하였는데 당시 이 학생들은 鄕貢과 연계된 지방호족의 자제였다. 성종 6년 8월의 교서에서 각 주·군·현의 장리나 백성으로하여금 가르칠만한 아들이 있으면 훈계하여 학교에 나아가도록 독려하고 있음60)을 볼 때, 이들 자제에 대한 국자감 입학도 개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 교서에서 "부모가 나라의 풍속을 알지 못하고 집안살림만 경영하기 위하여 자식들로 하여금 '공부를 해서 무엇하는가, 글을 읽어도 소용없다'고 하여 공부를 못하도록 하고 나뭇짐만 지라고 한다면 그 자식은 생애에 이름을 내지 못할 것이며, 그 어버이는 영화를 누리지 못할 것"61)이라고한 것을 볼 때, 일반 서인에 대한 국자감 교육도 폐쇄적이 아니었던 것 같

⁵⁹⁾ 申千湜, 앞의 책, 159~162쪽.

^{60) 《}高麗史》 권 74, 志 28, 選擧 2, 學校 성종 6년 8월.

^{61) 《}高麗史》 권 3, 世家 3, 성종 6년 8월 을묘.

다. 실제로 고려사회가 귀족화되기 이전에는 가세가 빈한한 하찮은 자로써 국자감에 진출하는 자도 있었던 것 같다. 그 대표적인 예로 李周佐를 들 수 있다.

인종 때에 式目都監에서 제정된 학식의 국자감 입학자격은 철저한 귀족적 성향을 풍기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唐制를 모방한 형식적인 규정이었을 뿐, 실제로 국자감 입학에는 크게 구속력이 없었다. 특기할 만한 것은 덕종 즉위년에 실시되었다고 하는 국자감시이다. 62) 자감시에 국자감시에 대한 학계의 견해는 다양하지만 지나칠 수 없는 것은 국자감 입학자격과도 크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다음의 사례를 살펴보자.

- ① 李文鐸: 公은 17세(인종 3년, 1125)에 京師에 들어와 취학하고 이후 成均試 에 합격하여 太學에 입학했다. 인종 24년에 上舍 제2인으로 급제했다(〈李文 鐸墓誌〉,《韓國金石文追補》).
- ② 柳公權 : 公은 의종 9년(1155) 成均試에 합격하고 다음에 太學에 들어갔다. 의종 14년 乙科로 등제하였다(〈柳公權墓誌〉,《朝鮮金石總攬》上).
- ③ 金存中: 公은 南省試에 올라 太學에 입학했으며 인종 말년에 등제했다(〈金 存中墓誌〉,《韓國金石文追補》).
- ④ 吳闡猷: 명종 19년(1189)에 司馬試에 합격하고 뒤이어 太學에 입학하여 명종 24년에 등제했다(〈吳闡猷墓誌〉,《朝鮮金石總覽》上).
- ⑤ 金 冲: 19세에 司馬試에 오르고 곧 太學에 뽑혀 입학하였다. 명종 8년 (1178)에 丙科로 등제하였다(〈金冲墓誌〉,《韓國金石文追補》).
- ⑥ 崔 寔:신종 4년(1201)에 司馬試에 합격하고 이 해에 太學에 입학했다(〈松 廣寺眞覺國師圓炤塔碑〉,《朝鮮金石總覽》上).
- ⑦ 李仁老: 명종 5년(1175) 豹牓에 올랐고 다음해 가을 賢陽에 들어갔다. 명종 10년 으뜸으로 龍門에 올랐다(崔滋,《破閑集》跋;《高麗史》권 102, 列傳 15, 李仁老).

위의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국자감시를 거쳐 국자감에 진학하고 있다. 이로 볼 때 국자감 입학에는 국자감시가 일차적인 자격 요건으로 작용하였 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자감이 반드시 국자감시 합격자들에 한하여만 입

⁶²⁾ 朴龍雲은 國子監試가 顯宗代에 이미 성립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하고 있다 (《高麗時代 蔭叙制와 科擧制研究》, 일지사, 1990, 19쪽).

학을 허용하였는가 하는 것은 의문이다. 조선시대 성균관의 경우 정규생인生員・進士 외에도 5품 이상관의 자제들에게「寄齋生」이란 명칭으로 입학이허용되고 있음을 볼 때, 고려 국자감도 품관 이상의 자제들에게는 입학이 허용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이것은 국자감 수학생 가운데 국자감시 합격이라는 전력이 없는 자도 다수 보이고, 조선시대 세종 때에 領集賢殿事左議政 黃喜와 右議政 孟思誠이 흥학조건을 지어 올리면서 "古者 公卿大夫元士之嫡子皆入大學"63)이라 한 기사에서 유추할 수 있다. 물론「古者」를 고려시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지만, 고려사회의 성향이 귀족화되고 있었음을 전제할 때 이러한 원칙이 고려시대에도 적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고려 중기 이후에는 사학 12도생에게도 국자감 입학이 허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인종 때의 교육개혁으로 12도의 위상이 격하되었고, 또 이들 12도생들도 과거에 응시하기 위하여는 3년 동안 국자감에서 의무적으로수학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 이것은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는 와중에서 그 의의를 잃어버린 것 같다. 공민왕 5년(1356) 4월에 이색은 과거와교육제도 전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무책을 올렸다.

지방의 鄕校나 중앙의 學堂에서는 그 재질을 살펴 12徒에 진급시키고, 12徒에서는 다시 이들을 모아 시험하여 成均館에 진급시키도록 하소서(《高麗史》 권 115. 列傳 28. 李穡).

이러한 건의의 수용 여부는 기록에 나타나지 않아 알 수 없지만, 이후 공 민왕 16년 국자감 교육에 대한 일대 개혁이 수반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 색의 건의안도 수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학생 정원

學式에 보이는 학생 정원은 국자학·태학·사문학만 하더라도 각각 300명씩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두 900명이다. 이것은 조선시대 성균관의 정원 200명에 비하면 무려 4~5배가 된다. 따라서 학식에 규정된 학생 정원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예종 때 國學 七齋는 고려 국자감의 개편이란 전제하에서 칠재의 정원을 국자감 학생 전체의 정원으로 파악하여 6, 70여 명으로 규정

^{63) 《}世宗實錄》 권 43, 세종 11년 정월 경술.

하는 견해도 있으며,64) 국학 정원 각각 300명은 잘못된 것으로 그 모두를 합쳐 300명인 듯하며 실상은 200명 정도를 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견해도 있다.65) 그런데 국학 7재를 국자감 교육에 개편으로 보아, 이의 정원을 국자감 전체의 정원으로 파악하려는 견해는 검토되어야 할 것 같다. 이것은 《고려사》선거지에 보이는 인종 8년 7월 국자감 생도들의 上書에서 "국학의 생도가 200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 내용이 실증해 주고 있다. 이 점에서 오히려「합계 300인」설이 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종 초기 서울에 머무르던 학생들은 모두 260명이었다. 성종 5년(986)에는 귀향을 원하는 자 207인을 돌려보내고 남아있기를 원하는 자 53인으로 새로이 교육체제를 정비하였다. 이후 성종은 몇 차례에 걸쳐 홍학에 대한 그의 의지를 교서로써 발표하였으며, 이와 같은 그의 의도에 따라 학생들은 크게 증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성종 11년 12월 국자감 건물의 창건에 즈음한 교서에서 "童蒙을 일깨워학교에 들어가게 하니 爨中과 稷下에 경서를 가지고 오는 선비가 무리를 이루고 夏序와 虞庠에 鼓篋의 무리가 저자를 이루었다"고 한 것은 이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 학생들의 수용을 위한 학교 창건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였으며, 이에 국자감 건물을 창건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같은 해《고려사》선거지에 보이는 "又創國子監"의 기사는 이러한 시대상을 반영한 산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성종 때의 국자감은 이후 문종 때를 전후하여 당시 사회의 귀족화 성향과 결부되어 문벌귀족에게 외면당하였다. 또 이들 문벌귀족들은 당시 사회적 성향에 부응한 12도를 비롯한사학에 집중되는 과정에서 국자감 교육은 침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정원도 대폭 감소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문종 17년(1063)에 "국자감 학생들이 근래에 대부분 학업을 폐하고 있다"는 《고려사》선거지의 기사와 숙종 7년(1102)에 제상 邵台輔 등이 건의한 국학 폐치론이 잘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예종의 국학 중흥정책은 국자감 정원 확충에 크게 기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주목되는 것은 예종 때를 전후하여 국자감시의 합격정원이 대폭 증

⁶⁴⁾ 閔丙河、〈高麗時代에 있어서 成均館의 成立과 發展〉(《大東文化研究》6·7, 成均館大 大東文化研究院, 1969~70), 16~17等.

⁶⁵⁾ 朴性鳳, 〈國子監과 私學〉(《한국사》6, 국사편찬위원회, 1975), 211쪽.

가하고 있다. 예종 때는 국자감시에서 한 차례마다 100명 전후의 인원을 선 발하고 있다.⁶⁶⁾

앞에서 이미 언급한 "국학의 생도가 200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 인종 때 국자감 생도들의 상서에서 당시 국자감은 정원 200명을 유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그런데 "200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즉 이전에는 국자감 수학생이 보다 더 많았다는 역설적인 이론이 가능할 수 있다. 예종 때의 국자감 중흥정책으로 국자감 수학생들의 수는 200명이상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인종 때에 이르러 귀족화의 성향에 따라 門蔭子弟들의 문음 입사의 보편화와 일반계층의 국자감시 합격률의 저하 등으로국자감 정원이 이 때에 이르러서는 200명 정도로 감소되었던 것이 아닌가하는 추리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이후 무신 정권을 거치는 동안 국자감 교육은 침체를 면하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은 고려 후기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것은 공민왕 16년 (1364) 국자감 교육에 일대 혁신을 단행하는데 "이 때 生員을 늘려서 항상 100명으로 하였다"(57)라는 기사는 이를 말해준다. 즉 공민왕 16년까지는 국자감의 정원이 100명도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공민왕 16년에 확정된 정원 100명은 이후 고려사회에 정착되어 조선사회의 초기 성균관 정원으로 계승되고 있다.

다) 수업 연한

국자감의 교육 연한으로서 관심을 끄는 것은 인종 때 학식에서 나타나는 교육과정의 이수 연한이다. 학식에 나타나는 교육과정과 그 이수 연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68)

- o 論語・孝經 도합 1년
- 尚書·公羊傳·穀梁傳 각각 2년 반(1년 반의 잘못)
- 周易・毛詩・周禮・儀禮 각각 2년
- 禮記・左傳 각각 3년

^{66) 《}高麗史》 권 74, 志 28, 選擧 2, 科目 國子監試 選場條를 보면 예종 원년 3월 에 安之忠 등 89인이 선발되고 있으며, 동 11년 2월에는 兪坦升 등 99인, 동 12년 3월에는 王存 등 103인이 선발되었다.

^{67) 《}高麗史》 권 74, 志 28, 選擧 2, 學校 공민왕 16년.

^{68) 《}高麗史》 권 74, 志 28, 選擧 2, 學校 인종.

위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업 연한을 합하면 8년 반(尚書·公羊·穀梁의 과정을 1년 반으로 시정하면 7년 반)이 나온다.

그렇다면 정종 2년(1036) 7월 "생도가 입학하여 만 3년이 되면 바로 監試를 보도록 허가하였다"와 예종 5년(1110) 9월 "製述‧明經 등 여러 과업에 새로 추천된 사람은 國子監에 3년간 소속시켰다"는 판문과는 크게 배치가 된다.

학식에 규정되고 있는 각 경서의 이수기간은 경서 이수를 위한 최장기간으로 설정한 것이지, 모든 학생으로 하여금 이 이수기간 동안에 정해진 경서만을 수업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은 아니었을 것이다. 문종 17년(1063)에 "儒生으로서 국자감에 재학한 지 9년이 되고 律生으로서 6년이 된 사람으로 공부에 어두워 성과가 없는 자는 모두 퇴학시킬 것"(59)을 판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자감에서 수학할 수 있는 최장 연한일 것이다. 신라 국학의경우에도 수업 연한을 9년으로 한정하면서 이 동안 학업을 성취하지 못한자는 차魯不化者로 취급하여 퇴학하였다. 그러나 讀書三品科의 규정을 볼 때五經・三史・諸子百家에 검통하는 자는 품등을 뛰어 발탁하여 등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70)

고려 국자감생은 신라 국학과 마찬가지로 학업 성적이 뛰어난 자는 그 승차과정에 특전이 있었을 것이다. 즉 국자감 학생은 자신의 수학능력에 따라정해진 경서를 이수하고는 바로 다음 경서로 올라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기준은 국자감 학생의 성적평가인 月書季考에 의하였을 것이다. 月書란 국자감생에게 행하는 매월의 성적평가였으며, 季考는 季春(3월)·季夏(6월)·季秋(9월)·季冬(12월)의 4계절에 행하는 데 이 때에 달마다 성적을 종합하여 行藝에 대한 分數를 평가하였다. 행예분수는 국자감 수학기간과도 연계되어 14분 이상을 받은 자는 바로 과거의 終場에 응시할 수 있는 특전을 가졌으며 4분 이상을 받은 자도 詩賦場에 나아갈 수 있었다.지) 이것은 바로 국자감 졸업성적과도 연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고려 국자감은 四季私試의 평

^{69) 《}高麗史》 권 74, 志 28, 選擧 2, 學校 문종 17년 8월 制.

^{70)《}三國史記》 권 38. 雜志 7. 職官 上 國學.

^{71) 《}高麗史》권 74, 志 28, 選擧 2, 學校 인종 13년 制. 《高麗史》권 73, 志 27, 選擧 1, 科目 1 인종 14년 8월 中書門下奏. 《高麗史》권 73, 志 27, 選擧 1, 科目 1 의종 8년 5월.

가로서 수업받는 경서를 끝마칠 수 있었을 것이며, 곧 이어서 상급의 다른 경서로 옮겨 이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로 미루어 보아 정종과 예종 때 판문에서의 국자감 재학 3년은 그대로 국자감의 수업 연한과도 연 계될 수 있을 것이다.

2) 동 · 서학당

(1) 설립

學堂은 고려시대의 초등교육기관으로서, 이에 대한 기록은 원종 때에 처음 나타난다.

東·西學堂을 설치하고 각각 別監·敎學·敎導를 파견하였다(《高麗史》 권 74. 志 28. 選舉 2. 學校 원종 2년 3월).

즉 원종 2년(1261)에 동부학당과 서부학당을 설치하고, 직제로서 別監・教學・敎導를 두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고려사절요》의 같은 해기사에서는 "復置東西學堂"72)이란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는 점이다.《고려사절요》의 기사에 나타나는「復置」란 말을 음미하면 동·서학당은 이전에 이미 설립되어 있었던 것을 이 때에 와서 다시 설치했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고려전기에는 학당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 확실한 것은 알 수 없다. 다만과거를 위한 고등교육이 있었다면 초학자를 위한 초등교육도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위 기록에서 동·서학당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는 원종 2년 3월은 아직도 開京으로 환도하기 이전임을 감안할 때, 이 때 설치된 학당은 江都에서의 일로 파악해야 할 것 같다. 따라서 원종 11년에 개경으로 환도하자 얼마 후 학당도 개경으로 이전되었던 것 같다. 이에 대하여《고려사》에는 누락되어 있지만、《고려사절요》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다.

東・西學堂을 설치하고, 判秘書省 金帆과 尚書左丞宣 文烈을 別監으로 삼았다(《高麗史節要》권 18, 원종 13년 6월).

^{72) 《}高麗史節要》 권 18, 원종 2년 3월.

별감은 학당 교육의 최고 책임자로서, 이 때에 임용된 判秘書省 金帆은 동부학당, 尚書左丞宣 文烈은 서부학당의 별감으로 각기 임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학당 교육은 고려의 교육전통으로 정착되게 되었는데 이후 국내 정세의 불안과 外寇의 침입 등으로 학교 교육이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가는 과정에서 학당도 퇴락을 면하지 못하였던 것 같다. 이러한 사실은 공민왕 원년(1352) 2월에 成均館·12徒와 더불어 학당시설의 복구를 촉구하는 왕명을 내리고 또 동 6년에는 "서울과 지방의 학교를 수리하라" 73)는 왕명을 내리고 있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공민왕은 고려 후기에 교육중흥을 주도하였는데 그의 노력으로 학교 교육이 크게 활성화 됨과 아울러 학당 교육도 번창하게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공양왕 원년(1389)을 전후한 시기에는 동·서학당은 크게 침체되어 교육적 기능을 거의 상실하였던 것 같다.74) 이로서 공양왕 2년에는 학당교육에 대한 일대 개혁이 수반된다. 즉 기존의 동·서학당을 개편하여 개경의 5부의 儒學敎授官을 파견함으로써 5부 학당으로 그 체제가 변모하게 된다. 이 것은 《고려사》선거지의 "서울의 5部와 西北面의 府·州에 儒學敎授官을 파견하였다"75)란 기사에서 확인된다. 당시 이러한 개혁은 "都城 안에 5부 학당을 세우고 지방에는 鄕校를 설치하여 儒術을 일으켰다"76)는 鄭夢周의 노력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2) 운영과 성격

동·서학당은 별감을 교육책임자로 하고, 敎學과 敎導라고 일컬어지는 교 관이 있어 교육을 운영하였고, 5부 학당으로 개편하고 난 후에는 유학 교수 관이 파견되어 교육을 전담하였다. 동·서학당도 성균관과 마찬가지로 學田

^{73) 《}高麗史》 권 74, 志 28, 選擧 2, 學校 공민왕 6년 정월.

⁷⁴⁾ 이것은 恭讓王 원년 12월에 大司憲 趙浚 등이 "…近因兵與 學校廢弛 鞠爲茂草…"라 상소하는 데서 알 수 있다(《高麗史》권 74, 志 28, 選擧 2, 學校).

^{75) 《}高麗史》 권 74, 志 28, 選擧 2, 學校 공양왕 2년 2월.

^{76) 《}高麗史》 권 117, 列傳 30, 鄭夢周.

을 지급받아 운영하였을 것이며,770 교관에게는 월봉이 지급되었던 것 같다.780 학당 교육의 성격은 공민왕 원년 4월에 진사 이색이 "지방의 鄕校와 중앙의 學堂에서는 그 재능을 심사하여 12徒에 올리자"790고 건의한 내용에서 알수 있는 바와 같이 향교와 동격의 수준이었다. 이후 《고려사》에는 한결같이 "內而學堂 外而鄕校"라 하여 같이 취급하고 있으며, 이것은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이다.800

학당의 입학자격도 향교와 동일하였을 것이며, 조선 개국 후 鄭道傳이 찬진한 《朝鮮經國典》에는 "部學教授를 두어 童蒙을 가르쳤다"81)고 하여 그 대상이 어린 아이임을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태종 13년(1413) 6월, 당시 성균관 대사성인 權遇를 비롯한 성균학관들이 교육 개혁안을 건의하고 있는데, 이 건의안의 첫머리에 "옛적에 따르면 사람이 태어나 8세가 되면 모두 부학에 들어갔다"82)고 한 것을 보면 8세 이상이 그 대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종 때 설립된 동·서학당은 고려 말에 이르러서는 대사헌 조준이 "여러차례 전란으로 무성한 풀밭이 되었다"고 할 정도로 그 교육적 기능을 상실하였고, 이로써 공양왕 2년에는 정몽주의 건의를 수용하여 기존의 동·서학당을 개편하여 5부 학당의 체제로 정비하였다. 그러나 당시는 고려의 운명이경각에 달려 있던 시대로서 비록 학당 교육에 대한 개혁이 행해졌으나 학사를 비롯한 교육시설은 갖추지 못하였고, 수업은 단지 사원의 승방을 빌려 행하여졌을 뿐이다.

처음 5部學堂을 설립하였으나 黌舍는 건립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동부학당은 학생들을 順天寺에 모아 수학하였고, 서부학당은 彌勒寺에 모아 수학하였다 (《定宗實錄》권 5, 정종 2년 8월 계축).

^{77)《}高麗史》권 74, 志 28, 選舉 2, 學校 공민왕 12년 敎書에 "…成均十二徒東西學堂諸州郡鄉校…其土田人口 或被豪强所兼幷者 官爲析辨 以贍學用"이란 기사에서 學田을 지급받았음이 확인된다.

⁷⁸⁾ 이것은《世宗實錄》권 52, 세종 13년 5월 무진조에 당시 吏曹判書 權珍이 學堂의 교관 증원을 요청하면서 "乞依前朝設敎官給月俸之例…"라 한 데서 알 수 있다

^{79) 《}高麗史》권 74. 志 28. 選舉 2. 學校 공민왕 원년 4월.

⁸⁰⁾ 申千湜, 〈朝鮮前期 學堂의 設立과 運營에 대한 研究〉(《明知史論》 2, 1989).

⁸¹⁾ 鄭道傳,《朝鮮經國典》上, 學校.

^{82) 《}太宗實錄》 권 27, 태종 13년 6월 정축.

위 기사는 고려 말부터 조선 초기의 학당 교육에 대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학당 교육은 이후 조선사회로 계승되어 세종 때에 4部學堂의 체제로 정비되면서 조선의 교육전통으로 정착되어 갔다.

3) 10학

十學은 일반적으로 雜學이라고 불리던 기술학 교육의 10개 분야를 의미한다. 이에 대한 기록은 《고려사절요》 공양왕 원년(1389) 4월조에 "10학 교수를 두었다"는 기사에서 처음 나타나고 있으나⁸³⁾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기술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고려사》백관지에서는 그 내용의 대강을 알수 있다.

공양왕 원년 十學에 敎授官을 두었는데 禮學은 成均館에, 樂學은 典儀寺에, 兵學은 軍候所에, 律學은 典法司에, 字學은 典校寺에, 醫學은 典醫寺에, 風水陰 陽學은 書雲觀에, 吏學은 司譯院에 나누어 예속시켰다(《高麗史》권 77, 志 31, 百官 2, 諸司都監各色).

그렇지만 위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禮學·樂學·兵學·律學· 字學·醫學·風水陰陽學·吏學 등 8개 부문이며, 나머지 2개 분야는 누락되어 있다. 이것을 이해하는 데는 조선 초기 6학 및 10학을 살펴보면 도움이될 수 있을 것이다.

六學을 설치하여 良家子弟로 하여금 隷習하도록 하였으니 (그 내용은) 1. 兵學, 2. 律學, 3. 字學, 4. 譯學, 5. 醫學, 6. 算學(《太祖實錄》권 4, 태조 2년 10월 무술).

十學을 설치하였는데, 이는 左政丞 河崙의 上啓에 따른 것이다 (그 내용은) 1. 儒, 2. 武, 3. 吏, 4. 譯, 5. 陰陽風水, 6. 醫, 7. 字, 8. 律, 9. 算, 10. 樂이다(《太宗實錄》 권 12, 태종 6년 11월 신미).

위의 기사로 미루어 볼 때 고려시대 10학에서 누락된 2개의 분야는 譯學

^{83) 《}高麗史節要》권 34, 공양왕 원년 4월.

과 算學이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태조는 점진적 개량주의를 지향했던 군왕으로서 즉위 2년(1393)에 먼저 6학을 설치하면서 역학과 산학을 그 속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많은 시사를 주고 있다. 그리고 앞에서 제시한《고려사》기사에 보이고 있는 학문분야에 역학과 산학을 포함시켜 10학으로 보는 경우,예학을 유학으로 칭하고 병학을 무학으로 칭하는 명칭상의 변화를 제외하고는 태종 6년(1406) 하륜의 건의에 의해 설립되는 10학의 내용과 일치한다.

공양왕 원년에 설치된 10학은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행해 왔던 이들 분야에 대한 교육을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통합하여 체계화했던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다. 이들 교육은 국초부터 국가의 관심대상이 되어 왔다. 율학·서학·산학에 대한 교육은 일찍부터 중요시하여 국자감에서 교육되어 왔는데, 고려 말기 국자감이 성균관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유학 전문 교육기관으로 전환하자 이들에 대한 교육은 해당 관서로 이관되었다. 즉 10학의 성립은 성균관이 유학 전업의 교육기관으로 전환함에 따라 고려의 학제가 성균관 교육과 기술학 교육으로 이원화되는 시기에 나타난 학제 개편으로 파악할 수있다.

10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은, 조선시대 6학의 경우「良家子弟」라 하였고, 고려 인종 때에 식목도감에서 제정한 학식에서 율·서·산학의 경우「文武官 8품 이상의 子 및 庶人」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일반적으로 하급관리의 아들이나 일반 서인이 그 대상이었을 것이다.

① 禮學; 일명 儒學이라고도 하며 기초적인 유학적 교양과 행정실무를 교육하였는데 공양왕 원년에 10학의 하나로 정비되면서 성균관에서 유학 교수관이 담당하였다. 이로 볼 때 이 때의 성균관 교육은 상급관료를 배양하던 전통적 유학 교육과 하급관료를 양성하던 예학 교육으로 이원화되었음을 알수 있다. 수학과목은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으나 조선시대 유학의 과목이 《五經》・《四書》・《通鑑》・《宋鑑》이었음을 감안할 때84) 고려시대도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②樂學; 廟社 및 궁중의 주요 의례 및 행사에는 반드시 악공의 行禮가

^{84) 《}世宗實錄》 권 47, 세종 12년 3월 모우.

전제되고 있었는데 이들 악공의 양성이 그 목적이었다. 악공의 양성은 국초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따라서 제사 및 贈諡를 관장하는 典儀寺는 일찍부터 박사의 직을 두고 있었는데,850 이는 악공의 양성과도 관계가 있을 것이다. 공양왕 원년 4월에는 악학을 두면서 전의시로 하여금 관할하게 하고 악학 교수관을 제도화하였다.

③ 兵學; 일명 武學이라고도 하며, 무예와 병서를 학습하였다. 문종 30년 (1076)에 제정된 文·武班祿에 무학박사가 사문박사와 같은 반열에서 20석의 녹봉을 받았음이 나타나고,86) 예종 때에는 국학 7재를 설치하면서 무학재를 두어 이에 대한 교육을 전문화하였다.87) 그러나 예종 때에 국학 7재의 하나로 설치된 무학재는 얼마 후 인종 때에 폐지되었고, 이후 공민왕 20년(1371)에 "문·무의 등용은 한쪽만을 폐할 수 없으니 중앙의 성균관으로부터 지방의 향교에 이르기까지 문·무 양학을 개설하여 인재를 양성하여 등용에 대비하라"88)는 왕명을 내려 부활을 시도하였다. 고려 말에는 왜구의 침입이 잦았고, 이에 따른 국방강화책이 국가의 당면과제로 부각되게 된다. 이 때문에우왕 10년(1384)에는 驛人 중랑장 郭海龍이 건의하여 武藝都監을 설치하였다.89) 또 공양왕 원년에는 10학의 하나로 정비되면서 병학이란 명칭으로 소관 부서인 軍候所에서 교육을 담당하게 되고 교수관이 설치되었다.

④ 律學; 刑政訟事의 실무기능을 수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국가는 일찍부터 율학을 국가통치의 기무로 파악하여 국자감에서 이를 교육하도록 하였다. 인종 때 식목도감에서 제정한 학식에서는 문무관 8품 이상의 子, 서인, 문무관 7품 이상의 子로서 원하는 자는 수학할 수 있도록 하였다.90)

비록《고려사》백관지에서는 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율학박사·율학조교 가 공민왕 5년(1356)의 직제에 정8품·종9품으로 처음 나타나지만,91) 목종 원

^{85) 《}高麗史》 권 76, 志 30, 百官 1, 典儀寺.

^{86)《}高麗史》 권 78, 志 32, 食貨 1.

^{87)《}高麗史》 권 74, 志 28, 選擧 2, 學校.

⁸⁸⁾ 위와 같음.

^{89)《}高麗史》 권 77, 志 31, 百官 2, 諸司都監各色.

^{90) 《}高麗史》 권 74, 志 28, 選擧 2, 學校.

^{91)《}高麗史》 권 76, 志 30, 百官 1.

년(998) 3월에 제정된 문무반전시과에서⁹²⁾ 이 직관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때 이 직관은 일찍부터 제도화되어 이 분야의 교육을 담당해 왔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인종 대 京師六學이 성립되기 이전까지는 刑部에 예속되어 운영되었다. 또 율령으로 시험하는 과거로서 明法業이 있어 그 합격자는 이 분야의 관리로 발탁하였다. 고려 말 공양왕 원년에 성균관이 유학 교육기관으로 전문화되는 과정에서 율학 교육은 10학의 하나로 편제되어 소관 부서인 典法 司에 이속되고, 율학 교수관이 설치되었다.

⑤字學; 書學이라고도 하며, 經籍・祝疏를 위한 실무행정 관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 역할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일찍부터 국자감에 편제되어수학하였다. 목종 원년 3월에 제정된 문・무반전시과에 書學博士・篆書博士가 보인다. 수학 대상은 율학과 같으며, 교과 내용은《說文》・《五經字樣》을 비롯하여 眞書・行書・篆書・印文 등의 실기를 주로 하였다.93) 明書業이라는 과거를 통하여 이 분야에 우수한 자를 발탁하였다. 율학과 마찬가지로 고려말 공양왕 원년에 10학의 하나로 편제되어 소관 부서인 典校寺에 이속되고, 자학 교수관이 설치되었다.

⑥ 醫學; 의업 및 치료에 대한 학문을 수학하는 것으로 일찍부터 活人之方으로 인식되어 국가의 관심 대상이 되어왔다. 성종 6년(987) 전국 12목에 경학박사와 더불어 의학박사를 파견하여 의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자하였다.94) 교육은 典醫寺에서 담당하여 목종 때 이미 박사의 직제가 마련되었으며, 문종 때는 박사와 더불어 조교와 呪噤博士의 직제도 제도화되고 있었다.95) 또 문종 30년(1076)에 제정된 양반전시과에서는 獸醫博士의 직제도보인다.96) 주요교과내용은《素問經》・《甲乙經》・《本草經》・《明堂經》・《脈經》・《針經》・《難經》・《炎經》・《劉涓子方》・《瘡疽論》등이었는데, 이것은이 분야의 과거 과목에서 확인된다. 의학을 수학한 자들은 그 전공분야에 따

^{92)《}高麗史》 권 78, 志 32, 食貨 1.

^{93)《}高麗史》 권 73. 志 27. 選舉 1. 明書業.

^{94) 《}高麗史》 권 74, 志 28, 選擧 2, 學校 성종 6년 8월.

^{95)《}高麗史》 권 76, 志 30, 百官 1, 典醫寺.

^{96)《}高麗史》 권 78, 志 32, 食貨 1.

라 의업과 주금업으로 구분하여 과거에 응시하였다.97) 공양왕 원년 10학의 하나로 편제되면서 교수관이 설치되었다.

⑦風水陰陽學;天文·災祥·曆數·測候 등에 대한 학문을 학습 대상으로 하였다. 국초부터 太卜監과 太史局을 설치하여 卜博士를 두었으며,980 광종 9 년(958) 처음으로 시행된 과거에서도 진사과·명경과와 더불어 이 분야의 과거인 卜科를 실시하였다. 또 인종 14년(1136)에 규정한 과거 과목 중에 卜業과 더불어 地理業도 나타난다.99) 목종이 즉위 후 내린 조서에 "地理學生으로서 10년이 된 자는 모두 脫麻를 허락하였다"100)라 한 내용을 볼 때 이 분야교육은 일찍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고려사》백관지에는 공민왕 5년(1356)에 "卜助敎를 두고 종6품으로 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문종 30년 양반전시과에서 복조교가 수의박사와 더불어 제16과에 배열되고 있음을 볼 때¹⁰¹⁾ 박사와 더불어 복조교의 직제도 일찍부터 제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교육은 해당 관서인 書雲觀에서 행하였다.

주요 교과 내용은《新集地理經》·《劉氏書》·《地理決經》·《經緯合》·《地鏡經》·《口示決》·《胎藏經》·《謌決》·《蕭氏書》등이었음을 지리업 과목에서 알 수 있다.102) 풍수음양학은 그 전공 분야에 따라 복업과 지리업으로 구분하여 과거에 응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공양왕 원년에 10학의 하나로 편제되면서 교수관이 설치되었다.

⑧ 吏學; 吏文의 전문적인 학습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며, 외교문서의 작성 등이 주요 기능이었다.¹⁰³⁾ 《고려사》백과지 10학조에서는 이학의 교육 담

^{97) 《}高麗史》 권 73, 志 27, 選擧 1, 醫業.

^{98) 《}高麗史》 권 76, 志 30, 百官 1, 書雲觀.

⁹⁹⁾ 혹 卜業을 呪噤業과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金斗鍾,《韓國醫學史》, 1966, 232쪽·三木榮,《朝鮮醫學史及疾病史》1962, 85쪽),《高麗史》百官志에 呪噤博士는 典醫寺에 소속되어 있으며, 呪噤業의 과목 또한 의학과 연계되는 것으로 보아 이는 의업의 일종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복업과 관계가 있는 卜博士·卜助敎는 書雲觀에 예속된 직관임을 감안할 때 복업은 地理業과 더불어 風水陰陽學의 진출로로 보아야 할 것이다.

^{100)《}高麗史》 권 74, 志 28, 選擧 2. 恩例.

^{101)《}高麗史》 권 78. 志 32. 食貨 1.

^{102) 《}高麗史》 권 73, 志 27, 選擧 1, 인종 14년 11월 地理業.

¹⁰³⁾ 고려시대의 기록에는 吏學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서술된 것이 없다. 그러 나 조선시대 이학의 기능에 대하여 《太宗實錄》권 16, 태종 8년 12월 "吏文事

당기관을 司譯院이라 하였으나 이것은 아마도 잘못된 것 같다. 사역원은 충렬왕 2년에 설립된 通文館이 개칭된 것으로, 그 주요 직무는 譯語를 관장하는데 있었다.104) 그러나 吏學은 交聘에 따른 외교문서의 작성을 위한 실무적기능이 그 목적이었으므로, 단순히 역어를 관장하는 사역원에서 이러한 기능까지 담당하였을까는 의문이다. 10학이 주로 전문 담당부서에서 행해졌다면,이학도 교빙을 전담하고 있던 典理司에서 행해졌을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전리사는 충렬왕 원년에 吏部와 禮部를 병합하여 개칭된 것인데,예부의 주요 기능의 하나가 교빙 등에 있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또 조선시대에는 承文院에서 이학을 교수하였다.105) 이학에 대한 중요성은 고려 말에 對元관계로 더욱 높아져, 충혜왕 원년에는 吏學都監을 설치하기에 이르렀고,106) 충목왕 4년에는 여기에 판사 7인,부사 3인,판관 3인,녹사 4인을 두었다.107)이학은 이후 공양왕 원년 10학의 하나로 편제되면서 교수관이 설치되었다.

⑨ 算學;《고려사》백관지 10학조에는 산학이 나타나지 않지만, 기록과정에서 나타난 결락이었을 뿐 산학은 고려 말에도 중요한 기술학의 하나였을 것이다. 이것은 조선 건국 후 처음으로 제정 반포되는 문·무백관제에 算學博士가 종9품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서도 알 수 있다.108) 산학은 국가의 재정및 회계와 연계되는 학문으로 일찍부터 국가의 주요한 관심 대상이 되어 율학·서학과 더불어 국자감에 편제되어 있었다. 목종 원년 3월에 제정된 문무반전시과에서도 산학박사는 16과에 배열되어 있다.109)

大急務 年前擇吏學可當三十員口傳"의 내용을 보면, 외교문서 등의 작성이 중 요 기능이었음을 알 수 있다.

^{104)《}高麗史》 권 76, 志 30, 百官 1, 通文館.

^{105)《}高麗史》권 77, 志 31, 百官 2, 諸司都監各色에서는 十學을 설명하면서 "分隸 禮學于成均館 樂學于典儀寺 兵學于軍候所 律學于典法寺 字學于典校寺 醫學于典醫寺 風水陰陽等學于書雲觀 吏學于司譯院"이라 하여 8學만을 기술되고 있다. 그런데 필자의 견해로는 마지막 이학 부분에서 문자의 결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吏學于典理司 算學于版圖司 譯學于司譯院"이었을 것인데 방점 부분이 결락되어 "吏學于再理院"으로 표기되었던 것 같다.

^{106)《}高麗史》 권 74. 志 31. 百官 2. 諸司都監各色.

^{107)《}高麗史》 권 77, 志 31, 百官 2, 諸司都監各色.

^{108) 《}太祖實錄》권 1, 태조 원년 7월.

^{109) 《}高麗史》 권 78, 志 32, 食貨 1.

산학 교육에 대하여는 단지 "산학(박사)는 산술을 맡아 가르친다"110)라는 기록이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러나 明算業의 과목이 九章・綴術・謝家・三開 등111)이었음을 감안할 때, 이들 과목이 그 주요 교과였을 것이다. 고려 말 국자감이 성균관으로 개칭되고 유학 교육기관으로 전문화되는 과정에서 산학은 공양왕 원년 10학의 하나로 편제되어 소관 부서인 版圖司로 이속되고 산학 교수관이 설치되었을 것이다.

⑩ 譯學; 역어는 대외적인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조건이다. 따라서 역학은 일찍부터 국가에서 장려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고려 전기에는 이에 대한 기록이 없어 알 수 없다. 그러나 고려 전기의 경우 송·요·금과의 관계가 복잡하였음을 감안할 때 이 분야에 대한 교육이 행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112) 고려시대의 역학에 대한 비교적 구체적인 기록은 충렬왕 2년 (1276)에 설치한 通文館에 관한 기사이다.

禁內學官 등 叅外로서 나이 40세 미만인 자로 하여금 漢語를 습득하게 하였다. 때에 舌人(驛人: 필자 註)들이 대부분 미천한 데서 입신하여 통역하는 것이부실하고 또 못된 마음을 품고 사사로운 이익을 도모하였으므로 叅文學事 金坵가 건의하여 이를 설치하였다. 후에 司譯院을 두고 譯語를 관장하게 하였다(《高麗史》권 76, 志 30, 百官 1, 通文館).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통문관 설립의 목적이 漢語의 습득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전에도 舌人이 있었음을 감안할 때 驛人의 양성을 위한제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통문관의 설치 이전에도 《고려사》에譯語都監의 명칭이 나오는 데서 알 수 있다. 즉 고려 후기 鄭子晪은 역어도감 녹사로서 蒙語를 전습하고 있다는 기록이 보인다.113) 또 통문관의 기능으로는 한어 습득이 제시되어 있는데 반하여 사역원으로 개칭한 후에는 한어라는 용어 대신에 역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한어 이외에 다른

^{110) 《}高麗史》 권 74, 志 28, 選擧 2, 學校.

^{111)《}高麗史》 권 73, 志 27, 選擧 1, 科目.

¹¹²⁾ 宋春永의〈高麗時代의 譯學教育〉(《大丘史學》35, 1988)에 의하면,《高麗史》百官志 中書門下省條에 驛吏・通事가 설치되고 있으므로, 譯官 양성을 위한역학교육이 제도화되었을 것이며, 그 종류는 漢語・契丹語・女眞語・倭語・蒙古語 등이었을 것으로 보았다.

^{113)《}高麗史》卷 113, 列傳 36, 康允招 附 鄭子琠.

역어도 습득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국제관계상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몽고어인데, 고려 후기 원나라와의 밀착성으로 보아 몽고어의 교육도 행해졌을 것이다. 이것은 통문관 설치 이전에도 역어도감이 있어 몽고어를 가르쳤다는 사실과, 또 조선 건국 초기의 사역원에서도 한어와 더불어 몽고어가 교육되고 있는 데서¹¹⁴⁾ 이러한 가능성을 더욱 짙게 한다. 공양왕원년에 이 역학은 10학의 하나로 편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사학 12도

(1) 설립

私學 12徒란 문종 때 문헌공 최충이 설립한 文憲公徒를 비롯한 12개의 사학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이에 대한 내용은 《고려사》선거지를 통해 알 수있다.

私學은 문종 때 大師 中書令 崔冲이 후진을 모아 교육하기를 게을리하지 아 니하니 선비와 평민의 자제가 그의 집과 마을에 가득하였다. 마침내 9齋로 나누 어 (그 명칭을) 樂聖・大中・誠明・敬業・浩道・率性・淮德・大和・待聘이라 하 였다. 이를 일컬어 侍中崔公徒라 하였으며 양반의 자제들로서 무릇 과거에 응시 하려는 자는 반드시 먼저 徒中에 속하여 공부하였다. 매년 여름철에는 승방을 빌려 夏課를 하였으며. 徒中에서 급제하여 학문이 우수하고 재능이 많으나 아직 관직에 나아가지 않은 자를 택하여 敎導로 삼아 9經 3史를 학습하였다. 간혹 선 배가 찾아 오면 촛불에 금을 그어 한정된 시간에 시를 짓게 하고, 그 차례대로 榜을 내어 이름을 불러 들어오도록 하여 술자리를 베풀었다. 童子와 冠子가 좌 우로 벌려 있으며 술상을 받드는데 進退에 예의가 있고 長幼의 질서가 있었다. 이와 같이 하면서 해가 지도록 시를 읊어 주고 받으니 보는 사람마다 아름답게 여기고 감탄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그 후부터는 무릇 과거에 나아가려는 이는 9齋에 이름을 올리게 되니 이름하여 文憲公徒라 하였다. 또 儒臣으로서 徒를 세 우 이가 11인이 있으니. 弘文公徒는 侍中 鄭倍傑이 세웠는데 다른 이름으로 熊 川徒라고 칭하며, 匡憲公徒는 叅政 盧旦이, 南山徒는 祭酒 金尚賓이, 西園徒는 僕射 金無滯가, 文忠公徒는 侍中 殷鼎이 세운 것이다. 良愼公徒는 平章事 金義珍

^{114) 《}太祖實錄》권 6, 태조 3년 11월 을묘.

이 세운 것이라고도 하고 또는 郎中 朴明保가 세운 것이라 하기도 한다. 貞敬公徒는 平章事 黄瑩이, 忠平公徒는 柳監이, 貞憲公徒¹¹⁵⁾는 侍中 文正이, 徐侍郎徒는 徐碩이 세웠으며, 龜山徒는 누가 세웠는지 자세하지 않다. 이들과 文憲公(崔冲)徒와 합하여 세상에서는 12徒라 일컬었는데, 그 중에서 崔冲의 徒가 가장성황이었다(《高麗史》권 74. 志 28. 選舉 2. 學校 私學).

위 기사를 근거로 12도와 그 설립자를 정리하면 다음 〈표 8〉와 같다.

〈丑 8〉 12徒

도 명	설 립 자	최종관직			
文 憲 公 徒	崔 冲	大師 中書令			
弘 文 公 徒	鄭 倍 傑	侍 中			
(또는 熊川徒)					
匡憲公徒	盧 旦	黎 政			
南 山 徒	金 尚 賓	祭 酒			
貞 敬 公 徒	黄 瑩	平 章 事			
西 園 徒	金 無 滯	僕射			
文 忠 公 徒	殷鼎	侍 中			
良 愼 公 徒	金 義 珍	平 章 事			
	(또는 朴明保)				
忠 平 公 徒	柳 監	?			
貞 憲 公 徒	文正	侍 中			
徐 侍 郞 徒	徐 碩	?			
龜 山 徒	?	?			

12도는 최충의 문헌공도가 그 시초인데, 그렇다면 문헌공도를 설립한 배경은 무엇이며, 또 설립한 시기는 언제인가 하는 의문이 나온다. 먼저 최충이 문헌공도를 설립한 배경을 살펴보기 위하여는 《고려사》최충의 열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崔冲傳에 12도에 대한 설명에 "현종 이후에 干戈가겨우 멈추었으나 文敎에는 겨를이 없었다"는 기사가 전제되고 있다.116) 이로 볼 때 현종 때의 거란과의 전쟁 이후 고려사회는 전후 복구사업과 당면한 국가 시무로서 교육에는 크게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¹¹⁵⁾ 貞憲公徒는 貞獻公徒의 誤記일 것이다. 文正은 宣宗 10년에 죽은 후 貞獻公이라 시호를 받았다.

^{116)《}高麗史》 권 75, 列傳 8, 崔冲.

또《고려사》선거지 학교조에서는 현종 이후 문종 이전까지는 학교 교육에 대한 기사가 하나도 보이지 않으며, 또 科學 운영의 경우 목종 때는 매회 합격자 수가 진사ㆍ명경을 합하여 20명이 넘고 있는데 반하여, 현종 이후에는 그 합격자 수가 20명 이하로 대폭 감소되고 있다. 합격자의 등급을 보더라도 목종 때까지는 거의 갑과ㆍ을과에 집중되고 있는 同進士의 경우는 성종 12년(993)의 과거와 목종 원년 3월의 과거를 제외하고는 찾아볼 수 없는데 반하여 현종 이후에는 거의 매회에 동진사를 선발하였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현종 때까지는 恩賜로서 선발된 자는 겨우 1명에 불과한데 반하여, 덕종 이후에는 거의 보편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117)

이것은 과거 응시자의 학문적 소양을 반영하고, 아울러 고려사회의 성격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목종 때까지는 갑과 합격자를 배출할 수 있을 정도로 응시자의 학문적 소양이 높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교 육이 활성화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종 때는 전란으로 교육도 황폐화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며, 따라서 응시자의 학문적 소양도 크게 저하되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동진사를 배출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 이다. 또 恩賜科의 성격이 "進士明經科에 열 번 응시하고 급제하지 못한 이를 대상으로 하였다"¹¹⁸는 점에서 볼 때, 덕종 이후에 은사과가 보편화되고 있다 는 것은 당시 학문자의 질적 수준이 크게 저하되고 있었음을 반영하는 것이 기도 하다. 당시 학문이 침체되었다는 것은 학교 교육의 침체를 의미하며, 특히 국자감의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국자감의 교육도 현종 이후 성격에서 많은 변화를 보인다. 국자감 설립 초기에는 그 곳에서 수학할 수 있는 자들의 문호가 크게 개방되고 있었다. 그러나 현종 15년(1024)에는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鄕頁의 수가 크게 감소 하였다.119) 또 덕종 즉위년(1031)에는 국자감시를 설행하여120) 국자감 입학

^{117)《}高麗史》 권 73, 志 27, 選擧 1, 選場.

^{118) 《}高麗史》 권 74, 志 28, 選擧 2, 恩例.

^{119)《}高麗史》권 73, 志 27, 選擧 1, 科目 1 현종 15년 12월 判, "諸州縣千丁以上歲 頁三人, 五百丁以上二人, 以下一人, 令界首官試選…依例送京 國子監更試入格者 許赴擧 餘並任還本處學習"의 기사에서 처음으로 鄕頁의 정원이 정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國子監 입학 자격과도 관계가 있을 것이다. 즉 위의 기사에서 보이는 "餘並任還本處學習"이란 기사는 지금까지 국자감 입학에 지장이

자격에 제한이 가해졌으며, 靖宗 2년(1036) 7월에는 국자감에 입학한 후 만 3년이 지나야 監試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121)가 생김으로써 국자감생의 감시 응시에 제재가 가해졌다. 그리고 동왕 8년에는 "國子監 諸業學生으로 장년이 되어도 재주와 기량을 키우지 못하는 자는 光軍에 충당하라"는 판문122)이 반포됨으로써 成業의 가망이 없는 학생들에 대하여는 군역의 특혜를 박탈하게 된다. 그리고 동왕 11년에는 五逆・五賤・不忠・不孝와 鄕・部曲 및 樂工・雜類子孫에 대한 과거 응시자격을 박탈하였는데123) 이는 바로 국자감 입학자격의 박탈과도 연계된다.124)

이것은 당시 사회의 성향을 대변한 것이기도 하다. 즉 당시 사회가 귀족화되는 과정에서 교육의 문호를 사회성향에 맞게 개편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귀족의 자제들이 국자감 교육을 원한 것은 아니었다. 국자감에서의 교육은 주로 경학이 그 대상이었는데, 당시 과거의 주류는 진사과로서 과목은 시·부·송과 시무책이었다. 따라서 귀족 자제들은 과거와 직접 관계가 없는 경학을 배우기 위하여 국자감에 소속되어 구속된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가숙이라든가 독학을 원했을 것이다. [25] 이러한 시대상에서 당시 대대로 儒宗이며 삼한의 書德이라고 추앙받던 최충이 사학의 문을 열자학생들이 운집한 것은 당연한 추세였을 것이다.

최충은 해주 출신으로 목종 8년에 지공거 崔沆의 문하에서 갑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그 후 현종·덕종·정종·문종에 이르기까지 주요 관직을 거쳐 문하시중이 되었고, 죽은 뒤에는 정종의 廟庭에 배향되는 영광까지 누렸

없었던 이들을 본 고장에서 학습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국자감에서의 수학을 폐쇄하고 있다. 朴贊洙도 이와 비슷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朴贊洙, 〈國子監의成立과 與替〉, 《民族文化》14, 1991).

^{120) 《}高麗史》 권 5, 世家 5, 덕종 즉위년 윤 10월.

^{121) 《}高麗史》 권 73, 志 27, 選擧 1, 科目 1 정종 2년 7월 判.

^{122) 《}高麗史》권 81, 志 35, 兵 1, 兵制 1 정종 8년 判.

^{123) 《}高麗史》 권 73, 志 27, 選擧 1, 科目 1 정종 11년 4월 判.

¹²⁴⁾ 이것은 인종대에 제정되는 學式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¹²⁵⁾ 이러한 사조는 조선시대의 교육을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다. 즉 講經이 과목으로 채택된 경우에는 成均館이 활성화되는데 반하여, 詞章이 과목으로 채택될 경우는 성균관은 거의 수학생이 없었다(申千湜, 〈朝鮮初期 成均館 운영과教育改革에 관한 연구〉, 《關東史學》2·申千湜, 〈世宗朝 成均館教育史潮와 學風改善論에 대한 연구〉, 《金龍德教授停年退任記念史學論叢》 참조).

다. 그는 유학적 덕목이 뛰어나 대대로 유종이라는 청송을 받았고, 수차에 결쳐 修撰官을 역임하여 실록을 편수하기도 하였으며, 법률과 書算法까지 교 감하는 등 다방면으로 학덕이 풍부하였다. 특히 국방에도 일가견이 있어 여러 차례 종군하기도 하였고 대외정책에 관여하기도 하였다. 또 관직에 있으면서 두 번에 걸쳐 지공거로서 인재를 선발하기도 하였다. 특히 정종 원년 3월의 과거에서 을과에 김무제 등 4명을, 병과에 4명, 동진사에 6명 등 모두 14명의 진사를 선발하였다. 그런데 이때 을과로 합격한 金無滯・李從現・洪德成은 모두 상서를 역임하였고, 李象廷・崔尚・崔有孚 등은 모두 참지정사를 역임하였으며, 金淑昌・金正・金良□・吳學麟 등은 학사를 역임하여 모두현달하였다. 이로써 세상에는 이 때의 科榜을 일러 尚書榜이라고 하기도 하였다.1260 특히 그는 덕종 초에《說苑》의 六正六邪文과 漢刺史六條令을 내외諸司에 써서 붙이도록 上奏하였는데, 이것은 호족의 억압과 관료제의 기능화를 강하게 의도했던 성종 때 金審言의 封事정신을 계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127)

그러나 최충의 큰 업적은 관직에 있을 때의 활동보다는 관직에서 물러난후의 활동일 것이다. 그가 언제부터 후학을 위한 교육활동을 하였는지는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지만, 128) 대체로 그가 관직에서 은퇴한 문종 9년(1055) 7월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관직에 있을 때에는 공무 때문에 바빴을 것이고, 또 관직에 임하는 그의 자세가《설원》의 六正六邪의정신에 철저했을 것으로 보아 사적인 교육활동을 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은퇴한후, 입조하기 전 해주의 가숙에서 수학했던 경험을 살려, 당시 학문적 풍토에 맞게 평소에 생각했던 교육의지로서 후학을 위한 교육에 전념했을 것이다. 海東孔子라고 불리던 학문적 명망과 지공거를 역임한 관력은당시 교육자로서의 그의 입지를 크게 강화하였을 것이며, 이 때문에 당시 사회에서 크게 환영을 받았을 것이다. 열전에는 "崔冲의 徒가 가장 성황"이라

¹²⁶⁾ 崔滋、《補閑集》 권 上.

¹²⁷⁾ 尹南漢. 〈高麗儒學의 性格〉(《한국사》6. 국사편찬위원회. 1976). 244쪽.

¹²⁸⁾ 紫霞洞遺墟碑에서는 崔冲이 科擧에 합격하기 전에 海州에도 家塾을 세웠고 조정에 들어온 뒤에는 자하동에 가숙을 세웠다 하여, 紫霞洞 文憲公徒의 설립을 관직에 있을 때로 보고 있다(《耳溪集》권 30).

하였고, 徐居正이《東國通鑑》에서 "이로부터 빼어난 文士가 많이 나오고 중국에서도 詩書의 나라로 일컬어져 지금에 이른 것은 다 冲의 덕택이다"129)라고 한 것이나, 고려 말 李齊賢이 "文物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성했다"130)라고 한 것은 이를 말해준다. 그는 이후 문종 22년 85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후진들의 교육에 전념하였을 것이다. 그가 학교를 개설하자 학도들이 운집하여 "學徒坌集 填溢街巷"할 지경에 이르렀고, 이에 학사를 송악산 기슭 紫霞洞에 마런하고 학당을 9재로 나누어 수용하였다. 이들 9재의 학생들은 최충의 관호를 따서 侍中崔公徒라 불렀으며, 죽은 뒤에는 시호를 따 문헌공도라일컬었다. 이후에도 그의 학통은 고려 학문의 중추를 이루면서 공양왕 3년 (1391)에 폐지될 때까지 계승되어 갔다.

최충의 9齋學堂이 크게 환영을 받게 되자 이후 사학이 계속 설립되었는데, 개경에만도 그 수가 11개에 이르렀다. 이로써 최충의 문헌공도와 합하여 세상에서는 이들을 12도라 불렀다. 최충의 문헌공도에 대하여는 이미 살펴보았으므로 제외하고, 나머지 학교의 설립자를 살펴보기로 하자. 《고려사》선거지에서 龜山徒의 경우 그 설립자를 알 수 없다고 하였다. 忠平公徒를 설립한 柳監이나 徐侍郎徒를 설립한 徐碩의 경우도 기록에 나타나지 않아 전혀 알길이 없다. 나머지는 貞憲(獻)公徒를 설립한 文正만이 열전에 기술되어 있어그의 행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뿐, 그 밖에는 세가와 선거지 및 열전에 간혹 나타나므로, 그 단편적 모습만을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①鄭倍傑: 현종 8년(1017) 3월에 知貢擧禮部侍郎 郭元의 문하에서 을과로 등제하였으며, 정종 원년(1035) 12월에는 左拾遺知制誥를 역입하였고, 문종 원년(1047)에는 中樞院副使로서 지공거가 되어 金鼎新 등 진사를 선발하였다. 그 후의 관직은 나타나지 않으나 문종 34년에 弘文廣學推誠贊化功臣의 호와 開府儀同三司守太尉門下侍中上柱國光儒侯로 추봉되면서 故禮部尚書中樞使 鄭倍傑이라 하고 있음을 볼 때, 최종 관직은 예부상서 중추사였음이 확인된다. 《고려사》 선거지 사학조에서 그의 관직을 侍中이라 한 것은 이 때에 추봉된 직함임을 알 수있다. 생몰 연대는 밝혀져 있지 않으나, 아들 文이 문종 당시 15, 6세로 국자감시에 응하였고 선종이 國原公으로 있을 때(문종 32년경), 등제하여 그 府의 錄事가

¹²⁹⁾ 徐巨正,《東國通鑑》권 17, 문종 22년 按說.

¹³⁰⁾ 李齊賢、《益齋亂藁》 권 9 上.

되었던 전후관계를 참작하면 문종 15년경에 별세한 듯하다는 견해가 있다.131) 그렇다면, 그가 弘文公徒를 창건한 것은 늦어도 문종 15년 이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희종 때에 홍문공도 생도들이 崔冲獻에 호소하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132) 홍문공도는 무인집권기에도 번창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②盧 旦: 문종 19년(1065)을 전후한 시기에 侍御史를 지냈고, 동왕 27년에는 中書舍人으로 遣宋使가 되어 송에 다녀왔다. 동왕 28년 7월에 尚書禮部侍郎右諫議大夫를 제수받았으며, 동왕 31년 12월에는 直門下省을 역임하였고, 동왕 32년 6월에는 兵部尚書로서 송의 國信使를 영접하였다. 동왕 34년 5월에는 禮部尚書로서 지공거가 되어 金尚禪 등을 선발하였고, 동왕 35년 12월에는 右僕射翰林學士承旨가 되었으며, 선종 2년(1085)에는 중추원사로서 지공거를 역임하고, 선종 3년 4월에는 尚書左僕射叅知政事로 승진하였다가 얼마 후 致仕하였다. 동왕 8년 7월에 죽으니 匡憲이라 시호하였다. 그가 학교를 설립한 연대는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으나, 상서좌복야참지정사를 제수받고 얼마 후 치사했다는 것을 보면 학교 설립은 선종 3년 4월 이후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③ 金尚實: 靖宗 7년(1041) 10월에 右拾遺의 관직에 있으면서 왕의 鎬京(西京;平壤) 행차에 호종하였으며, 문종 3년 2월에 右副承宣으로서 국자감시의 시관이 되어 韓復 등 39인을 선발하였다. 《고려사》선거지의 사학 설립 기사에그의 관직이 國子祭酒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최종 관직이 국자좨주였음을 알 수 있으나 어느 시기에 역임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 ④ 金無滯:《고려사》에서는 靖宗 원년 3월에 지공거 최충의 문하에서 등과하였다는 기록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나《補閑集》에 尚書房을 설명하면서 "靖宗 원년에 崔冲의 문하에서 배출된 인재들 중 金無滯는 李從現・洪德成 등과 더불어 尚書를 拜受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133)으로 보아 상서를역임한 것이 확인된다. 사학 설립 기사에 僕射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복야로서 치사하고 學塾을 개설한 것 같다. 복야로서 치사한 것이 어느 때인지는알 수 없으나, 상서와 복야의 직을 거친 것을 보아 정상적인 관로생활을 마친것 같고, 이로 볼 때 학숙을 설치한 시기는 문종 말년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 ⑤ 殷 鼎: 문종 25년에 秘書少監右副承宣이 되었다는 기록 외에는 찾아볼 수 없다. 단지 《고려사》 선거지의 사학 설립 기사에는 최종 관직이 侍郞이라고

^{131)《}高麗史》 권 95. 列傳 8. 鄭文.

朴性鳳〈崔冲의 人間象과 私學十二徒〉(《崔冲研究論叢》,慶喜大 傳統文化研究 所, 1984), 141等.

^{132) 《}高麗史》 권 21. 世家 21. 희종 원년 6월 갑오.

¹³³⁾ 崔滋,《補閑集》 권 上.

나타나 있으나, 언제 역임했는지는 알 수 없다.

⑥ 金義珍: 문종 원년 7월에 殿中侍御史를 제수받았으며, 동왕 14년에는 知尚書吏部事가 되었고, 동왕 15년에는 左散騎常侍同知中樞院事가 되었다. 동왕 19년에는 참지정사로서 지공거가 되었으며, 동왕 22년에는 判尚書兵部事가 되고, 이어 平章事로 치사하였다가 동왕 24년 8월에 죽었다. 그렇다면 良愼公徒를 창설한 시기는 문종 23년을 전후한 시기가 될 것이다.

⑦黃 瑩:숙종 즉위년(1096) 12월에 禮部尚書同知樞密院事를 배수하였고, 동왕 2년 3월에는 참지정사가 되었으며, 동년 4월에는 지공거가 되어 林元通 등을 선발하였고, 동왕 4년 2월에는 中書侍郎同中書門下平章事가 되었다.《고려 사》선거지의 사학 설립 기사에 따르면 그의 최종 관직이 평장사임을 볼 때, 얼마 후 치사한 것 같다. 그렇다면 貞敬公徒는 숙종 4년 이후에 설립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⑧文 正:長淵人으로 문종 초에 등제하고 문종 24년 4월에는 兵部侍郎左諫 議大夫로서 西北面兵馬副使가 되었다. 동왕 31년 11월에는 참지정사로서 西京 留守使를 겸하였고, 동왕 32년에는 지공거가 되어 禹元齡 등을 선발하였으며, 동왕 34년 12월에는 中書侍郎平章事로서 判行營兵馬事를 겸하였다. 문무 양면으로 공이 많았던 유신으로서 항상 군직을 겸대하여 국가 비상시에 공을 세웠다. 동왕 34년 東蕃을 격퇴한 공로로 推忠贊化蕩寇靜塞功臣의 호와 特進檢校司徒門下郎平章事判尚書禮刑部事兼太子大傅上柱國長淵縣開國伯을 받았다. 선종 10년에 守太尉門下侍中으로 치사되고 죽으니, 貞獻이란 시호가 내려졌으며, 이후선종 묘정에 배향되었다. 그의 행장으로 볼 때 정헌공도를 개설한 것은 선종년간일 것으로 추측된다.

이상에서 충평공도를 설립한 유감, 서시랑도를 설립한 서석, 설립자 미상의 구산도를 제외한 나머지 사학의 설립자에 대하여 그 대략을 살펴보았다. 이들의 대부분은 당대의 명유로서 과거를 통해 입신하였으며, 또 지공거로서인재를 선발하기도 하였다. 12도는 문종 때부터 숙종 때까지 이르는 시기에설립되었으며, 따라서 12도가 고려 교육사에 그 체제가 정착되는 것은 숙종때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2) 운영

문종 때부터 설립되기 시작한 사학 교육기관은 이후 12도로 정착되면서

고려 교육사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12도 교육의 성과에 대하여 고려 말의 이제현은 "위로는 公卿嫡庶로부터 아래로는 州縣擧者에 이르기까지 모두 9齋籍中에 이름을 걸고 성인의 道를 익혔다"134)라 평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당시 12도의 교육 운영은 어떠하였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고려사》 선거지 사학조에는 최충이 학교 설립의 기사에서 "선비와 평민의 자제가 그의 집과 마을에 가득하였다. 마침내 9재로 나누어 樂聖・大中・誠明・敬業・造道・率性・進德・大和・待聘이라 하였다. 이를 일컬어 侍中崔公徒라 하였으며 양반의 자제들로서 무릇 과거에 응시하려는 자는 반드시 먼저 徒中에속하여 공부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9재의 성격이다. 고려 말에 국자감이 성균관으로 개편되면서 9재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는데,이 성균관의 9재와 최충의 9재의 성격은 어떠한 관련이 있으며, 12도의 교육이 모두 문헌공도와 같이 9재로 편성되어 운영되었는가 하는 것도 문제가된다. 그렇다면 먼저 최충의 설립한 9재의 이름을 분석해 봄으로써 그 운영상의 특수성을 구명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樂聖」은 성인의 道를 즐겨 익힌다는 뜻이니 성인의 도란 갑자기 배울 수없는 것이기 때문에「樂」字를 더 붙여서 배우는 사람들로 하여금 발을 딛고나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든 것이다. 그래서 9재의 첫머리를 악성이라 하였던 것이다.

「大中」은《書經》周書 洪範편의 "大中의 道"와《易經》의 "大中而上下應之"에서 따온 것이다. 성인의 도를 즐기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대중에 표준을 세워야 한다고 해서 악성 성명 다음의 재명으로 하였던 것이다.

「誠明」은 周子의《通書》에 "誠이란 것은 성인의 근본으로, 성인이라는 것은 誠일 뿐이다"라 한 것에서 취한 말이다. 誠이라는 것은 자기의 몸을 성실히 하는 것이며, 明이라는 것은 善을 밝힌다는 뜻이다. 따라서 성명은 대중의 도를 전제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대중 다음에 성명으로 재명을 삼았다.

「敬業」은 악성·대중·성명에서 닦은 正心·修心을 바탕으로 학문에 전념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의 재명으로 하였다. 이것은《禮記》에서

¹³⁴⁾ 李齊賢,《益齋亂藁》 권 9 上.

"三年視敬業樂群"이라고 한 것에서 유래한다.

「造道」는《孟子》의 "深造之以道"에서 나온 말로, 朱子는 이를 주석하여 "造라는 것은 나간다는 것이며 道라는 것은 나아가는 방법이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조도는 모든 분야에서 관통되는 학문의 자세이기도 하다.

「率性」은《中庸》에서 "天命을 性이라고 하고 率性을 道라 하며 修道를 敎라 한다"고 한데서 나타나며, 천성을 좇아 느끼는 바를 긍정하여 어긋남이 없게 함을 말한다. 《大學》에서는 조도를 "明明德"에 근본을 두었고 《중용》에서는 조도를 학문의 思辨에 두었으므로 조도의 다음에 솔성을 둔 것이다.

「進德」은 《易經》에 "君子進德修業"이라고 하였으니, 品德을 쌓아 성인의 도로 진취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솔성 다음에 진덕을 둔 것이다.

「大和」는《역경》의 "各正性命하고 保合大和"에서 유래한 것인데,《중용》에서 "中和를 이루면 천지가 자리잡고 만물이 化育한다"고 한 宋儒의 이상을 반영한 것으로 性의 도에 화합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待聘」은《孔子家語》에 "席上之珍以待聘"이라 하였고 聘은 迎師의 禮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단계는 학문의 완숙 단계를 의미하며 師儒로나 관로로 진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9재 중에서 대빙을 마 지막 재명으로 한 것이다.135)

이와 같이 볼 때 9재의 이름은 단순한 학사의 배치가 아니고, 상호 연계성을 갖는 단계식 교육과정의 차례로 보인다. 즉 誠明齋는 초학자로서 학문에 입문하는 자를 위해 개방된 齋舍로 보이고, 마지막 待聘齋는 학문을 수료하는 단계로 보인다. 그렇다면 9재의 교육과장은 악성·대중·성명·경업·조도·솔성·진덕·대화·대빙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교육에 나갔다는 의미가 된다.136) 그러나 당시 교육상에 비추어 볼 때 과연 학생들이 9재의 순서

¹³⁵⁾ 이 부분은《崔冲研究論叢》중〈九齋衍義〉를 참고로 필자가 주석하였다.

¹³⁶⁾ 洪良浩,〈文獻書院九齋記〉(《崔冲研究論叢》, 1984), 386~9쪽에서는 "文憲 崔先 生께서 海州에 살며 생도들에게 학문을 강론할 때 9재를 설치하여 학자들로 하여금 거처하게 하였으니…학문을 이루는데 있어 순서대로 나아가서 학문을 연마하고 감히 순서를 뛰어넘지 못하게 하였으니 마치 주나라에서 선비를 양성하는 법도와 흡사하다"고 하고 있다. 이 견해는 齋名을 교육의 단계적 歷次 과정으로 과악한 것이다. 尹南漢,〈高麗儒學의 發達〉(《한국사》6, 국사편찬위원회, 1975), 248쪽에서도 "齋名은 유교적 作成의 功과 經書의 要諦를 빌어 진학의 階梯로 삼았던 바"라고 같은 의견을 내고 있다.

로 수학하였겠는가 하는 데는 많은 의문이 있다. 이것은 실제로 9재학당에 수학한 자들을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명종 때에 監察御使 李勝章은 그의 父業을 잇기 위하여 嶺南에서 文憲公徒率性齋에 유학하고 무자년(의종 22년, 1168) 봄에 大司成 金敦中의 문하에서 두 번째로 급제하였다¹³⁷⁾⁽〈李勝章墓誌〉、《朝鮮金石總覽》上, 418쪽).

李奎報는 명종 11년 14세 때에 文憲公徒 誠明齋에 入徒하여 번번이 夏課에서 거듭 壯元하였고…16세에 司馬試에 응시하였으나 합격하지 못하였다(《東國李相國集 年譜》).

위에서 李勝章과 李奎報는 처음부터 솔성재와 성명재에 입학하였다. 만약 9재의 교육이 단계적 승차과정이었다면 이들은 첫 단계인 악성재에 입학하 여 그 단계를 밟아야 헸을 것이다. 그리고 대빙재까지 승차한 후 과거에 응 시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승장은 솔성재에 들어가 다음 단계를 거치지 않고 솔성재생으로서 과거에 응시하였고. 이규보도 성명재에 들어가 성명재 생으로서 과거에 응시하였다. 만약에 악성재가 9재 교육의 첫 단계였다면 초 학 입문자를 교육하는 초등교육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보한집」에 "樂聖齋 學堂에 이르러 재생들과 더불어 우을 내어 시를 지었는데 유창하였다"는138) 기사를 보면 악성재생들은 초학 입문자들이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악 성재가 초학 입문자들의 학사였다고 한다면 왕이 특별히 승선에게 명하여 당대의 문사와 재상들과 함께 이곳에서 강습하고 사회를 열게 했을까 하는 점이다. 이와 같이 본다면 9재는 단계적인 수직관계가 아니고 횡적으로 연결 되는 동일 교육수준으로 단지 재명만 달리하여 교육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고려사》최충열전에서 "양반의 자제들로서 과거에 응시 하려는 자는 반드시 徒中에 속하여 공부하였다"고 한 기록을 보더라도 수학 생들의 수준은 초학 입문자가 아니라 상당한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 다면 나머지 사학도 최충의 문헌공도와 같이 9재로 나누어 교육하였겠는가

¹³⁷⁾ 大司成 金敦中이 國子監試官을 역임한 것은 의종 21년이다. 따라서 위의 무자 년은 의종 21년 정해의 誤記인 것이다.

^{138)《}補閑集》권 上 仁宗 21년(1143) 4월에 왕이 承宣 쇼을 시켜 두 수公으로 하여 금 日月寺 樂聖齋學堂에서 강습하게 하고 시를 짓게 한 것에 대한 평가이다.

하는 문제가 나온다.

각 徒의 유생이 일찍이 수업한 스승을 배반하고 다른 徒에 이속한 자는 東 堂監試에 赴擧할 수 없도록 하라(《高麗史》권 74, 志 28, 選擧 2, 私學).

위의 인종 11년(1133) 기사를 볼 때, 12도는 횡적으로 동등한 자격을 인정 받고 있었음이 드러난다. 또 이후 12도를 일러 9재 학당이라고 충칭하던 것 으로 보아 나머지 사학들도 9재로 나누어 교육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다.¹³⁹⁾ 이들은 주로 재사에서 수업에 전념하였지만, 여름철에는 더위를 피하여 산사 의 승방이나 산속 또는 개울가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¹⁴⁰⁾ 이를 《고려 사》 선거지 사학조에서는 「夏課」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고관은 설립자나 그 후예 및 그 徒의 출신자로서 명망이 높은 자가 되었겠지만 敎導를 많이 활용하였다. 《고려사》선거지 사학조에서도 "徒中에서 급제하여 학문이 우수하고 재능이 많은 데도 관직에 나아가지 않은 자를 택하여 敎導로 삼았다"고 하였다. 실제로 교도에 의해 교육이 행해졌음은 秦始皇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엄격한 崔元中의 사례가 있다.141)

교육 내용은 《고려사》선거지 사학조에서도 "그 학문은 9經과 3史였고 혹先進이 찾아 오면 촛불에 금을 그어 시를 짓게 하였다"고 하여, 그 대강이알려진다. 즉 9경은 《詩經》,《書經》,《易經》,《春秋左氏傳》,《春秋公羊傳》,《春秋穀梁傳》,《禮記》,《周禮》,《孝經》이었을 것이고, 3사는《史記》,《漢書》,《後漢書》였을 것이다. 특히 당시 교육이 과거와 연계되어 있고 또 9재학당 출신으로 과거에 합격한 자가 많았던 것으로 보아 과거의 주류를 이루

¹³⁹⁾ 金忠烈도 나머지 私學의 경우 科擧라는 큰 목표가 같았으므로 크게 다르지 않 았을 것으로 보았다(《高麗儒學史》, 高麗大出判部, 1984, 98쪽).

^{140)《}高麗史》권 74, 志 28, 選舉 2, 學校 私學條에서는 "山寺僧房이나 山間川邊에 노닐다가 어른과 아이가 차례를 지어 서로 시를 주고 받으며 저녁 때 돌아오는 광경을 보고는 경탄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고 하였다. 또《補閑集》권 中에서는 "12徒의 어른과 아이들은 여름철마다 山林에 모여서 공부하다가 가을이 되면 헤어졌는데 龍興寺・歸法寺 두 절에 많이 왔었다"고 한 것이 그 실례이다.

¹⁴¹⁾ 李齊賢,《機翁稗說》前集 2, "尚書 崔元中은 學士 雍의 아들인데 일찍이 登第 하여 9齋의 敎導가 되었다. 매질하는 법이 엄격하여 털끝 만큼도 용서함이 없었다. 생도들은 이를 원망하여 秦始皇이라고 불렀는데 그의 酷刑을 일러 말한 것이다."

었던 교과를 집중적으로 교육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詩·賦·頌·策의 製述은 필연적으로 수학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12도는 고려 말 공양왕 3년(1391)에 폐지될 때까지 맥락을 계승하여 갔다. 강화천도 때에도 고종은 12도에 관심을 가져 시랑 李宗胄로 하여금 왕명으로 9재의 생도를 모아 하과를 행하고 여기서 우수한 자 55인을 선발하였고,142) 충렬왕 11년(1285)에는 친히 歸山寺에 행차하여 9재 하과를 보고 격려하였다.143) 공민왕도 12도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졌으므로 동왕 원년(1352)에는 12도의 교사 중수를 위한 명령을 내렸고, 동왕 12년에는 12도의교육을 중흥하기 위한 명을 내리기도 하였다.144) 이색도 일찍이 韓淸城 등과함께 9재에 놀러가 安心精舍(安心寺)에서 촛불에 금을 긋고 시를 지으면서 "十二徒稱日九齋, 國中童冠集山崖, 賦詩刻燭才何疾, 勸學與文意甚住"란 칠언시를 짓기도 하였고,145) 또 왕에게 상소하여 12도를 중흥시킬 것을 건의하기도 하였다.146)

12도의 운영에서 한 가지 지나칠 수 없는 것은 재정에 관한 문제이다. 12 도는 그 규모상 막대한 운영기금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단지 학생들의 기부금만으로 운영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에 대한 것은 기록이 없어 정확하게 구명할 수는 없지만 《고려사》 세가편에 다음과 같은 참고할 만한 기사가 있다.

十二徒에 양곡의 비축이 없으므로 徒官을 여러 道에 보내어 베를 팔아 米를 사들이는 것으로서 規例로 삼으라 하였다. 宰樞는 이 때에 海漕가 통하지 않으므로 그 베를 취하여 尚乘局의 馬栗을 사려 했는데, 徒官 曹漢卿 등이 公牒을 꾸며 사사로이 米를 楊廣道에서 사다가 일이 발각되었다(《高麗史》권 39, 世家 39, 공민왕 7년 5월).

공민왕 7년(1358) 5월의 위 기사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국가는 12도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徒官은 국가

^{142)《}東國輿地勝覽》者 12. 江華都護府. 樓亭 燕尾亭.

^{143) 《}高麗史》 권 30. 世家 30. 충렬왕 11년.

^{144)《}高麗史》 권 74, 志 28, 選擧 2, 學校.

¹⁴⁵⁾ 李穡、《牧隱詩藁》 권24.

^{146) 《}高麗史》 권 115, 列傳 28, 李穑.

의 행정관리인지 아니면 사학 자체내의 실무관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12도의 재정을 담당하던 직분임은 분명한 것 같다. 12도에 대한 재정 지원이 단순히 이 때부터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전례를 계승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다음의 공민왕 12년 교서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근년에 干戈로 인하여 교양이 자못 해이해졌다. 지금부터 成均・十二徒・東西學堂과 諸州郡鄉校에 엄하게 가르침을 가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그 둔토전과 인구를 혹 豪强이 겸병한 바 있으면 관에서 이를 분변하여 贍學用으로 한다 (《高麗史》권 74, 志 28, 選擧 2, 學校).

위의 기사를 음미할 때, 12도는 성균관·동서학당·향교와 더불어 학전과 노비를 지급받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이것은 이전부터 제도화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보아 12도도 설립 당시부터 국가에서 國子監과 함께 학전 을 지급받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3) 성격

대대로 儒宗으로 존경을 받았던 최충이 문종 9년 치사하고 사학을 설립하여 교육에 전념하니, 당시 國子監의 교육에 불만을 갖고 있었던 학도들이 운집하여 크게 번창하였다. 이로써 과거에 응시하려는 사람들은 먼저 徒中에적을 두게 되어, 이후 이들 중에서 과거에 합격하는 자가 많이 나오게 된다. 따라서 국자감 교육이 더욱 침체상태를 벗어날 수 없게 된 것은 당연하다.

國子監 학생들이 근래에 와서 대부분 폐업하니 이는 學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다. 지금부터 학관들은 성실하게 면려를 더 하도록 하여 연말에 성적(善惠)을 평가하여 떠나고 머무름을 정하도록 하라. 또 儒生으로서 국자감에 있은 지 9년이 되고 律生으로서 6년이 되어도 허황되고 우매하여 성취함이 없는 자는 물리처 버리도록 하라(《高麗史》권 74, 志 28, 選舉 2, 學校 문중 17년 8월 制).

이상과 같은 문종 17년의 왕명에서 국자감 교육의 부진을 잘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국자감 생도들이 근래에 학업을 대부분 그만두는 이유는 어디에 있었는가. 이것은 앞의「설립」항목에서도 살펴보았지만 현종 이래 정책에서 의 교육부재와 당시 사회의 성격 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를 더욱 가속화시킨 것은 바로 사학의 설립이었다. 위 문종 17년의 制書는 바로 최충의 사학을 설립한 지 얼마되지 않아서 나타났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당시 학도들이 국자감을 기피하고, 또 그나마 국자감에서 수학하던 학생들이 국자감을 버리고 사학으로 진출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상은 역으로 사학의 번창을 더욱 촉진시켜, 숙종 초에는 12도의 완성을 보게 된다. 이들 12도는 단순한 사학이 아니라 과거에 직접 연결될 수 있었던 국가적으로 공인된 학제였다. 따라서 국가는 12도 출신에게 예종 이전까지는 바로 최종시험인 禮部試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학전을 지급하여 재정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이로 볼 때, 12도의 성격은 국가에서 학력을 인정한 제도권적 사학으로 평가해도 좋을 것이다. 따라서 사학12도가 완성을 보게 되는 숙종 때에는 이들이 국자감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체제의 정비와 활성화가 이루어졌다. 이로써 식자들 사이에는 국자감 무용론이 대두하게 된다.

國學에서 선비를 기르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드니 실로 민폐가 됩니다. 또 중국의 제도를 우리 나라에 시행하기는 어려우니 청컨대 이를 혁파하소서(《高麗史》권 74, 志 28, 選擧 2, 學校 숙종 7년 윤 6월).

이것은 12도 체제가 정비된 지 얼마되지 않은 숙종 7년(1102)에 당시 재상이었던 邵台輔 등이 올린 글이다. 이들 주장은 단순히 재상 소태보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닐 것이며 당시 조정의 일반적인 사조를 고위관료의 입장에서 대변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예종 때에 와서 국자감 중홍정책을실시함으로써 사학 12도의 성격도 변질된다. 예종은 당시 문벌 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침체 일로에 있었던 국자감의 중홍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學147)을 세워 賢士를 양성함은 三代 이래로 다스림을 이루는 근본인데, 有司의 의논이 아직 결정되지 못하였으니 마땅히 신속히 시행하라(《高麗史》권 74, 志 28, 選擧 2, 學校 예종 2년 制).

^{147)《}高麗史》에서는 단순히「學」이라고 하였으나,《高麗史節要》에서는 國學이라고 하였다(《高麗史節要》권 7).

위에서 보는 예종의 교서에서도 국자감 중홍을 위한 의지를 읽을 수 있지만 그는 재위 중에 국학 7재의 실시,養賢庫의 설치, 국자감 건물의 준공 등 국자감 부흥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수행하였다. 148)

사학과 연계하여 특히 주목되는 것은 예종 5년(1110)의 판문으로 나타나는 과거제도에 대한 개혁이다. 즉 지금까지 과거에 직접 응시할 수 있었던 12도와 기타 문벌 자제들도 국자감에 예속시켜 3년 동안의 수학을 의무화한 것으로서 사학 12도에게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이로써 사학 12도는 종래 大學的 위치에서 국자감에 예속되는 하위적 위치로 전략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후 사학 12도의 교육이 국자감의 예속 아래 놓이게 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인종 17년의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즉 동당감시 이후에 행하는 諸徒儒生의 都會도 국자감에서 관할하여 50일 동안 학습시킨다음 해산시키고 있다.149)

한편 국자감에서의 교육이 활성화되자 사학 12도의 위상은 크게 변화하여, 본래 수업하던 스승을 떠나 다른 도에 옮겨 공부하는 경향이 팽배하였다. 이 러한 경향을 타개하기 위하여 인종 11년(1133)에는 스승을 배반하고 다른 도 에 옮긴 자들이 동당감시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리기에 이르 렀던 것이다.150)

사학 12도의 위상에 대하여 주목할만한 자료는 공민왕 원년에 이색이 올 린 상소이다.

進士 李穡이 상소하여 청하기를 '지방의 鄕校와 중앙의 學堂에서는 그 재능을 심사하여 12徒에 올려 보내고, 12도에서는 다시 이들을 종합하여 成均館에올려 보내어, 기한을 정해서 그 덕성과 여기에 대한 등급을 매겨 禮部에 추천하게 하소서. 예부에서는 이들 중 합격한 자에게는 전례에 따라 관직을 제수하고 합격하지 못한 자에게도 出身의 길을 열어 주도록 하소서. 관직에 있는 자로서 과거에 응시하려는 자를 제외하고는 國學生이 아니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하소서'(《高麗史》권 74, 志 28, 選擧 2, 學校 공민왕 원년 4월)

¹⁴⁸⁾ 申千湜、〈高麗中期 教育理念과 國子監運營(1)〉(《高麗教育制度史研究》, 螢雪出版社, 1983).

^{149) 《}高麗史》 권 74, 志 28, 選擧 2, 學校 私學 인종 17년 7월 判.

^{150) 《}高麗史》 권 74. 志 28. 選擧 2. 學校 私學 인종 11년 6월 判.

이 내용은 당시 교육의 위계를 파악하는 데 많은 시사를 준다. 즉 향교와 동서학당생을 12도에 올려 보내고 12도에서는 다시 성균관에 올려 보낸다는 내용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 때부터 새로이 시행하자는 것이 아니고, 전례에 따라 행하라는 것이다. 즉 지금까지의 관례에 따르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과거에는 위와 같은 방법대로 행해 왔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위에서 제시한 이색의 상소는 전례를 계승하면서, 예종 5년의 판문인 "國子監에서 3년동안 공부한 후에 과거에 응시하라"는 원칙이 예외의 규정에 의하여 많이 변질된 데 대하여 이를 바로잡아 성균관의 위상을 정비하려 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색의 상소로 미루어 보면 고려 후기에는 12도 교육이 크게 위축되어 갔을 듯하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충렬왕 때에는 安珦의 노력으로 학교 교육이 크게 활성화되어 "七官十二徒의 諸生이 경서를 끼고 수업하는 자가 거의 수백 명을 헤아리게 되었다"151)고 할 정도로 교육 중흥상을 보이고 있었다.

國學은 유명무실하고 十二徒와 東西學堂은 퇴폐하여도 수리하지 않으니 마땅히 수리하여 생도를 양육하고 一經이라도 능통한 자 있으면 錄名하여 아뢰도록 하라(《高麗史》권 74. 志 28. 選舉 2. 學校 공민왕 원년 2월).

한편 이상에서 보이듯이 공민왕 원년에 반포된 교서를 통해 보면, 공민왕이 즉위할 즈음에는 국자감과 아울러 12도의 교육기능은 거의 마비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동왕 6년(1357) "中外의 學校를 수리하였다"는 기사가 보이지만, 사학인 12도의 교육시설도 중수를 보게 되었는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고려사》선거지에서 공민왕 12년의 교서에서 12도의 명칭이 나온 후, 공양왕 3년 폐지될 때까지 12도에 대한 내용은 거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申千湜〉

^{151) 《}高麗史》 권 74, 志 28, 選擧 2, 學校 충렬왕 30년 5월.

2. 지방의 교육기관

1) 향교

(1) 향교 설치의 배경

고려시대의 지방 교육을 담당한 관학기관은 鄕校였다. 고려의 향교가 언제부터 설치되었는 지는 기록이 없어 분명히 알 수 없으나 그 연원은 통일신라기의 지방 교육의 전통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신라기에는 유학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잡학 교육기관을 세우고 敎授官을 설치한 것을보면, 지방에도 관학 교육기관을 설치하였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州治所에 조교를 파견하고,1) 菁州(晋州)의 老居縣을 학생녹읍으로 삼았으며,2) 淸州 지방에 學院이라는 교육기관이 나말 여초의 호족에의 하여 지배・운영되어 왔다3)는 사실이 밝혀진 것 등으로 보아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통일신라기의 큰 읍에 설치되었던 학원과 같은 지방학교는 나말의 중앙집 권체제가 이완된 틈을 타서 호족들이 장악·운영하였으나 성종조에 이르러 중앙의 통제와 지배를 받게되었다.

성종은 유교적 정치이념에 바탕한 중앙집권적 귀족국가체제를 정비하면서 누구보다도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그는 유교적 소양을 갖춘 인간을 길러 지배체제에 이바지할 관인을 등용하고자 향호들의 자제 260명을 서울에 와서 학업을 익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중 207명을 동왕5년(986)에 고향으로 돌려보내고,4 그 이듬해에는 귀향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1) 《}東京通志》권 3, 경덕왕 6년 정월.

[《]東史綱目》제 4하. 경덕왕 6년 정월.

^{2) 《}三國史記》권 10, 新羅本紀 10, 소성왕 원년 3월.

³⁾ 金光洙、〈羅末麗初의 地方學校問題〉(《韓國史研究》7, 1972) 참조.

^{4) 《}高麗史》 권 74, 志 28, 選擧 2, 學校 성종 5년 7월.

12枚에 경학박사 등의 교수관을 파견하였다.5) 12목은 통일신라 이래 지방 행정상 중요시되었던 곳으로 이곳에 박사를 파견하였다는 것은 전국의 주요 거점에 있던 지방 교육이 명실공히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들어가 그 지배를 받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고려의 향교 설치는 이 때부터 보아도 좋을 듯싶 다.

(2) 향교의 설치와 변천

고려시대의 지방학교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태조 13년(931)에 설치한 西京 學校가 효시이다. 그러나 서경학교는 고려의 副都인 서경에 설치한 학교 로서 고려의 정치적 변천과정에서 서경의 위치가 변천함에 따라 그 명칭과 규모·성격 등이 몇 차례 바뀌었으며, 고려 말에 이르러서는 향교화하였다.6) 그러므로 서경학교는 비록 고려시대에 설치한 최초의 지방 관학이지만, 처음에는 향교와 그 성격이 달랐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고려시대의 향교 설치의 시기에 관해서는 인종 때로 보려는 견해가 있으나7) 성종 때로 봄이 옳은 듯싶다.

지방 교육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성종은 지방의 자제 260명을 뽑아 개경에 불러올려 학업을 닦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 효과가 미진하자 성종 5년 7월에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207명의 학생을 그들의 향읍으로 귀향하도록 허락하였으며 1년 뒤인 성종 6년 8월에는 귀향생을 지도하기 위하여 12목에 경학박사와 의학박사를 각 1인씩 파견하였다. 이같은 조처는 성종 2년에 지방관제가 정비됨과 아울러 나말려초기의 향호들에의해 운영되어 왔던 지방학교인 학원이 중앙의 지배와 통제하에 들어가 재정비되어 향교로 개편되었음을 의미하며,8 전국의 주요 거점인 12목에는

^{5) 《}高麗史》 권 74, 志 28, 選擧 2, 學校 성종 6년 8월.

⁶⁾ 宋春永,〈高麗時代의 西京學校〉(《大丘史學》28, 1985), 32쪽.

⁷⁾ 고려시대 향교의 설치 시기를 仁宗朝로 보려는 견해는 한국교육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의해 주로 주장되었다.

韓基彦.《韓國教育史》(博英社. 1963).

李萬珪,《朝鮮教育史》(乙酉文化社, 1947).

渡部學、《朝鮮教育史》(東京、講談社、1975)。

韓東一、《朝鮮時代 鄉校教育制度研究》(成均館大 博士學位論文, 1981).

향교가 발족되었음을 말하여 준다.

성종 6년에 경학박사 등이 교육하는 중앙 통제하의 학교가 있었다는 것은 성종 8년 4월의 교서를 통해 알 수 있다.9) 그 내용은 학교를 확장하여 나라를 다스리고, 과거를 통하여 俊士를 뽑으며, 박식한 儒士를 얻어 왕의 정치를 돕고자 한다고 밝히고, 교육에 성과를 거둔 羅州牧의 경학박사 全輔仁을 포상하라10)는 것이다. 또 수령이나 학관의 지방 교육에 대한 책임을 물어 포폄하도록 하였다.11) 그리고 성종 11년(991) 정월에 "서울에는 庠序를 열어 儒術을 높이고, 외방에는 학교를 설치하여 생도를 권과하라"12)고 하였다. 이러한 교서의 내용을 보아서도 지방에 학교가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향교라는 명칭이 보이지 않지만 이들 지방학교는 향교로 보아야 할 것이다.

현종·문종 때에 이르면 지방 행정제도가 확립되고 향리에 대한 통제를 제도적으로 강화함으로써¹³⁾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가 큰 읍을 중심으로 침투되어 갔다. 이처럼 성종 6년의 향교 발족은 지방 행정뿐만 아니라 지방 교육도 중앙의 지배하에 들어가 국가의 통제를 받으면서 점차 정비 보급되어 갔음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현종 9년(1018)에는 4都護府·8牧·56郡·28鎭·20縣이 설치되었던 전국의 주요 지역에는 상당수의 學官이 파견되었으며 문종 때에 이르러서는 더욱 학관의 파견이 확대되어 갔다.¹⁴⁾

이처럼 성종 이후 지방 관학인 향교가 전국적으로 보급되어 감에 따라 지

⁸⁾ 宋春永, 〈高麗時代 鄉校의 變遷史的 考察〉(《歷史教育》41, 1987), 49~50\.

^{9) 《}高麗史》 권 3, 世家 3, 성종 8년 4월 敎.

¹⁰⁾ 全輔仁에 대한 포상은 《高麗史》권 74, 志 28, 選擧 2, 學校 성종 8년 4월 敎 에서 찾아볼 수 있다.

^{11) 《}高麗史》 권 74, 志 28, 選擧 2, 學校 성종 8년 4월 敎.

^{12) 《}高麗史節要》권 2. 성종 11년 정월 敎.

¹³⁾ 현종 9년(1018)에는 州縣의 대소를 J의 과다에 두고, 그에 따라 향리의 숫자를 정하였으며(《高麗史》권 75, 志 29, 選擧 3, 銓注, 鄕職), 그 해에 향리의 公服도 규정하여(《高麗史》권 72, 志 26, 興服, 冠服 長吏公服) 향리를 통제하였다. 문종 5년(1051) 10월 判文에서는 향리의 승진 규정을 9단계로 나누었음을 볼 수 있는데(《高麗史》권 75, 志 29, 選擧 3, 銓注 鄕職), 이같은 조처로중앙의 지방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14) 《}高廳史》 권 77, 志 31, 百官 2, 外職條에 보면 南京・大都護府・諸牧・大都督府에 文師(9품)를 각 1인씩 두었고, 防禦鎭 및 州郡에는 文學 각 1인을 둔 것을 보면 전국의 주군현에 상당수의 학관이 파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방의 학생들에게는 교육 받을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었고 이로 인하여 鄕 頁의 숫적 증가와 이에 따른 향공의 질적 저하를 가져왔을 것이다. 이에 중 앙정부에서는 이같은 향공의 숫적 증가에 따른 질적 저하를 막고 지방세력 의 중앙 진출을 조금이나마 막아보고자 界首官試의 엄정한 관리를 통하여¹⁵⁾ 향공의 질적 향상을 꾀하려 하였다.

고려의 향교는 예종과 인종 때에 이르러 그 확립기를 맞는다. 예종은 학문을 좋아하는 왕으로서 국학을 부흥시키고자 노력하는 한편 수령으로서 문과 출신자는 학사 사무를 겸하도록 하였다.16) 곧「修明學校」가 守令事目의하나가 되게 함으로써 지방 교육이 수령의 치하에 들어가 행정적 지배를 받게 되었다.

인종은 학문을 좋아했던 왕이었다. 재위 24년간에 李資謙의 난과 妙淸의 난을 겪으면서도 학제와 과거제를 재정비하여 문풍을 크게 진작시킴으로써 고려 교육사에서 분수령을 이루었다. 인종은 이자겸의 난을 치루고 난 후 동 왕 5년(1131) 3월 서경에 행차하여「維新敎書」를 반포하였다. 그 속에서 지방 관학을 진작시키고자 "諸州에 學校를 세워 敎道를 넓히라"고 하였다.17) 이처 럼 지방 교육을 강조한 것은 이자겸의 난을 겪고난 뒤 정치적 면목을 일신 하여 민심의 안정과 집권체제를 확립하고 그 동안 침체하였던 향교 교육을 강화하고자 취해진 조치라 생각된다.

그런데 인종 5년 3월에 반포한 지방 교육에 관한 조서를 근거로 향교의설치 시기를 인종 5년으로 보고, 그 명칭은 鄕學이었다는 설명이 오늘날까지 정설화되다시피 되었다. 이같은 견해는 인종 5년 3월에 반포한 교서 외에 金守雌가 쓴 〈幸學記〉라던가,18) 인종 20년의 판문19) 중에 향교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는 데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성종 이후의 지방 관학의 보급 상황을 감안하면 향교의 설치 시기를 인종 초로 보려는 견해는 옳지 못한 것 같다. 따라서 인종 5년 3월의 "諸州立學 以廣敎道"란 주현에

^{15) 《}高麗史》 권 73, 志 27, 選擧 1, 科目 1, 현종 15년 12월 判.

^{16) 《}高麗史》 권 74. 志 28. 選舉 2. 學校 예종 즉위년 判.

^{17) 《}高麗史》 권 74, 志 28, 選擧 2, 學校 인종 5년 3월 詔.

^{18) 《}東文選》 권 64. 記, 金守雌幸學記.

^{19) 《}高麗史》 권 73, 志 27, 選擧 1, 科目 1, 인종 20년 2월 判.

향교를 세우고 가르치도록 하라는 것이 아니다. 곧 지방 교육을 진흥시키고 자 향교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는 향교를 널리 설치하고, 이미 향교가 설치된 지역이라도 그 시설이 미비된 지역의 향교는 시설을 정비하여 널리 교육의 장으로 넓히라고 지시한 것으로, 향교의 발전적 측면에서 해석하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²⁰⁾ 이렇게 보면 인종 때에는 여러 주군현에 상당수의 향교가 설치되거나 재정비되어 전국 규모로 발전하였으며, 그 교육 수준 또한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인종 20년 이전에 晋州·富平·江華 등지에 향교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고,²¹⁾ 김수자의 〈행학기〉에 "글 읽는 소리가 중앙에서 멀리 외방에까지 이르고 있으니 옛날에 없었던 일이다"라고 한 것이라던가, 《高麗圖經》儒學條에 "經館書社가 늘어섰고 백성의 자제들이 무리를 지어 스승을 따라 경전을 수업하였다"는 것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

고려시대 향교의 명칭 또한 향학으로 볼 것이 아니라 향교로 봄이 옳은 듯하다. 향교라는 명칭은 김수자가 쓴 〈행학기〉에 처음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성종 이후 지방 관학이 보급 정비되어 가면서 사용된 지방 관학의 공통된 명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고려의 주・부・군・현에 설치된 학교는 州學・府學・郡學・縣學 등으로 불렸겠지만 이들 전체를 부르는 명칭은 향읍의 학교라는 향교로 보아야 할 것이다. 향교라는 명칭은 고려 후기에 오면서 그 기록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을²²⁾ 보아서도 고려의 지방 관학기구의 명칭은 향교로 봄이 옳은 듯하다.

인종 때에 향교가 전국적으로 설치·발전되었지만, 무신정권 이후 약 1세기간에는 문무가 교체되고, 몽고의 침입으로 국토가 황폐되어 민생이 도탄에 빠짐에 따라 중앙과 지방의 교육이 부진하였던 것 같다. 그렇다고 무신집권기에는 교육과 과거제도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고종 7년 (1220)에 李世華가 白翎鎭將으로 가서 그 곳에 향교를 설치하고 학업에 힘쓰

²⁰⁾ 宋春永, 앞의 글(1987), 57쪽.

²¹⁾ 朴贊洙. 〈高麗時代의 鄉校〉(《韓國史研究》42, 1983), 45쪽.

²²⁾ 李成茂,〈朝鮮初期의 鄕校〉(《漢坡李相玉回甲紀念論文集》, 敎文社, 1970), 237 쪽에 보면 고려의 향교가 대체적으로 고려 후기 때 세워지는 것으로 파악하 였다.

도록 하여 과거에 응시하는 자가 많이 나오니 고을 사람들이 경모하였다.23) 그리고 李奎報가 猾島로 귀양가던 도중에 保安縣에 이르렀을 때 이곳의 교 생들이 술을 가져와 위로하니 답례로써 시를 지어주었다24)는 것을 보면 무 신정권기에도 향교가 존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무신정권의 교육과 과거는 무신집권체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文翰官을 확보하여 그들의 정권 을 유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25)

庚癸의 난 이후 쇠퇴하였던 지방 관학은 개경 환도 후인 몽고 간섭의 초 기까지에도 교육적 기능을 다하기 어려웠던 것 같다. 충렬왕 때에 비록 유 학교육을 부흥시키려는 興學策을 폈으나 그것은 국학을 부흥시키려는 데 중 점을 두었을 뿐. 지방 관학의 부흥을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무신정권 이후 내우외환으로 교육이 부진하였던 실상은 수십년 동안을 유사들은 전쟁 에 동원되었고, 독서자는 열 중 하나 둘도 안되며, 老儒는 죽어 六籍(六經)이 겨우 전할 정도였다.26)

그러나 충선왕과 충숙왕 때의 적극적인 흥학책으로 향교 교육은 점차 회 복되어 간 것으로 보인다. 충선왕은 즉위년에 오래된 폐단을 개혁하려고 사 정쇄신을 위한 7개조의 교서를 내려 인재를 등용하는데 世家의 자제에 한하 지 말고 茂才碩德하고 孝廉方正한 유사가 있으면 그 고을수령이 천거하도록 하였다. 또 藝文館으로 하여금 군현에 茂才者가 있으면 직첩을 주어 訓導에 임하도록 하여27) 지방 관학의 교수관 확보를 위한 조처를 취하였다.

충숙왕은 학교는 풍속을 교화하는 근원이므로 교육을 엄히 하여 인재를 뽑아 쓰도록 하였으며.28) 化民成俗은 반드시 학교로 말미암는다고 하여 교육의 중요 성을 강조하면서 유능한 유사를 관할 고을수령이 천거하여 쓰도록 하였다.29) 이

²³⁾ 李奎報、《東國理想國集》後集 권 12. 墓誌 李世華墓誌. 《東文選》 권 123, 墓誌.

²⁴⁾ 李奎報、《東國李相國集》全集 권 17. 古律詩 十二月移寓保安縣.

²⁵⁾ 李成茂, 〈武臣執權下의 文人知識層의 動向〉(《嶺南大 三十周年紀念國際學術會 議論文》, 1977), 275쪽.

許興植,《高麗科擧制度史研究》(一潮閣, 1981), 34쪽.

²⁶⁾ 李齊賢.《櫟翁稗說》前集 2.

^{27) 《}高麗史》권 75, 志 29, 選擧 3, 銓注 薦擧 충선왕 즉위년 11월.

^{28) 《}高麗史》 권 74. 志 28. 選舉 2. 學校 충숙왕 12년 敎.

^{29) 《}高麗史》 권 75, 志 29, 選擧 3, 銓注 薦擧 충숙왕 12년 10월 敎.

같은 조치는 지방 교육을 진작시키는 활력소가 되었을 것이다. 충선왕 5년 (1313)부터 충목왕 2년(1346)까지 33년간에 9개의 향교가 중수되거나 새로 설치되었다는 것은30) 고려 후기의 향교 교육이 회복되어 간 것을 말하여 준다. 그렇다고 충선왕 이후의 향교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성화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병화로 향교가 소실되어 옛터조차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었고,31) 廟學이 퇴폐되고 교생은 학업을 게을리할 뿐만 아니라 그 수도 몇 명 되지 않았다는32) 것은 중앙정부의 노력에 비하여 지방 관학의 성과는 생각만큼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던 것 같다.

고려 후기의 향교 교육은 공민왕 이후에야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난다. 공민왕은 유능한 인재를 골라 쓰고자 山林鄉曲에 經明行修하고 茂才高節한 유사가 있으면 천거하여 탁용하도록 하였으며,33) 학교는 風化의 근원이니 퇴폐한 학사를 수리하여 생도를 기르도록 하고 경학에 능통한 자를 보고하도록 하였다.34) 李穡은 향교와 학당에서 생도들의 재능을 심사하여 유능한 자는 12徒에 올리고, 12도에서도 다시 심사하여 成均館에 올려 일정한 과정을 수학한 후 과거에 응시하도록 하였다.35) 이같은 조처는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공민왕은 개경과 지방의 학사를 수리하도록 하였고,36) 동왕 12년(1363) 5월에는 "근년에 전쟁으로 교육이 퇴폐하니 성 균관·12도·동서학당 및 제군현의 향교는 교육을 엄히 하고, 土田·人口(노비)를 豪强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겸병한 것은 관에서 분별하여 學糧에 충당하도록 하라"는 교서를 내렸다.37) 공민왕은 과거제도에 있어서도 원의 鄕武・會試・殿試를 처음으로 채택하여 규정으로 삼도록 하였다.38) 또 공민왕 23년 3월에는 각 도의 향시 유생으로서 다른 도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가 있으면 회

³⁰⁾ 朴贊洙, 앞의 글, 55~56쪽.

^{31)《}江陵鄉校誌》, 花浮山鄉校律詩序.

³²⁾ 安軸,《謹齋集》 권 1, 記, 襄陽新學記. 李穀,《稼亭集》 권 2, 記, 金海府鄉校水軒記.

^{33) 《}高麗史》 권 75, 志 29, 選擧 3, 銓注 薦擧 공민왕 원년 2월 敎.

^{34) 《}高麗史》 권 74, 志 28, 選擧 2, 學校 공민왕 원년 2월 敎.

^{35) 《}高麗史》권 74. 志 28. 選舉 2. 공민왕 12년 5월 敎.

^{36) 《}高麗史》 권 74, 志 28, 選擧 2, 공민왕 6년 정월.

³⁷⁾ 註 35)와 같음.

^{38) 《}高麗史》 권 73, 志 27, 選擧 1, 科目 1, 공민왕 18년.

시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³⁹⁾ 이것은 예비고시를 교육과정의 승급시험으로 정비함으로써 지방 교육의 정상화를 가져와⁴⁰⁾ 향교의 부흥에 하나의 활력소가 되었을 것이다.

그 후 창왕은 州縣學에서 貢士가 정해진 수에 차지 않으면 수령에게 그책임을 물어 죄를 다스리도록 하교함으로써41) 수령의 지방 교육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공양왕 원년(1389) 12월에 대사헌 趙浚 등은 지방 교육을 진작시키고자 학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병화로 퇴폐한 학교를 부흥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곧 중앙에서 각도에 교수관을 1인씩 파견하여 군현을 돌면서 교육을 엄히 하도록 하고, 지방에 한가로이 살면서 유학을 학업하는 유사들을 뽑아서 그 지역의 교도로 삼아 교육에 힘쓰도록 하고, 인재를 많이 양성한 교도관은 차례를 뛰어넘어 관직을 높여 주도록 할 것을 상주하였다.42) 이같은 상소에 따라 공양왕 2년에는 개경의 5부와 서북면의주・부에 유학교수관을 설치하였고,43) 그 이듬해에는 각도의 목・부에도 교수관을 설치하였다.44) 그리고 개경에는 5부 학당을, 외방에는 향교를 설치하여 유학을 진흥시켰다.45) 이러한 조치로 여말에는 儒風이 크게 진작되었고 향교 교육은 새로운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고려 말의 지방 교육을 부흥시키려는 노력을 주도한 사람들은 신진사대부들이었다. 이들은 주자학을 새로운 정치적·사상적 이념으로 수용하고 연구하였다. 고려 후기에 성리학이 보급되면서 유학의 학풍은 唐宋絶句를 중심으로 한 詞章 중심에서 修己治人을 위한 경학풍으로 바뀌어 갔다.46) 이에 따

^{39) 《}高麗史》 권 73, 志 27, 選擧 1, 料目 1, 공민왕 23년 3월 敎.

⁴⁰⁾ 許興植, 앞의 책, 47쪽.

^{41) 《}高麗史》 권 73, 志 27, 選擧 1, 料目 1, 신창 敎.

^{42) 《}高麗史》 권 74. 志 28. 選擧 2. 學被 공민왕 원년 12월.

^{43) 《}高麗史》 권 74, 志 28, 選舉 2, 學校 공양왕 2년 2월.

^{44) 《}高麗史節要》권 35, 공양왕 3년 정월조에 "置各道牧府儒學教授官"이라 하였고, 《高麗史》권 77, 志 31, 百官 2, 外職 공양왕 3년조에 "置各道牧府儒學教授官 四年罷 尋復之"라 한 것을 보면 공양왕 4년에 일시 폐지되었다가 곧 설치하였던 것 같다. 《高麗史節要》권 35, 공양왕 4년 6월조에 "復置諸道州郡儒學教授官"이라 한 것을 보아서도 알 수 있으며, 공양왕 4년 6월에는 유학 교수관의 설치가 더욱 확대되었던 것 같다.

^{45) 《}高麗史》 권 117, 列傳 30, 鄭夢周.

⁴⁶⁾ 許興植, 앞의 책, 97쪽.

라 유학교육에서는 유교의 경전인 4서 5경이 교육과정으로 정착되었고 과 거에 있어서도 예부시의 출제 과목으로 중요시되었다.⁴⁷⁾

여말의 향교 교육을 부흥시키려는 신진사대부들의 흥학책은 교육을 통한 주자학의 보급과 확대였다. 그 후 조선을 개국하는데 앞장선 신진사대부들 에 의해 여말의 향교 교육은 조선시대의 향교로 정형화되었다.

(3) 향교의 운영실태

가. 시설과 재원

향교의 기능은 先聖先賢을 봉사하는 기능과 지방 자제들을 교육하는 교학적 기능이었다. 이같은 기능을 담당하여 수행하기 위해서는 성현을 봉사하는 祠字, 교육하는 장소로 명륜당, 재생이 기거하는 동·서재 등의 기본시설과 기타 부속건물이 있어야만 하였다. 그러나 고려시대의 향교는 조선시대과는 달리 이러한 기본시설이 완전한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廟・學이 같은 건물 안에 있었던 듯하다. 李穀이 지은 다음의 기문을 보면 이러한 사정을 잘묘사하고 있다.

본국 향교의 제도는 문묘와 학당이 같은 건물 안에 있어서 외람되다. 더구나 童子들이 들어와 大成殿 뜰에 모여서 떠들썩하니 외람됨이 더욱 심하다(李穀, 《稼亭集》권 5, 記, 寧海府新作小學記).

이와 같이 사우와 학당을 분리시켜 설치하지 않고 廊廡도 갖추어지지 않았던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⁴⁸⁾ 그러나〈寧海府新作小學記〉에는 대성전을 따로 설치하여 공자상을 모시고 左右廡를 지어 강학소로 삼았다는 것이라던가,〈堤州鄉校記〉에도 대성전과 학당이 따로 설치되었고 東西廡에서 강학하였다는⁴⁹⁾ 것 등을 보면 고려시대도 초기와는 달리 후기로 내려오면 문 묘와 학당이 분리되었으며, 강학은 동서무에서 실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은 변화는 봉사적 기능의 중요성이 점차 고조되어 갔음을 의미하며,⁵⁰⁾ 조

⁴⁷⁾ 宋春永、〈高麗時代의 鄉校教育政策〉(《歷史教育論集》11, 1987), 95~96쪽,

⁴⁸⁾ 朴贊洙, 앞의 글, 60~62쪽. 朴龍雲, 앞의 책, 381쪽.

⁴⁹⁾ 權近,《陽村集》 권 12, 記, 堤州鄉校記.

선시대 향교로의 정형화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생각된다.

고려시대의 문묘에는 옛 성현의 圖像을 봉안하였다. 성종 2년(983) 5월에 박사 任老成이 송으로부터 오면서 文宣王廟圖 등과〈72현찬기〉를 가져왔으며, 선종 8년(1091) 9월에는 송의 국자감 예에 따라 72현의 도상을 국학의 벽상에 걸었다.51) 이것은 고려 문묘제의 발족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성현의도상은 국학에만 설치한 것이 아니라, 서경이나 주현의 문묘에도 봉향하였던 것 같다. 충숙왕 12년(1325)에 평양부의 사우에 성현을 봉향하였으며52) 다른주현의 문묘에서도 釋奠儀를 올린 것은53) 이러한 사실을 잘 말하여 주고 있다. 성현의 상을 향교에 설치한 시기는 분명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서경을제외한 다른 주현의 향교는 界首官鄉校에 먼저 설치되고 인종 때는 상당수의 향교에까지 확대되어 간 것으로 보이며,54) 그 시기는 선종 8년 국자감의문묘제가 발족된 이후로 보인다.

성현의 상은 묘·학이 한 건물 안에 있었던 고려 전기에는 도상을 봉안하였으나, 묘·학이 분리된 고려 후기에는 塑像이나 위패를 만들어 봉안하였던 것 같다. 충숙왕 7년에 왕이 은병 30개를, 宰樞는 재물을 내어 문선왕의소상을 만들었으며,55) 그리고 《신증동국여지승람》 성주군 향교조에 소상은 개경의 대성전을 모방하여 만든 것이라 하였고, 성주향교의 문묘조에는 5聖10哲은 옛날에는 소상을 썼으나 목사 康仲珍이 신주의 위판으로 바꾸었다고한다.56) 영해부 향교의 대성전에도 공자의 소상을 봉안하였으며57) 〈제주향교기〉에도 향교에 先聖之神을 봉안하였다58)는 것 등을 보면 소상과 위패가 병용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佔畢齋集》의 〈謁夫子廟賦)에 "景泰 5년(조선 단종 2;1454) 金叔滋가 성주

⁵⁰⁾ 宋春永, 앞의 글(197b), 77쪽.

^{51) 《}高麗史》 권 62, 志 16, 禮 4, 文宣王廟 선종 8년 9월 경술.

^{52) 《}高麗史》 권 35, 世家 35, 충숙왕 12년 10월 을미.

^{53) 《}高麗史》 권 63, 志 17, 禮 5, 諸州縣文宣王廟.

⁵⁴⁾ 宋春永, 앞의 글(1987b), 76쪽.

^{55) 《}高麗史》 권 35. 世家 35. 충숙왕 7년 9월 무인.

^{56)《}新增東國輿地勝覽》 권48, 星州郡, 鄉校.

⁵⁷⁾ 李穀、《稼亭集》 권 12, 記, 寧海府新作小學記.

⁵⁸⁾ 權近,《陽村集》 권 12, 記, 堤州鄉校記.

교수로 가서 학생들을 거느리고 문묘에 입례하였는데, 大聖 이하 4성 10철이모두 소상으로 오래되었다"고 하였다.59)《신증동국여지승람》개성부 향교조에는 "大成殿에는 5성 10철의 소상을, 동서무에는 70현의 위판을 봉향하였다"고 하였다. 조선 초기의 기록을 보면 문선왕과 4성 10철은 소상을, 그 제자인 70현은 위패로 봉안하였던 것 같다. 이런 점으로 보아 고려의 향교는 조선시대의 향교와는 그 구조에 다른 점이 많았던 것 같으며, 이러한 변화는 여말 선초의 과도기에 나타난 현상이라 생각된다.

향교의 경비를 충당하려는 재정책은 學寶를 설치하거나 公廨田이나 鄕校田 같은 토지를 지급하기도 하였던 것 같다. 태조가 서경학교를 설치한 후 흥학의 소식을 듣고 곡식 100억을 내려 그 이식으로 경비를 충당하도록 하였으며60) 성종 11년(992)에는 학사를 널리 짓고 田庄을 지급하여 學粮에 충당하도록 하였고61) 명종 8년(1178) 4월에는 서경학교인 諸學院에 공해전 15결, 서적위전 50결, 문선왕 油香田 15결 등을 지급하여 경비에 충당하도록 하였고,62) 우왕 14년에도 향교전을 지급한 사례를63)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무신집권 후 오랫동안의 병화로 국토가 황폐해지고 권문세족의 토지겸병으로 전제가 문란해져 공해전이나 학전의 관리가 어려웠고, 소속이 불명확한 토지(공해전·향교전)는 호강들에게 강점당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에 공민왕 12년 (1365) 5월에는 퇴폐한 교육을 엄히 하도록 하면서 호강에게 강점당한 토전이나 인구(노비)를 관에서 분별하여 장학에 충당하도록 하였다.64)

향교 교육을 위한 재정이 부족하였을 때에는 국가적 지원책 외에도 수령이 사사로이 마련해 주는 약간의 재원으로 이식을 받아 경비에 충당하기도하였으나⁽⁵⁾ 그것은 열악한 것이었다. 이처럼 향교의 재정부족은 유능한 교수관 확보의 어려움과 함께 향교의 쇠퇴를 가져온 요인이 되었다.

⁵⁹⁾ 金宗直、《佔畢齋集》文集 권 1, 謁夫子廟賦·年譜.

^{60) 《}高麗史》 권 74, 志 28, 選擧 2, 學校 태조 13년.

^{61) 《}高麗史》 권 74, 志 28, 選擧 2, 學校 성종 11년 12월 敎.

^{62) 《}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田制 公廨田 명종 8년 4월.

^{63) 《}高麗史》 권 78, 志 32, 食貨 1, 田制 신우 14년 7월.

^{64) 《}高麗史》권 74, 志 28, 選擧 2, 學校 공민왕 12년 5월 敎.

⁶⁵⁾ 權近,《陽村集》 권 12, 記, 延安府鄉校記.

나. 교수와 생도

고려시대에 지방 관학을 위하여 學官을 설치한 것은 태조 13년(930) 왕이 서경에 행차하여 廷鶚을 書學博士로 삼아 6부의 생도를 모아 가르치도록 한 것이 효시이다. 그러나 전국의 주요 거점인 12목에 학관을 파견한 것은 성종 6년(987) 8월이다. 이것은 성종 5년 7월에 상경 수학생 260인 중 207인을 귀향시킨 후 1년 뒤에 취해진 조처였다. 이후 여말에 이르기까지 서경을 제외한 주군현에 파견한 학관 직명의 변천상을 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지방 관학의 학관직명 변천

시대	성종 6~8년	성종 14년	목종 6년	문종 30년	의종 22년
히-	경학박사 1	文師 1(9품)	박사	문사 1(9품)	문사
관	의학박사 1	醫師 1(9품)	師長	의사 1(9품)	
학관직명				文學 1	
				醫學 1	
파견지	12목	동경	3경 10도	서경, 대도호부	주헌군
				방어진, 지주군	
	고려사 74, 지	고려사 77, 지	고려사 74, 지	고려사 80, 지	고려사 74, 지
전거	28, 선거 2, 학교	31, 백관 2, 외직	28, 선거 2, 학교	34, 서경관록	28, 선거 2, 학교
				고려사 77, 지	
				31, 외직	

시대	충선왕즉위년	공양왕 원년	공양왕 2년	공양왕 3년	공양왕 4년	미 상
학	訓導	教授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관	教導					조교
학관직명						문사
	군현	5도	개경 5부	목・부・주	좌와 같음	제주현
파견지			서북면			문선왕묘
			부・목・주			
	위 의종 22년	좌와 같음	좌와 같음	고려사 77,	좌와 같음	고려사 63,
전거	과 같음			지 31, 백관		지 17, 예 5
				2, 외직		

성종 6년 지방에 파견한 경학박사는 목종 때에도 존치되었으나 그 이후에는 《고려사》의 기록에서 찾아볼 수 없다. 성종 14년 東京에 文師를 설치한 것을 보면 성종 때에는 경학박사와 문사 등의 학관을 설치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교수관인 박사의 명칭이 문사로 바뀌어져 가는 과도기에 사용되었던 것 같다. 그러나 목종 때에 師長이란 학관 직명이 보이는데, 이

것은 문사 내지 문학인 듯하나 유학적 소양과 식견을 갖춘 유사로서 교화를 담당한 사람을 지칭한 이름이기도 하다.

고려시대의 지방에 파견한 학관직은 무신정권 이전에는 대읍인 3경·대도 호부(대도독부 포함)·목 등지에는 문사를 파견하여 강학을 담당하도록 하였으나, 방어진·주·군과 같은 소읍에는 문학을 두어 교육을 담당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 지방행정구역의 대소에 따라 파견한 학관이 달랐던 것 같다.

그러나 원의 간섭 이후 여말에 이르러서는 지방 관학의 학관 직명이 바뀌어 대읍인 경·목·부 등에는 교수를, 소음인 군현에는 훈도를 두었던 것 같다. 이러한 사실은 《고려사》선거지 학교조에서 확인된다. 곧 충선왕 즉위면(1308)에 예문관으로 하여금 군현의 茂才(秀才)를 불러 직첩을 주고 훈도에임하도록 하였으며, 공양왕 원년(1390) 12월에는 대사헌 조준 등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금부터 부지런하고 학문에 박통한 자를 교수관으로삼아 5도에 각 1인씩 파견하고 지방에서 유학을 연구하는 사람을 그 고을의敎導로 임명하여 4서 5경을 읽게 하라"고 상소함에 따라 지방에 교수관을설치하였다. 이를 보면 교수와 훈도를 두었음을 알 수 있다.

지방 교육을 담당한 것은 교수관 외에도 掌書記나 司錄같은 외관이나 수령들도 학사 사무를 수행하면서 교육을 담당하였던 것 같다. 의종은 문신 수령에게 학사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였고, 시랑 朴椿齡은 完山의 수령으로 있을 때 聯句로서 학동들을 선발하고 「완산 3崔」인 崔陟卿・崔均・崔松年의취학을 권장하였다.66) 김해부사 李國香은 생도들의 교육을 맡아 보았고67) 공민왕 때에는 강화부윤 沈德符가 학사를 복구하여 지방자제를 모아 시·서·예의를 가르치도록 하였다는68) 것 등은 이같은 사실을 말하여 준다. 또 장서기인 李天年이 禮州 小學을 확장하고 하루에 한 번씩 나가서 교육을 제대로실시하는가 여부를 살피니 춥거나 덥거나 관계없이 항상 교육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69) 것도 이러한 실례라 하겠다.

^{66) 《}高麗史》 권 99. 列傳 12. 崔陟卿.

⁶⁷⁾ 李穀,《稼亭集》 권 2, 記, 金海府鄉校水軒記.

^{68)《}東文選》 권 117. 行狀, 特進輔國崇祿大夫青城伯沈公行狀.

⁶⁹⁾ 李穀、《稼亭集》 권 5, 記, 寧海府新作小學記.

무신정권 이후 병화로 향교시설이 소실되었거나, 강학당이 퇴폐하여 교육이 어려웠을 때는 精舍나 사찰·관아 등을 빌어 쓰기도 하였으며, 釋子를 따라 章句를 배우기도 하였다.70)

고려시대 향교의 학생은 生徒・學生・諸生・諸儒・儒生・校生 등으로 칭하였으나 같은 개념이다. 향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은 인종 때에 정해진 學式에 주현학생의 자격이 8품 이하의 子와 庶人으로 되어 있으나⁷¹⁾ 7품 이하의 아들 중에서도 원하는 자는 입학이 허락되었다. 이러한 규정이 어느 정도 적용되었으며, 시대의 변천에 따라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분명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성종 6년 지방의 12목에 교수관을 파견하면서 여러 주군현의 長東나 백성에게 가르칠 만한 아들이 있으면 아울러 訓誨하도록 한 것을 보면 향리나 백성의 자제가 입학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여기서 서인이나 백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신분을 지칭하는지 분명치 않지만, 모든 향중 자제를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 상당한 세력을 누리고 있었던 土姓鄕吏의 자제라 생각된다.72) 이러한 사실은 이세화가 백령진장으로 가서 그 곳에 향교를 세워 향리의 자제를 모아 가르쳤다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향교 교육의 목적이 교화교육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업교육도 중요한 기능의 하나였다. 문종 2년(1048) 10월의 판문에 의거하면 과거의 兩大業(제술・명경)에 서인이라도 樂工・雜類가 아니면 응시할 수 있게 허락하도록 하였으

⁷⁰⁾ 利川鄉校의 경우 창왕 원년(1389) 監務 李愚가 安興精舍에 학생을 모아 學長을 두어 가르쳤고 延安鄉校는 교수 鄭達蒙이 부임하여 학교 건물이 퇴락하였기에 절을 빌어 학생을 가르쳤으며, 1485년 金馹孫이 쓴〈重修淸道學記〉(《濯纓集》권 3, 記)에는 고려조에서 조선 초까지 學宮이 따로 없고 절같은 큰 건물을 빌어 향교의 구실을 하였다는 것 등은 당시의 사정을 잘 나타내 준다. 儒者들이 僧舍에서 독서를 한 예는 많은 자료를 찾아볼 수 있으나《牧隱文藁》권 15, 韓文敬公墓誌銘에「子年十六七喜從詩僧 游至妙蓮寺 儒釋維坐 啜茶聯句 文敬公年年才 十二三 每有的對 衆皆驚歎」이라 한 것이라던가、《櫟翁稗 說》前集 2에「故郎中 命咸子爲僧者(中略) 能讀史漢 驛召至京(下略)」이라 하였고, 李齊賢이 충선왕과의 대화 내용에「學者從釋子習章句 其源盖始于此」(《櫟翁稗說》前集 1)라 한 것 등은 당시의 상황을 잘 알려주는 사례이다.

⁷¹⁾ 學式의 「8品以上」을 8품 이하로 보아야 한다고 한 것은 閔丙河의 〈高麗學式 考〉(《成均館大論文集-人文科學》11, 1966), 174쪽에서 밝힌 바 있다.

⁷²⁾ 李樹健,《韓國中世社會史研究》(一潮閣, 1984), 251\.

며,73) 인종 때에는 잡류의 자손도 군인 자손의 예에 따라 諸業選路를 허통하도록 하였다.74) 그리고 명경업 이하의 여러 과업에 白丁과 庄丁도 시취하였던 것을75) 보면 향교의 입학자격도 점차 완화되어 갔던 것으로 믿어 진다.

향교에 입학하는 연령은 잘 알 수 없으나 鄭云敬은 10세에 榮州향교에 입학하였고⁷⁶⁾ 李嵒이 향교에 입학하여 17세 때 癸丑科에 합격하였으며,⁷⁷⁾ 河允 潾이 9세에 입학하였다.⁷⁸⁾ 이것을 보면 개인적 차이는 있었으나 10세 전후로 부터 많은 경우는 冠童에 이르기까지 입학의 연령 폭이 넓었던 것 같다.

향교의 학생 수는 행정구역의 대소나 인구수, 수령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향교의 재정 여하에 따라 다르겠으나〈堤州鄕校記〉에는 자제 약간 인을 모아 가르쳤다고 하였으며,79〉〈永興府鄕校記〉에는 金濂 등 60여 인을 모아 가르쳤다고 하였고,80) 또〈南原府新置濟用財記〉에서는 3개 반으로 나누어 가르쳤다고 하는81) 것을 감안하면, 적은 경우는 10여 명으로부터 많은 경우는 수십 명 또는 몇 개의 반으로 나눌 정도였던 것 같다.

고려시대의 향교는 교학적 기능과 봉사적 기능을 담당하면서 인재를 양성하는 데도 적지 않은 공헌을 하였다. 진주향교에서 수학한 姜民瞻은 목종때에, 姜君實은 충숙왕 5년(1318)경에, 河楫이 충숙왕 때에, 鄭乙輔는 충숙왕 7년경에 등재하였다. 또 河允源은 충혜왕 때에, 河乙沚는 충혜왕 복위 5년(1344)경에, 河崙은 공민왕 14년(1365)에, 鄭以吾는 동왕 23년경에 각각 등재하였다.82) 이것을 보면 진주향교와 시대적 배경이 같았던 다른 지역의 향교에서도 많은 인재를 양성하였을 것이며, 나아가 여말의 성리학 보급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73) 《}高麗史》 권 73, 志 27, 選擧 1, 科目 1, 문종 2년 10월 判.

^{74) 《}高麗史》 권 75, 志 29, 選擧 3, 限職 인종 3년 정월 判.

^{75) 《}高麗史》 권 73, 志 27, 選擧 1, 科目 1, 인종 14년 11월 判.

⁷⁶⁾ 鄭道傳、《三峰集》 권 4, 行狀, 鄭先生行狀.

⁷⁷⁾ 李穑,《牧隱文集》 권 17, 碑銘, 鐵城府院君李文貞公墓誌.

⁷⁸⁾ 卞季良,《春亭集》 권 12, 碑銘, 河公神道碑銘幷序.

⁷⁹⁾ 權近,《陽村集》 권 12. 記, 堤州鄉校記.

^{80)《}東文選》 권80, 記, 永興府鄉校記.

⁸¹⁾ 李穑,《牧隱集》 권 1, 南原府新置濟用財記.

^{82)《}新增東國輿地勝覽》 권30, 晋州, 鄉校四教堂記.

다. 교육과정과 수업년한

고려시대 향교의 교육과정이나 수업년한은 학식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알 수 없다. 그렇다고 학교절목이나 학령이 제정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고려사》이색전에 규모가 대단히 크고 그 절목이 치밀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83) 그리고 예종 12년(1117)에는 송나라의 制科에 갑과 제1 등으로 급제한 權適이 귀국하자 왕은 그에게 국학박사를 제수하고, 국학 禮儀規式을 만들게 하였다.84) 이러한 사실을 보면 인종 이전에도 학규나 학령이 만들어졌던 것으로 보이지만, 전해지지는 않는다. 고려시대의 학식은 인종 때에 式目都監에서 상정한 내용을 《고려사》선거지 학교조에서 찾아볼수 있으나, 이것은 국학에 관한 것일 뿐 향교에 관한 학규는 아니다.

향교의 교육과정은 향교의 교육이 교학적 기능뿐 아니라 과업교육도 중요 시하였던 점을 보면 과거과목과 관련이 있는 과목들이 중심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광종 9년(958)에 시·부·송·책으로 제술업 시험을 처음 치른 후 억말에 이르기까지, 제술업의 출제 과목은 試場과 시대에 따라 과목의 종류 가 달랐던 것 같다.85)

고려 전기에는 시·부·송·책과 경의 등이 출제 과목으로 중요시되었으나, 성리학이 전래되고 수용 보급되어 갔던 고려 후기에는 6經義와 4書疑가 중요시되었던 것 같다. 이같은 예부시의 출제 과목은 유학교육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즉 고려 전기에는 당송절구의 시·부 등 사장풍에서 고려 후기에는 4서 5경을 중심으로 하는 경학풍으로 바뀌었다. 특히 성리학의 기저인 修己治人을 위한 《小學》이 강조되면서,860 《소학》은 향교 교육의 중요한 과목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비록 후대의 자료이긴 하지만 조선시대의 명종 때에 만든 서울과 외방의 《學校節目》동몽훈조에 보면, 토족 및 범민의자제들은 8·9세부터 15·16세까지는 먼저 《소학》을 배우고 구독에 능하고 문리가 튼 연후에 《大學》・《論語》・《孟子》・《中庸》을 가르쳤으며(제4항), 성균관의 생원・진사와 客齋 유생의 수업년한은 《대학》 1개월、《중용》 3개월,

^{83) 《}高麗史》 권 115. 列傳 28. 李穑.

⁸⁴⁾ 崔滋,《補閑集》 권上,權學士適.

⁸⁵⁾ 許興植, 앞의 책, 95~97쪽.

^{86) 《}高麗史》 권 73, 志 27, 選擧 1, 科目 1, 충숙왕 17년 12월.

《논어》·《맹자》각각 4개월,《詩經》·《書經》·《春秋》각 6개월,《周易》· 《禮記》각 7개월로 한정하였다(제2항). 이 기사는 고려의 향교에 관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四學이 향교와 동격에 있는 향교였으며 여말의 향교가 조선 시대 향교의 전신이라는 점에서 볼 때, 여말의 향교 교육은 입학후《소학》· 《대학》·《중용》·《논어》·《효경》을 학습한 다음《시경》·《서경》·《예 기》·《주역》·《춘추》등을 학습한 것으로 집작된다.

이러한 과목을 이수하는 데 소요되는 수업년한은 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43개월에 달하므로 3년 7개월이 걸리는 셈이다. 이러한 수업년한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다르겠으나, 고려시대의 향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소요되는 연한으로도 산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향교의 교육과정은 유학과정이 중심을 이루었을 것이다. 그리고 국자감에도 율·서·산학과정이 설치되었고 국자감 재생들이 산학과 시무책을 익히고, 여가에는 習書하였으며,87) 외방에 法曹·算士 등을 파견한 것을 보면 향교에서도 유학교육과정에서 이렇게 기술교육을 교양으로서 수학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더욱이 고려의 잡업에 대한 출제 과목이라던가, 문종 10년 (1056) 8월에 서경유수의 요청에 따라 9經·《漢書》·《晋書》·《唐書》·《論語》·《孝經》·諸家文集·醫卜·地理·律算學書 등을 각인하여 제학원에 보내준 것을88) 보면, 향교에서도 율·서·산학과 같은 잡학교육이 실시되었던 것으로 믿어진다.

향교에서는 유학교육 외에 武學교육도 실시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성종이후 북방민족의 침입을 받았던 고려로서는 이들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하여 무학교육의 중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문종 30년에 제정된 文武班祿에 무학박사에게 20석의 녹봉을 지급하였다는89) 것을 보면 여초에도 무학에 대한 관심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예종 4년(1109)에는 '문무양학은 국가의 근원'이라고 하면서 문무양학을 설립하여 생도들을 길러 장래의 將宰를 뽑아쓰는 데에 대비토록 하고, 국학에 講藝齋를 두고 韓自純 등 8인을 시취하여

^{87) 《}高麗史》 권 74, 志 28, 選擧 2, 學校 인종 式目都監 詳定學式.

^{88) 《}高麗史節要》권 4, 문종 10년 8월.

^{89)《}高麗史》 권80, 志34, 食貨3, 祿俸 文武班祿 문종30년.

분처하였으며, 동왕 14년에는 무학생 17인을 선발하여 교육하였다.90) 그러나 강예재는 인종 11년(1133)에 폐지되었다. 무학교육의 중요성은 홍건적과 왜구의 침노가 극심하였던 여말에도 고조되었다. 그것은 공민왕 20년(1371)의 다음과 같은 교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문무 채용은 어느 한쪽만을 폐할 수 없으니 성균관으로부터 향교에 이르기까지 문무 양학을 개설하고 인재를 양성하여 뽑아 쓰는 데 대비하도록 하라(《高麗史》권 74, 志 28, 選擧 2, 學校 공민왕 20년 12월).

공양왕 2년(1390) 4월에는 무과를 설치하기에 이르렀다.91) 이처럼 공민왕이후 경외의 학교에 무학을 설치하고 인재를 양성하여 외침에 대비하도록한 것을 보면 향교에 있어서도 무학교육을 하도록 하였던 것 같다. 그러나그 실현을 보지 못한 것 같고, 무학은 공양왕 원년에 10학의 설치로 軍候所에서 교육을 맡게 되었다.

2) 서경학교

(1) 설치 배경

고려시대의 지방에 설치한 최초의 관학교육기관은 태조 왕건이 세운 西京 學校였다. 태조가 서경에 학교를 설치한 이유는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 없 지마는 서경의 경략과정에서 이루어진 崇儒與學策과 관련이 있으며, 그 연 원은 통일신라기의 지방학교인 學院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경은 일찍부터 대륙문화를 받아들이는 요충지였으며, 241년간이나 고구려의 도읍지로서 정치·문화·역사의 중심지였다. 그러나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는 서북변경에 놓여져 있어 중앙의 통제력이 미치기가 어려웠다. 특히 나말의 중앙집권체제가 이완되고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었을때에는 서경에 대한 중앙의 지배력이 미치지 못하여 蕃人의 침노가 심하여

^{90) 《}高麗史》 권 74. 志 28. 選擧 2. 學校 예종 4년 7월 · 14년 7월.

^{91) 《}高麗史》 권 74, 志 28, 選擧 2, 武科 공양왕 2년 윤 4월.

그 해가 적지 않았다.92)

태조는 이러한 서경을 국방상 咽喉之地로 삼고,⁹³⁾ 왕권의 유지세력을 부식시켜 창업의 안정과 化民成俗을 도모하고자 하였다.⁹⁴⁾ 그는 창업 초부터 서경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새로운 관부와 관원을 설치하고,⁹⁵⁾ 重臣과 양가 자제들을 옮겨 살게하면서⁹⁶⁾ 북변을 자주 순행하였다.

태조는 서경을 경략하면서 이곳의 사람들을 유교적 정신으로 교화시키고 자 적극적인 숭유홍학책을 폈다. 태조가 홍학책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한 사람들은 나말의 6두품 출신인 崔彦撝・崔凝・崔知夢・朴光胤 등이 대표적 인물이었다. 이들은 태조 밑에서 요직을 맡아 보필하면서 그의 유교적 정치이념과 교육정책의 실현에 크게 기여하였다. 서경학교의 설치는 이러한 태조의 서경 경략과정에서 실시한 숭유홍학책의 하나로 보여진다.

태조가 평양을 서경이라 일컬은 것은 태조의 서경 경략에 일대 정책전환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97) 태조 5년(923) 11월에는 大丞 質榮과 行波 등의 부형자제, 여러 군현의 양가 자제를 옮겨서 서경을 충실히 하고, 새로이 관부와 관원을 두고 在城을 쌓아 친히 牙善城의 백성이 살 곳을 정하였다.98)

이처럼 중신과 양가의 자제를 사민하고, 새로이 관부와 관원을 설치하였다 는 것은 서경 행정기구의 일대 전환으로 이것은 서경 경영의 목적이 군사적

⁹²⁾ 宋春永、〈高麗時代의 西京學校〉(《大丘史學》28, 1985), 7쪽.

^{93) 《}高麗史節要》 권 2, 성종 9년 9월.

⁹⁴⁾ 宋春永, 앞의 글(1985), 11쪽.

⁹⁵⁾ 태조 5년에 설치한 서경의 官府員吏는 廊官・衙官・兵部令・納貨府・珍閣省・ 內泉府令 등 6개의 관서에 45인을 두었다. 그 후 동왕 6년에는 內泉府를 珍閣 省에 병합하고, 9년에는 國泉府令 具壇 1인, 卿 2인, 大舍 2인, 史 4인, 동 17 년에는 官宅司를 증치하고 卿 2인, 大舍 2인, 史 2인, 都航司 卿 1인, 大舍 1 인, 史 1인, 大馭府 卿 1인, 大舍 1인, 史 1인을 두어 태조 5년에 설치된 관부 원리에 비하여 4개 관서와 그에 소속된 원리는 21인이 더 증치되었다(《高麗 史》권 77, 志 31, 百官 2, 外職 西京留守官 其屬官沿革).

⁹⁶⁾ 태조 원년 9월에는 평양을 大都護府로 삼아 堂弟인 王式廉과 廣評侍郎 列評을 보내고 參佐 4,5인을 두었으며 黃·鳳·海·白·鹽州 등 諸州의 戶民을 분송하여 살게 하였고,태조 5년 11월에는 大丞 質榮·行波 등의 부형자제와 諸郡縣의 양가 자제들을 옮겨 살게 하였다(《高麗史節要》권 1,태조 원년 9월·태조 5년 11월).

⁹⁷⁾ 河炫綱, 《高麗地方制度의 研究》(韓國研究院, 1977), 146쪽.

^{98) 《}高麗史》 권 1, 世家 1, 태조 5년 11월 신사.

인 면에서 정치상의 목적으로 바뀌어졌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태조 5년에 6개의 관부에 45인의 員吏를 두었는데(99) 이것은 태조 원년에 설치한 대도호부와 거기에 두었던 인원이 바탕이 되었으며, 후일 分司制度의 틀이되었다.

태조 5년에 설치된 서경의 행정기구는 그 후 세 차례의 개혁을 거쳐1000 성종 14년(995)까지 계속되었다. 태조 왕건은 동왕 5년 이후에도 8회나 서경에 행차하였으며101) 그 중에서도 동왕 13년(930)에는 두 차례나 행차하였다. 서경학교의 설치는 태조 13년 12월의 제2차 행차 때에 이루어진 것이다.

태조는 서경을 도읍지로까지 생각하기도 하였으며,102) 訓要 10條의 제5조에서도 "西京은 水德이 순조로워 지맥의 근본이며, 대업을 만대에 전할 땅이니 춘하추동 네 계절의 仲月(2·5·8·11월)에는 순수하여 백일이 지나도록 머물러 안녕을 도모하도록 하라"103)고 한 것을 보면 圖讖說을 바탕으로 서경을 도읍지로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이는 민심의 안정과 복리를 얻고자 하는 임시적인 방편으로 받아들인 것이지 국리민복의 근본으로 삼으려 하였던 것은 아닌 것 같다. 崔凝이 태조에게 불교와 음양설에 현혹되지말 것을 간하자, 태조는 "다만 佛神의 음조와 산수의 영응을 생각함은 혹시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을까 하기 때문으로 … 난이 평정되고 안정되기를 기다려서 바로 풍속을 고쳐 교화함이 가할 것이다"라고104) 하였다. 이것에서 불교

⁹⁹⁾ 태조 5년에 설치한 서경의 관부는 廊官·衙官·兵部 納貨府·珍閣省·內泉府 등 6개 관서였다(《高麗史》권 77. 志 31. 百官 2. 外職 西京留守官 其屬官沿革).

¹⁰⁰⁾ 태조 6년에 珍閣省을 內泉府에 병합하였고 동왕 9년에는 內泉府令를 증치하고 9인의 員吏를 두었으며, 동왕 17년에는 官宅司(6인), 都航司(3인), 大馭府(3인)를 증치하여 태조 5년에 설치된 관부와 관리에 비하여 4개의 관서와 21인의 員吏가 증치되었다.

¹⁰¹⁾ 태조 원년부터 26년에 이르기까지 약 20년 동안 태조가 서경에 행차한 것을 《高麗史》太祖世家에서 살펴보면 8년 3월, 9년 10월 계미, 12년 4월 을사, 13년 5월 임진, 13년 12월(서경학교설치), 14년 11월 신해, 17년 정월 갑진, 18년 9월 갑오 등 8회나 된다.

^{102) 《}高麗史》 권 2, 世家 2, 태조 15년 5월 갑신.

^{103) 《}高麗史》 권 2, 世家 2, 태조 26년 4월.

¹⁰⁴⁾ 崔滋、《補閑集》 권 上.

나 도참설을 취한 목적이 민심의 안정과 국리민복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받아들인 것임을 알 수 있다.

태조가 서경을 중시한 이유를 도참설에서 찾아보려는 견해가 있으나,105) 정치적 목적과 민심의 안정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도참설을 이용하였다는 주장이106) 주목을 끈다. 창업 초기에 안으로는 호족연합적 상태 하에서 왕권이 안정되지 못하고, 밖으로는 신라와 후백제가 병립하여 있었으며, 북으로는 야인의 침노가 심하였던 당시에 태조가 고구려의 고토를 회복하고 북방민족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토착적 세력이 부식하지 못했던 황폐한 서경을 착목의 대상으로 삼아107) 서경을 경영함으로써, 백성을 교화하고 좋은 풍속을 이루게 해서 호족세력을 견제하며 북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하였다. 태조 왕건은 이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서경 출신이 아닌 중신과108) 명문양가의 자제를 옮겨 살게 하고, 새로운 관부와 관원을 설치하였으며, 서경인을 유교정신으로 교화시켜 이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였을 것이다. 서경학교의 설치는 이러한 태조의 서경 경략과정의 하나로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된다.109)

(2) 서경학교의 설치

태조 왕건은 3경의 하나인 서경을 적극적으로 경영하면서 이곳에 학교를 설치하였다. 이것은 태조가 재통일하기 6년 전의 일로서 서경학교의 설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다.

태조 13년 12월 서경에 행차하여 학교를 창설하였다. 이에 앞서 서경에는 학

¹⁰⁵⁾ 李丙燾、《高麗時代의 研究》(乙酉文化社, 1948; 亞細亞文化社, 1980), 7等.

¹⁰⁶⁾ 河炫綱, 앞의 책, 151~153쪽.

¹⁰⁷⁾ 河炫綱, 위의 책, 47~48쪽.

¹⁰⁸⁾ 태조 원년에 서경으로 보낸 王式廉은 왕의 堂弟이고 列評은 廣評侍郎이며, 태조 5년에 서경에 보낸 大丞 行波는 태조가 서경에 행차하였을 때 자신의 두딸(大西院夫人과 小西院夫人)을 왕건에게 바쳐 하룻밤을 모시도록 하였다. 이같은 사실로 보아 行波가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임에 틀림없으며, 이후 그는 서경으로 옮겼다. 이런 점으로 보아 태조가 서경에 부식시킨 세력은 왕권을 떠받쳐 줄 非西京 출신이었던 것 같다(《高麗史》권 88, 列傳 1, 后妃 1).

¹⁰⁹⁾ 宋春永, 앞의 글(1985), 11쪽.

교가 없었는데 수재인 延鶚을 서학박사로 삼아 머물도록 하였다. 정악은 學院을 따로 창설하고 6部의 생도를 모아 가르쳤다. 후에 태조는 興學의 소식을 듣고 비단[綵帛]을 하사하여 이를 권장하고 醫・卜 2業을 겸해 두었다. 또 곡식 100석을 내려 학보로 하였다. 實는 방언으로 전곡을 시납하여 그 이식을 받아오래도록 교육 경비로 쓰게 하였다(《高麗史節要》권 1, 태조 13년 12월).

위의 내용에서 보면 몇 가지 의문점을 느끼게 된다. 첫째, 학교와 학원의 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둘째, 6부의 생도란 무엇인가. 셋째, 수재 란 무엇인가 등이 그것이다.

첫째에 대한 견해로는 학원을 학교의 상위기구로 보고 정악을 학교에 소속된 교판으로 보려는 견해와,110) 서경학교는 학원보다 상위의 학교로서 서경의 교육을 통제 관리하는 기구로 보려는 견해,111) 서경학교를 먼저 세운후 학원을 따로 두었다고 보는 견해,112) 학원이 설립되었다가 차차 기초가잡히면서 서경학교는 서학박사제와 학원을 설치한 것이라는 학원 발전설과서경학교를 이원적 구성으로 보려는 견해113)가 있다. 이에 대하여 학교와 학원 설치기사를 태조의 서경행차 때의 기록으로 보고, 학교를 주제로 보아 학원은 학교를 보완 설명하는 자료에 불과하다고 보는 견해와,114) 서경학교는 국자감의 모방으로 보려는 견해,115) 서경학교는 중앙의 유학대학제도를 모방하여 설치한 分司의 형태로 보려는 견해116)가 있다.

그러나 태조가 창업한 지 13년밖에 되지 않아 중앙의 관제가 신라와 태봉의 제도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였고, 비록 창업 초부터 서경을 경략하였다하더라도 아직 교육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못하였던 당시에 서경 한 곳에 명칭과 성격이 다른 두 개의 교육기구를 동시에 설치하기란 어려웠을 것이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서경학교란 구체적인 어떤 고유한 학교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경에 설치한 학교」라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명칭으로

¹¹⁰⁾ 韓基彦, 앞의 책, 54~55쪽.

¹¹¹⁾ 朴天植、〈高麗前期의 國子監沿革考〉(《全北史學》6, 1982), 72쪽.

¹¹²⁾ 李丙燾,《韓國史-中世篇-》(乙酉文化社, 1962), 135쪽. 金庠基,《高麗時代史》(서울大出版部, 1984), 243~244쪽.

¹¹³⁾ 朴性鳳. (國子監과 禮學)(《한국사》6. 국사편찬위원회. 1981). 225쪽.

¹¹⁴⁾ 申千湜, 《高麗教育制度史研究》(螢雪出版社, 1983), 16쪽.

¹¹⁵⁾ 閔丙河、〈高麗時代의 教育制度〉(《歷史教育》2, 1957), 44~45\.

¹¹⁶⁾ 辛虎雄、〈高麗前期의 教育政策과 官學〉(《關東史學》1, 1982), 81쪽.

보이며 「서경에 설치한 학교」란 곧 학원이라 생각된다.117) 이와 같은 사실은 태조 13년 이후의 《고려사》의 기록에서 서경학교라는 명칭을 찾아볼 수 없으나 학원이라는 명칭은 자주 산견되는 점으로 보아서도 알 수 있다.118)

그런데 서경학교인 학원의 명칭은 고려시대에 처음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 것 같다. 신라 말의 청주지방에서는 학원이라는 교육기구가 호족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면 창업 초에 서경에 설치한 학원이란 신라 말의 지방 교육기구였던 학원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믿어진다.119)

다음은 6부의 생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6부의 생도에 대한 견해로는 6부가 서경 관내를 총칭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120) 서경의 행정구획인 部坊里制로 보려는 견해,121) 尚書 6部(東・戶・禮・兵・刑・工部)로 보려는 견해122) 등이 있다. 그러나 개경의 행정구획을 5부방리제로 하였던123) 창업 초에 서경의 행정구획을 6부방리제로 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태조 17년 이전에 설치된 서경의 9개 관서 중 상서 6부와 같은 직능을 가진 관서는 兵部令뿐이며124) 개경에도 상서 6부에 입사할 생도를 모아 가르친 사실이 없었던 점을 생각하면 상서 6부로 보려는 견해는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런데 고구려가 멸망한 후에도 평양에는 고구려계의 잔여 귀족이나 양가의 후예들이 전시대적 행정구획인 5부(동·서·남·북·중)지역이나 그 변읍에 다수의 대소 집단세력이 상당한 기반을 가지고 살고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지역에 태조는 개국 초부터 관부와 관원을 설치하고 명문 양가의 자제와

¹¹⁷⁾ 宋春永, 앞의 글(1985), 15쪽.

¹¹⁸⁾ 學院이라는 명칭은《高麗史》권 74, 志 28, 選擧 2, 學校條에, 諸學院이라는 명 칭은《高麗史》권 77, 志 31, 百官 2, 西京留守官條와《高麗史》권 80, 志 34, 食貨 3. 祿俸條에서 찾아볼 수 있다.

¹¹⁹⁾ 宋春永, 앞의 글(1985), 15~16쪽.

¹²⁰⁾ 河炫綱, 앞의 책, 24쪽.

辛虎雄. 앞의 글. 80~81쪽.

¹²¹⁾ 金庠基, 앞의 책, 243~244쪽.

¹²²⁾ 李萬珪, 앞의 책, 198쪽,

韓基彦, 앞의 책, 54~55쪽.

小田省吾,〈朝鮮教育制度史〉(《朝鮮史講座-分類史-》, 朝鮮史學會), 136쪽.

^{123) 《}高麗史》 권 1. 世家 1. 태조 2년 정월.

¹²⁴⁾ 註 95) 참조.

여러 주현의 양인을 사민시켜 평양을 충실히 하였다. 그리하여 평양의 도성 안과 도성 밖의 近畿지역에는 고구려계의 세력과 사민집단세력, 서경의 관원 들이 지배귀족을 중심으로 여러 부를 형성하게 되었을 것이다. 6부란 도성 안의 5부와 도성 밖에 살고 있던 이들 집단인 諸部를 가리키던 명칭이 아닌 가 생각된다.125)

끝으로 秀才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수재는 과거에 급제하지 않은 사람을 칭하는 명칭으로 보려는 견해126)와 성명 앞에 관직이나 관계를 썼던일반 예로 보는 견해,127) 수·당에서 과거 합격자로서 관직을 제수받지 않은자에 대한 칭호로 보려는 견해128) 등이 있다. 그런데 과거에 합격하지 않은사람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또한 관직이나 관계로 사용하였던 예로 본다면 그러한 사례를 《고려사》에서 찾아볼 수있어야 함에도 이러한 사례가 잘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재란 관로에 진출할 수 있었을 정도의 재주가 뛰어나고 식견이 넓어 학문에 걸출한 자를말하던 호칭이라 생각된다.129) 정악을 서학박사로 삼은 것은 이 때문이라 하겠다. 정악은 서경사람인지 아니면 개경사람인지는 알 수 없으나 태조가 서경에 행차할 때 왕을 수행하였던 개경인으로서 유학에 박통하였던 사람으로보인다. 그리고 서학박사란 서학뿐만 아니라 유학을 교수하였던 학관직으로성종 때 12목에 경학박사를 파견하기 전에 최초로 파견한 學官職이라 생각되다.

(3) 서경학교의 변천

태조 13년에 설치한 서경학교인 학원은 서경 경략과정에서 서경의 위상이 바뀌는 것과 궤를 같이 한 것 같다. 서경은 광종 때에 西都라하여 副都로서의 위치를 차지하였으나, 광종 때는 서경학교에 관한 흥학책은 찾아볼 수

¹²⁵⁾ 宋春永, 앞의 글(1985), 17쪽.

¹²⁶⁾ 韓基彦, 앞의 책, 54~55쪽. 小田省吾, 앞의 글, 135~137쪽.

¹²⁷⁾ 朴天植, 앞의 글, 72쪽.

¹²⁸⁾ 申千湜, 앞의 책, 130쪽.

¹²⁹⁾ 宋春永, 앞의 글(1985), 18쪽.

없다. 성종 때에는 修書院을 설치하고 생도들을 시켜서 서적을 초하여 비치하도록 하였고,130) 동왕 14년(995)에는 서경의 관제를 개혁하여131) 서경에 대한 지배체제를 강화하였다. 그 후 문종 때에는 서경유수관제가 확립되고, 외방에 문사나 문학 등을 설치하여 강학을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동왕 10년 (1056)에 서경유수관은 서경인 자제들의 과거 준비를 위한 교재를 갖추도록 조처하기도 하였다.132) 이같은 성종과 문종 때의 서경학교에 대한 홍학책은 서경인의 지적 수준이나 학문적 요구에 부응한 것으로 보이며 서경인의 교육열을 자극시켰을 것이다.

서경의 행정기구가 확립되고 그 관원의 수가 늘면서, 서경의 정치적·경제적 안정에 따른 서경인의 증가로, 창업 초에 설치한 학원이라는 한 교육기구에서 서경인의 자제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시설이나 官班上 어려움이 없지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서경인의 자제들을 부별로 나누어 교육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기구를 설치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그리하여 문종 때에는 태조 이래로 존속되어 왔던 학원을 諸學院으로 확대 정비하였던 것 같다. 문종때에 제학원이 설립되었음은 문종 10년 8월에 서경유수의 요청으로 秘書閣에 있는 서적을 각인하여 제학원에 송부한 것이라든지 동왕 30년에 제정된 녹봉조의 문무반록에 제학원의 副使에게는 13석 5두, 판관과 의학원 박사에게는 8석 10두를 각각 지급하였다는 것을133) 보아 알 수 있다. 어떤 학원을 구체적으로 제학원이라고 말하는지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제학원의 관원으로 부사・판관 등이 있었던 것을 보면 유학과 을・서・산학 등의 잡학을 총괄하였던 기구로 짐작된다. 이 제학원은 유학교육을 위한 학원이 중심을 이루었던 것 같으며, 제학원으로 확대 정비된 시기는 늦어도 문종 10년 이전이라 생각되다.

문종 때에 확대 정비된 제학원은 이후 계속 존속되었으며, 숙종 7년(1102)

^{130)《}高麗史》 권 77, 志 31, 百官 2, 外職 西京留守官.

¹³¹⁾ 성종 14년(995)에는 태조 때의 관제로부터 벗어나 西京留守官制를 설치하여 知西京留守事 1인(3품이상), 副留守 1인(4품이상), 判官 2인(6품이상), 司錄 參軍事 2인, 掌書記 1인(모두 7품이상), 法曹 1인(8품이상)을 둠으로써 정치적 행정기구로 바뀌어졌다.

^{132) 《}高麗史節要》 권 4. 문종 10년 8월.

^{133)《}高麗史》 권80, 志34, 食賃3, 祿俸 西京官祿.

이후에는 諸學士院으로 개칭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숙종 때에는 서경의 문무 관반체계를 설정하고 서경을 5부로 나눔으로써 서경의 관료 질서체계를 더 욱 강화시켰다.134)

숙종 때의 이같은 관료체계의 확립과 함께 서경학교에 대한 재정비 작업도 아울러 추진되었을 것이며, 제학사원은 이러한 과정에서 제학원을 학사중심의 교육기구로 개편하고 유학 중심의 교육기구로 개혁하였던 것 같다. 그러나 제학사원은 예종 11년(1116)까지 존속되었으며, 그 위상은 제학원보다상위의 교육기구로 격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135)

고려시대의 學士院은 翰林院의 전신으로, 태봉 이래의 元鳳省을 계승한 문한기구였다. 그리고 국왕의 詞命을 제찬하는 기구인 점에서136) 양인 이상의자제 교육을 담당하였던 순수 교육기구와는 성격이 달랐던 것 같다. 그러나국초에 교육기구가 정연하게 갖추어지지 못하였던 상황 하에서 원봉성이 인재 양성의 기능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은137) 주목을 끌게 한다. 숙종 7년 이후에 개혁된 제학사원은 예종 11년에 分司國子監으로 개혁되었다.138) 분사국자감은 분사제도가 실시되면서 개경의 국자감을 본받아 제학사원을 통합 승격시켜 국자감에 준하는 교육기구로 개편한 것이다.

분사국자감의 직제 구성은 개경의 국자감의 직관체계와는139) 달리 判事・祭酒・司業은 모두 경관직이며 교관직으로 박사와 조교를 두었다. 이같은 학관의 겸직은 귀족의 권력 집중과 예산의 절감이라는 점에서 널리 시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140)

제학사원이 분사국자감으로 승격 개편됨에 따라 서경의 교육은 고려의 교

^{134)《}高麗史》 권 58, 志 12, 地理 3, 西京留守官.

¹³⁵⁾ 宋春永, 앞의 글(1985), 25쪽.

^{136)《}高麗史》 권 76, 志 30, 百官 1, 藝文館.

¹³⁷⁾ 許興植, 앞의 책, 13쪽.

^{138) 《}高麗史》 권 77, 志 31, 百官 2, 外職 西京留守官 其屬官沿革 예종 11년.

¹³⁹⁾ 개경의 국자감은 문종 때에 判事 1인(경관직)을 두었으나 예종 11년에 判事를 大司成(종3품)으로 고쳐 대사성이 실질적인 총장격이 되었으며, 그 아래에 祭酒(정4품), 司業(종4품), 丞(종6품), 國子博士(정7품), 大學博士(종7품), 注簿(종7품), 四門博士(정8품), 學正・學錄(정9품), 學諭・直學・書學博士・算學博士(종9품)를 두었다.

¹⁴⁰⁾ 張東翼, 〈高麗前期의 兼職制에 대하여〉(《大丘史學》17, 1979), 57쪽.

육사상 절정기에 이르렀으며 훌륭한 문사를 배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예종 때 서경 진사출신인 鄭知常이 예종 7년 임진년의 省試에서 장원으로 합격하여 등용되었으며 후일 당대 제일의 문사가 되었다는 것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 [41]

분사국자감은 인종 때에 妙淸의 난을 겪고 난 뒤에는 서경의 행정기구가 축소되면서 제학원으로 환원되었다. 묘청의 난 이후 서경의 행정기구는 監軍 과 分司御史臺를 제외한 다른 관서를 省官시킴으로써142) 서경의 위치는 부 도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고 중앙정부의 예속적 지위로 격하되었다. 이 에 따라 분사국자감도 문종 때의 제학원으로 환원되었다. 그리고 인종 16년 (1138)에 축소된 서경의 관부는 명종 8년(1178) 일대 개혁이 단행되어, 행정기 구의 속관을 직능별로 분류하여 6조에 분속시켰다.143) 명종은 관제 개혁과 아울러 서경학교에 대해서도 제학원의 관원을 경정하여 유학교육과 기술교 육을 담당하도록 하였던 것 같다.144) 고종 20년(1233)에는 畢賢甫와 洪福源의 반란으로 서경이 폐허화되었으며,145) 더군다나 원종 10년(1269)에는 崔坦과 李延齡이 반란을 일으켜 몽고에 귀부함으로써 몽고는 서경에 東寧府를 설치 하여 慈悲嶺 이북의 지역을 지배하였다.146) 그 후 충렬왕 16년(1290)에 서경 을 돌려받자 서경의 행정과 교육은 그 기능을 회복하게 되었다.147) 그러나 다시 서경의 행정기구가 축소되고 서경의 속관이 土官職으로 굳어져148) 서 경의 지위는 격하되었으며, 이와 아울러 서경학교인 제학원도 여말에 이르러 서는 향교화하였다. 공양왕 2년(1390)에 개경과 서북면의 府・州에도 유학 교 수관을 둔 것을 보면149) 서경학교에도 유학 교수관을 두었던 것으로 짐작되

^{141)《}高麗史節要》권 8, 예종 9년 4월이나 인종 5년 3원 기사에 보면 西京의 학문 적 수준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교육적 환경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142) 《}高麗史》 권 77. 志 31. 百官 2. 外職 西京留守官 其屬官沿革 인종 14년.

¹⁴³⁾ 河炫綱, 앞의 책, 133쪽.

¹⁴⁴⁾ 명종 8년(1178)에 서경의 관제를 更定하면서 諸學院에는 文師 1인, 記事 2인, 算士 1인, 記官 2인, 書者 2인을 두었는데 산학은 算士가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45) 《}高麗史》 권 23, 世家 23, 고증 20년 5월.

^{146)《}高麗史》 권 58. 志 12. 地理 3. 面京留守官.

^{147) 《}高麗史》권 58, 志 12, 地理 3, 층렬왕 16년.

^{148) 《}高麗史》 권 77, 志 31, 百官 2, 外職 西京留守官 其屬官沿革 공양왕 3년.

^{149) 《}高麗史》 권 74, 志 28, 選擧 2, 學校 공양왕 2·3년.

며, 이는 서경학교인 제학원이 향교로 바뀌어졌음을 말하여 준다.

(4) 서경학교의 운영실태

가. 시설과 재원

서경학교의 시설이 어떠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태조 13년(930)에 설치한 서경학교인 학원이 諸學院→諸學士院→分司國子監 등으로 변개되었던 것을 보면 서경에도 생도들을 교육할 강학소와 선성선현을 봉향한 사우, 기타필요한 시설이 마련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제학사원이 분사국자감으로 승격 개편되었을 때는 개경의 국자감에 준하는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서경학교에 설치된 사우와 강학소가 한 건물 안에 있었는지 아니면 따로 설치되었는지는 분명히 알 수 없다. 그러나 향교의 경우를 감안하면 처음에는 廟・學이 함께 있었으나 후기에 와서는 묘・학이 분치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東西廡를 강학소로 삼았던 것 같다. 서경의 사우에 봉향한 선현은 문선왕・10철・70제자와 본국의 文昌侯(崔致遠)・弘儒候(薛聰)였다.150) 이것은 국자감의 문묘에 봉향한 인물과 같다. 지방 행정구획의 대소에 따라 향교의 규모가 달랐던 것을 보면 고려 전기에는 서경이 고려 3경의 하나로서 역대왕들이 일찍부터 중요시하였던 곳이었기 때문에 군현의 향교와는 달랐을 것이고, 그 규모가 개경의 국자감과 큰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무신정권 이후 오랫동안의 내우외환으로 서경의 퇴락과 함께 서경학교도 쇠퇴하였으며, 사우 또한 크게 훼손되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충숙왕 때에는 퇴락한 평양의 사우를 다시 지어 선현을 봉향하였던 것이다.

서경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원의 뒷받침이 있어야만 하였다. 서경학교의 경비 충당을 위한 재정책으로는 學寶를 만들어 그 이식으로 경비를 충당하도록 하였으며,[51] 공해전을 지급하였다.[52] 그러나 무신정권 이후 여말

^{150) 《}高麗史》권 35. 世家 35. 충숙왕 12년 10월 을미.

^{151) 《}高麗史節要》권 1, 태조 13년 12월.

¹⁵²⁾ 西京의 諸學院에 지급된 公廨田은 15결, 書籍位田 50결, 文宣王油香田 15결, 先聖油香田 50결(先聖即箕子)을 지급하였다(《高麗史》 권 78, 志 32, 食貨 1,

에 이르기까지 농장의 발달과 수취체제의 문란, 병화로 인한 국토의 황폐화, 민생의 도탄화 등으로 與學養士를 위한 재정책의 뒷받침이 어렵게 되었다. 이에 공민왕은 소속이 분명하지 않은 학전이나 공해전으로서 호강들이 강점 한 것이 있으면 관에서 분별하여 장학에 사용하여 재정이 어려운 학교의 경 비를 충당하도록 하였다.

나. 교수관과 생도

서경학교의 교수관으로서 처음으로 설치된 것은 서학박사였다. 이것은 태조 13년(930) 12월에 廷鶚을 서학박사로 삼아 6부의 생도를 모아 가르치게한 것이 효시이다. 그 후 태조는 홍학의 소식을 듣고 의·복 2업을 설치하였다는 것을 보면, 의학박사와 복박사를 두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후 서경학교의 교수관이 어떻게 바뀌어져 갔는지 살펴 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서경학교는 〈표 2〉에서처럼 그 명칭이 바뀌어질 때마다 학관직도 마찬가지로 명칭이 바뀌어졌음을 알 수 있다. 서경학교의 학관 중 부사와 판관은학사 사무와 행정 실무를 관장하였던 학관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사국자감으로 승격 개편되면서 학관의 직제 또한 개경의 국자감의 직제에 준하여 개편되었다. 곧 최고 행정책임자인 판사, 부책임자인 좨주, 학사 전반에 관한 관리책임자인 사업을 두었다. 이들 학관직은 모두 경관직이었으며, 실제 교수를 관장한 것은 박사와 조교였다. 이같은 직제의 구성은 대사성이 최고 행정책임자였던 개경의 국자감과는 다르다.

그후 분사국자감은 묘청의 난 이후 제학원으로 환원되면서 학관직도 문종때의 학관직으로 바뀌어졌다. 그리고 명종 8년(1178) 이후에는 서경의 행정기구가 축소되는 데 따라 속관은 토관화되어 갔다. 교수관의 부임 기피로 말미암은 교수관의 부족은 물론 교관과 학생의 질적 저하를 가져왔을 것이다. 고려 후기의 쇠퇴한 교육을 부흥시키고자 산골에 숨어 살고 있는 유능한 자를소재관이 천거토록 하고,153) 예문관으로 하여금 재주있는 자를 뽑아 직첩을

公廨田 명종 8년 4월 西京 公廨田).

^{153) 《}高麗史》권 75, 志 29, 選擧 3, 銓注 충선왕 즉위년 기사나 같은 銓注條 공 민왕 원년 2월 기사 등은 이같은 사실을 잘 나타낸다.

⟨표 2⟩

西京學敎의 學官職 변천

學校名 時代	學院	諸學院	諸學 士院	分司國子監	諸學院	鄉校
태조 13년 (930)	書學博士					
문종 30년 (1076)		副使・判官 醫學院博士				
예종 11년 (1116)				判事1(3품겸) 祭酒1(少監 이상 겸) 司業 1(員外 郎 이상 겸) 博士・助教 각 1(9품)		
인종 16년 (1138)					 判官 1 	
명종 8년 (1178)					文師 1・記事 2・算士1・記 官 2・書者 2	
공양왕대						教授・訓導
전 거	要》권 1, 태	《高麗史》 권 80, 志 34, 食貨 3, 西京 官祿		권 77, 志 31, 百官 2, 西京 留守官 其屬	《高麗史》권 77, 志 31, 百 官 2, 西京留 守官 其屬官 沿革 인종 16 년・명종 8년	74, 志 28, 選 擧 2, 學校 恭 譲王 원년 12

주어 훈도에 임명하도록 한 것 등154)은 당시의 사정을 잘 나타내준다. 여말의 교육 진흥을 위한 제반 조치는 신진사대부들이 중심이 되었다. 그 중 지방에 교수관과 훈도 등을 설치하여 교육을 일신하고자 한 것은 서경도 예외는 아니었다.

^{154) 《}高麗史》권 75, 志 29, 選擧 3, 銓注 충선왕 즉위년.

서경학교의 입학자격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율학과 서학·산학 및 주현학생의 경우 8품 이하의 아들과 서인으로 하되 7품 이상의 자로서 원하는 자는 입학을 허락한 것을 보면 서경학교의 학생도 이에 준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분자국자감에서는 개경의 국자감 학생의 입학자격과 거와 같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서경학교의 생도수는 그 규모를 알 수 없으나 교육과정별로 차이가 있었 던 것으로 짐작된다. 서경학교의 생도수 또한 향교의 생도수와 같이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입학 연령은 향교의 입학 연령과 같지 않았을 까 생각된다.

다. 교육과정과 수업년한

서경학교의 교육과정은 유학교육이 중심을 이루었으나 율·서·산학과 같은 기술교육과정도 설치되었던 것 같다. 유학교육과정에서 교수하던 과목은 알 수 없으나 문종 10년(1056) 8월에 서경의 제학원에 9經·《漢書》·《晋書》·《唐書》·《論語》·《孝經》·子史·諸家文集·醫卜地理·律算學 등의 각종 서적을 보내 비치한 것이라든지,155) 국자감의 교과목 및 제업의 고시과목등을 보면 과업교육이 중요시되었던 당시의 서경학교에서도 과업교육을 위한 과목이 중요시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주자학이 수용 보급되던고려 후기에 이르러서는 4서 5경이 중요시되면서 유학의 학풍이 고려전기의시·부 등 사장풍에서 경학풍으로 바뀌어져 갔으며, 여말에는 수기·치인을위한 소학이 기본 교과목으로 등장하게 되었다.156)

서경학교에 있어서는 유학과 기술학 외에도 武學教育도 때로는 강조되었던 것 같다. 거란 침입 이후 북방민족의 침입에 대비하고자 문종 때는 무학 박사를 두기도 하였으며, 예종 때는 국학에 講藝齋를 두어 무학생을 선발하였다. 그러나 강예재는 인종 때에 폐지되었다. 고려 후기에 홍건적과 왜구의 침노가 심하여짐에 따라 공민왕 때는 성균관으로부터 향교에 이르기까지 문무학을 개설하여 將宰를 양성하도록 하였으며, 공양왕 2년(1390)에는 무과를

^{155) 《}高麗史節要》 권 4, 문종 10년 8월.

¹⁵⁶⁾ 宋春永, 앞의 글(1985), 44쪽.

설치하게 이른다. 이처럼 시대에 따라 중외의 학교에서 무학교육을 중요시한 것을 보면 북방의 정치적·군사적 요충지였던 서경의 학교에 있어서도 무학 교육을 하였던 것으로 믿어진다.

서경학교의 수업년한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달랐을 것이다. 그러나 분사국 자감의 수업년한은 국자감의 수업년한과 같았을 것이며, 제학원의 수업년한 은 향교의 수업년한과 같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3) 서 재

고려시대의 私學 교육기관으로는 12도와 서재·서당 등이 있었다. 그 중서재는 고려 후기에 조명된 사대부의 개인 독서실로 가내에 한정된 폐쇄적형태의 家學的 성격을 지녔던 것이다. 그런데 점차 외부인에게 개방·확대된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서재는 고려의「家塾 黨庠」의 교육적 전통을 계승하려는 사대부들의 욕구 즉 학문적 전통과 지배층으로서의 지위를 전승시키려는 의욕에서 자신들의 자손이나 근친에 한하여교육의 기회를 부여한 가학에서 비롯되었던 것 같다.157)

고려시대의 서재에 관한 기록은 성종 11년(993) 12월에 내린 다음의 교서에서 처음으로 보인다.

勝地를 가려 널리 書齋와 學舍를 짓고 田庄을 지급하여 學粮에 충당하도록 하라(《高麗史》권 74, 志 28, 選擧 2, 學校 성종 11년 12월 敎).

그러나 이 교서 중의 서재는 사립의 교육기구가 아니라 관학의 성격을 지 닌 것으로 믿어진다.

고려시대에도 사학 교육기구가 널리 설치되었음은 《高麗圖經》을 통해 알수 있다.

¹⁵⁷⁾ 李秉烋、〈麗末鮮初의 科業教育-書齋를 中心으로-〉(《歷史學報》67, 1975), 48 ~49等.

아래로는 여염집거리에도 經館·書社가 두세 집 건너 바라보고 있어 백성의 미혼 자제들이 무리지어 스승에게 글 공부를 받았다(《高麗圖經》권 40, 儒學).

여기에 나오는 經館·書社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서재나 서당과 같은 성격의 것으로 보아도 좋을 듯싶다.

고려시대에 서재가 조영되어 교육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한 것은 무신정권기 이후로 보인다. 무신정권기에는 문무가 교체되고 잇따라 몽고의 침략으로 국토가 황폐되어 민생이 도탄에 빠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환 하에서는 국가의 교육재정 부담 능력의 한계와 교수관의 부족 등으로 개경과 지방의 관학교육기능이 약화되어 향촌의 교화교육이나 관인 양성을 위한 과업교육은 물론 문운이 크게 쇠퇴하였다. 이같은 상황 하에서 국가는 향촌사회의 교육기능을 보강하려는 현실적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며, 향촌사회의 재지세력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향촌을 교화하고 유교적 지배질서를 수립하여 그들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욕구를 갖게 되었을 것이다. 여기에 무신정권 이후 산림이나산사에 은둔한 文儒나 낙향한 顯官들은 그들의 가학적 전통을 계승하고 이를 통하여 그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연고가 있는 곳에 서재를 지어학문을 닦으면서 후진 양성을 위한 교육활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국가는 약화된 관학교육의 기능을 보강하고자 과업교육을 서재에 맡겨 이를 묵인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권장하기도 하였던 것 같다.158)

초기적인 서재의 존재는 韓彦國의 서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서재는 경관이 수려한 산간에 마련된 독서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59) 그러나 그것이 교육장으로 활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서재의 초기적인 존재였음은 분명하다. 서재교육은 사대부가의 가학에서 비롯되었던 것으로 믿어진다.

사대부가의 가학의 사례는 金九容이 그의 외조인 閔思平에게서 수업한 것을 비롯하여160) 金台鉉이 그의 숙부에게서,161) 尹澤은 그의 고조부에게서,162)

¹⁵⁸⁾ 李秉烋, 위의 글, 50쪽.

¹⁵⁹⁾ 李仁老.《破閑集》 권 上.

¹⁶⁰⁾ 李穡,《牧隱文集》 권 13, 題惕若齋學吟後.

¹⁶¹⁾ 崔瀣,《拙高千百》 권 1, 金文正公墓誌.

¹⁶²⁾ 李穡、《牧隱文集》 권 17. 墓誌銘 栗亭先生尹文貞公墓誌銘.

安輔는 그의 형에게서,163) 崔瀁과 朴틀은 그의 妻父에게서,164) 李原은 그의 매형에게서,165) 鄭麟趾는 그의 아버지에게서,166) 각각 수업한 것 등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가학은 자기의 자손이나 근친에게 한하여 폐쇄적 형태의 성격을 띠었으나 여말에 이르러서는 외부인에게 개방・확대되어 갔다.

여말 辛旽의 전횡,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간의 정치적 세력 다툼,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 등은 정치 정세의 불안을 가져왔다. 왕조교체기라는 격동기에는 관인사회 내부의 정치투쟁에서 패배하여 도태되었거나 현실에 적응하기를 거부한 사대부들이 일시적으로 또는 일생 동안 재지적 기반이 있는 향촌이나 산간에 은둔하여 서재를 조영하고 학문을 연찬하는 한편 후진 양성을 위한 교육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여말의 서재교육을 담당한 주체로 등장하였으며, 여말의 정치적·사회적 변화는 서재교육의 발전을 자극한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吉再가 선산의 金烏山 아래 낙향하여 대규모적이고도 본격적인 서재교육을 하였으며,167) 趙庸이 謫所에서도 교육활동을 전개하여 명유·고관을 배출시켰던168) 것은 여말 격동기에 서재교육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역말의 면유나 현관으로서 서재교육을 담당하였거나 그 곳에서 수업을 한 경력이 없는 이는 드물었을 정도였다.

다음 〈표 3〉은 여말의 명유나 현관이 서재교육을 담당하였거나 그 곳에서 수업을 한 경력을 나타내주는 자료로서,169) 이를 보면 서재교육이 외부인에 까지 개방·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서재교육은 교육을 담당하는 師儒의 능력이나 교육목표·수준에 따라 몇 개의 유형으로 나누어지며, 그로 인하여 교육내용이나 양상도 달라지게 된

¹⁶³⁾ 安軸,《謹齋集》 권 4, 墓誌銘.

¹⁶⁴⁾ 李行,《騎牛集》 권 2, 附錄, 杜門洞七十二賢錄 崔瀁. 《國朝人物考》 권 1, 相臣, 朴訔.

^{165)《}國朝人物考》 권 1, 相臣, 李原.

^{166)《}朝鮮金石總覽》下, 鄭麟趾墓表.

¹⁶⁷⁾ 吉再,《冶隱先生言行拾遺》.

成俔,《慵齋叢話》 권 3.

^{168)《}新增東國輿地勝覽》 25, 慶尚道 眞寶縣, 人物,

¹⁶⁹⁾ 李秉烋, 앞의 글, 56쪽.

⟨표 3⟩

授業者	受業者	전 거	授業者	受業者	전 거
禹 倬		高麗史 권 109, 列傳 22	鄭夢周	李之直	遁村先生世稿 1, 附錄
尹 澤	李 穑	牧隱文集 8, 序	"	朴 融	朝鮮歷代名臣錄 3
安輔	"	謹齋集 4, 墓地銘	"	朴昭	<i>"</i> 3
"	李 集	遁村集 4, 師友淵源錄	"	朴 聰	<i>"</i> 3
"	禹玄寶	朝鮮歷代名臣錄 2	"	朴 調	<i>"</i> 3
李 穑		牧隱文集 10, 說	李 行	李 璠	<i>"</i> 3
"	文益漸	朝鮮歷代名臣錄 2	權近	卞季良	<i>"</i> 3
"	崔元道	" 2	"	許 稠	國朝人物考 1, 相臣
"	卞季良	<i>"</i> 3	"	金 泮	朝鮮歷代名臣錄 3
"	李文和	<i>"</i> 3	權遇	鄭玉潤	<i>"</i> 3
"	吉 再	冶隱集 上, 行狀	吉 再	"	<i>"</i> 3
泰中吉		牧隱文集 20, 傳	"	王 洁	<i>"</i> 3
鄭夢周	卞季良	朝鮮歷代名臣錄 3	"	曹尙治	<i>"</i> 3
"	李文和	<i>"</i> 3	"	金淑滋	佔畢齋集彛尊錄 上
"	吉 再	冶隱集 上, 行狀	鄭道傳		東國輿地勝覽 권 25,
"	河 演	朝鮮歷代名臣錄 3			奉化 人物
"	鄭師仲	<i>"</i> 3	趙庸	尹 祥	別洞集 年譜
"	洪彦修	" 2			

다. 서재 가운데는 초보적인 교과교육(유학교육)에서부터 과업교육, 더 나아가 서는 성리학의 이론 탐구까지의 폭넓은 영역을 모두 감당해 낼 수 있는 교 화적·과업적·위학적인 성격의 것이 있었다.170)

李穡・鄭夢周・吉再 등에서 비롯하여 金叔滋 부자로 이어지는 성리학자들의 서재는 위학적 교육의 서재에 속할 수 있을 것이나, 학문적 깊이와 교육대상의 범위가 성리학 연구보다는 과업교육의 성격이 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교화적 교육이 배제된 것은 아니나 과업적・위학적 수준의高弟的 서재의 성격이 강하였던 듯싶다.171)

다음은 문과를 목표로 한 과업교육을 위한 고제적 서재는 朴恒의 서재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박항은 현직 관인으로서 과업교육을 실시하여 그가 殿試의 고시관이 되었을 때 자신의 제자들을 많이 급제시켰는데, 이것은 과업교

¹⁷⁰⁾ 李秉烋, 위의 글, 57쪽.

¹⁷¹⁾ 李秉烋, 위의 글, 58쪽.

육의 한 예이다.172)

끝으로 유학의 기본교육이나 유교도덕교육을 목표로 한 교화교육을 위한 서재가 있었다. 여말의 羅興儒가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자 整숨를 열어 동몽을 교육한 것은 그 예이다.173) 이러한 서재는 처음부터 교화 수준의 교육만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수업자와 師儒의 수준이 그에 상응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서재는 수적 규모나 그 확산범위에 있어서 당시의 사학 교육기관의 주축을 이루었다. 그리고 사학 교육기구이면서도 집권적 관인사회의 보호와 장려를 받으면서 조선시대로 이어져 발전하였다.

서재의 교육내용은 儒士의 능력・수준이나 교육목표에 따라 다를 것이나 과업교육이 중요시되었던 당시에 있어서는 유교의 경전이나 제자백가서 등 이 주축을 이루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조선 초의 사실이지만 김숙자는 자 신의 자제를 교육하면서 《동몽후》・《효경》・《대학》・《논어》・《중용》・《시 경》·《서경》·《춘추》·《주역》·《예기》·《통감》·諸史·百家 등을 그 讀誦 순서에 따라 차례를 거치지 않고 뛰어넘는 일이 없이 학습하도록 당부하였 다.174) 이것을 보면 여말 서재교육의 과목도 이와 큰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집작된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과목을 아무리 흘륭한 사유라도 능통하게 가 르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으므로. 때로는 서재를 편력하면서 복수의 사유가 수업하기도 하였던 것 같다. 길재가 어렸을 때 商山의 司錄 朴賁에게 수업하고, 뒤에 상경하여 이색·정몽주·권근 등에게 편력하면서 수업한 뒤 등제한 사실은175) 이를 말하여 준다. 특히 성리학이 전래되어 사대부들의 새 로운 이념적 철학으로 수용 보급되면서 여말에는 성균관에 4서 5경 재가 세 워졌고, 과거에 있어서도 고려 후기에는 경학을 중요시 하였다.176) 이처럼 여말의 학풍이 전기의 사장풍에서 경학풍으로 바뀌어짐에 따라 서재교육의 과목도 경학을 중요시하게 되었을 것이다.

^{172)《}高麗史》 권 106, 列傳 19. 朴恒.

^{173) 《}高麗史》 권 114. 列傳 27. 羅興儒.

¹⁷⁴⁾ 金宗直,《佔畢齋集》, 彛尊錄 下, 先公事業.

¹⁷⁵⁾ 吉再,《冶隱先生言行拾遺》 권上, 行狀.

¹⁷⁶⁾ 許興植, 앞의 책, 97쪽.

여말의 서재교육은 광주·천녕 여흥(여주) 등 근기지방 중심의 양상을 띠었던 것 같다.177) 광주는 廣州 李氏의 본관으로 李集과 之直・仁孫・克培・克堪・克增 등으로 이어지는 그의 후손을 배출하였다. 그리고 천녕은 이집이은거했던 곳이기도 하거니와178) 여흥은 閔令謨의 후손으로 宗儒・頔・思平으로 연결되는 벌족 驪興 閔氏의 세력 근거지였으며, 驪州 李氏의 본관으로李奎報・李行 등을 배출한 곳이었다.179) 또한 康興邦의 근거지이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사대부들의 교류가 이루어졌다. 민사평의 외손인 김구용과 이집을 매개로 한 이색・정몽주・이숭인・이존오・이달충・이행・정도전 등이 연결되어 이곳을 중심으로 학문적 교류와 후진 교육에 힘을 기울였다.180) 또한 선산과 밀양을 잇는 지역은 서재교육이 전형적으로 부각된 곳이기도 하였다.

역말 서재 중심의 과업교육은 사대부나 재지세력의 농장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는데 농장 내부에 있는 亭・軒・齋・菴・室 등의 건물이 교육장으로 활용되었던 것 같다.[181] 李晟의「竹溪村舍」나[182] 李集의「川寧江舍」는[183] 후진 교육에 활용된 한 예이기도 하다.

고려 후기에 조영된 사학 교육기구인 서재는 여말의 정치적 격동기를 겪으면서도 관학 교육기능의 약화로 인한 향혼사회의 유학교육을 보강하고 과업교육의 수행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나아가 爲學教育의 기능도 수행함으로써 성리학의 발달에 공헌하였다. 이런 점에서 여말의 서재가 갖는 교육적 의의와 역사적 의의는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宋春永〉

¹⁷⁷⁾ 개경 중심의 지배체제하에서는 그 영역을 벗어나는 것은 곧 지배층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므로 관인들은 대부분 개경이나 근기지방에 생활 근거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李秉烋, 앞의 글, 63쪽·文炯萬,〈麗代「歸鄉」考〉,《歷史學報》23, 1964 참조).

¹⁷⁸⁾ 李集,《遁村先生遺稿》 권 4, 附錄 遺事.

¹⁷⁹⁾ 李秉烋, 앞의 글, 64쪽.

¹⁸⁰⁾ 金九容、《惕若齋學吟集》、世系行事要略、

¹⁸¹⁾ 李秉烋, 앞의 글, 65쪽. 柳洪烈,〈麗末鮮初の私學〉(《青丘學叢》24, 1936), 92쪽.

^{182) 《}高麗史》 권 109. 列傳 22. 李晟.

¹⁸³⁾ 李集、《遁村先生遺稿》 권 4, 附錄, 遺事.